연구총서 23-A-06

www.kicj.re.kr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Analysis of the Changes in Digital Sex Crimes and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fter the Nth Room Prevention Law

김지선 · 김민지 · 홍세은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연구책임자

김 지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민 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세 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지 원

심 수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심 혜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김 용 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박 중 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유 현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머리말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시킨 N번방 사건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소라넷 사건, 손정우 사건, 웹 카르텔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측면이 드러났었지만,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네 가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7개 중과제,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제도 도입,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책 수립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반드시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목표했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대응들이 실제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집행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범죄 대응 및 예방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보고서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신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업무에 애쓰시는 실무자,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실증자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 3천 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과 170건에 달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수집 및 조사를 담당해 주신 심혜선 인턴연구원, 김용애 인턴연구원, 박중홍 인턴연구원, 유현이 인턴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김 지 선**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김지선

서 론 ····· 2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

1. 연구내용 ····· 29
2. 연구방법 ····· 37
3. 용어의 정의 ····· 50

제2장 김민지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 53

제1절 N번방 방지법의 시행 배경 및 경과 ····· 55

1. N번방 방지대책 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 55
2. N번방 방지대책 ····· 60

제2절 N번방 방지법 내용 ····· 76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 76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83

제3절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후속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 90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 90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93

제3장 김지선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 101

제1절 디지털성범죄 발생 실태 ····· 103
1. 입건건수 ····· 103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 110
제2절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 119
1. 피해유형 ····· 119
2.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 ····· 122

제4장 김민지·김지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 ····· 125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 127
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 127
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 132
3. 국제공조수사 ····· 144
제2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 153
1. 2021년 검찰의 처분 현황 ····· 153
2. N번방 방지 대책 이후 검찰 처분의 변화 ····· 160

제5장 김지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 171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 173
1. 선고유형과 징역형량 ····· 173
2. 보안처분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 186
제2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 189
1.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 비율과 사유 ····· 190
2. 양형기준제 적용율 :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 193

3. 특별양형인자 확정 및 권고영역 결정 ····· 197
4.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과 선고형량의 결정 ····· 207
제3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 216
1. 선고형량의 차이 ····· 216
2.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 221
3. 징역형량 및 편차의 차이 ····· 225
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 233

제6장 홍세은
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 ····· 237

제1절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운영 현황 ····· 239
1. 지원 체계 및 현황 ····· 239
2.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 공조 ····· 246
제2절 피해자 지원의 한계 ····· 250
1.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약사항 ····· 250
2. 운영체계 상의 어려움 ····· 265

제7장 김지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 275

제1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 277
1.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 277
2.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의 ····· 279
3.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 281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 286
1.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접수 및 처리와 관련 내부 지침 및 절차 ····· 286
2.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295

제8장 김지선·김민지·홍세은

요약 및 정책제언 ····· 305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307
1. N번방 방지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 ····· 307
2.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 308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 310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 312
5.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 314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317
7.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 319

제2절 정책제언 ····· 324
1. 디지털성범죄 수사 ····· 324
2.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330
3. 피해자 지원 ····· 333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 336

참고문헌 ····· 343

Abstract ····· 365

표 차례

[표 1-1]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주요 연구내용 ····· 32
[표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관련 주요 연구내용 ····· 36
[표 1-3] 각 기관별 활용 통계 ····· 38
[표 1-4] 판결문 검색 시 활용한 죄명 키워드 ····· 41
[표 1-5] 대상 범죄 및 형종별 조사 판결문 수 ····· 42
[표 1-6] 디지털성범죄 1심 판결문 조사항목 ····· 43
[표 1-7] 투명성 보고서 내용분석 항목 ····· 45
[표 1-8]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 48
[표 1-9] 경찰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 49
[표 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 50
[표 2-1] 디지털성범죄의 문제점 ····· 56
[표 2-2]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61
[표 2-3] N번방 방지 대책 마련 전후 비교 ····· 61
[표 2-4] 위장수사제도 관련 발의안의 차이 ····· 63
[표 2-5]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66
[표 2-6]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69
[표 2-7] 삭제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71
[표 2-8]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74
[표 2-9]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75
[표 2-10] N번방 방지법 수사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 77
[표 2-11]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정리 ····· 79
[표 2-12] N번방 방지법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 80
[표 2-13] N번방방지법 시행 전후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비교 ····· 82
[표 2-14]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 확대 ····· 83
[표 2-15] N번방 방지법 삭제지원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 83
[표 2-16]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른 삭제지원 강화 추이 ····· 85
[표 2-17]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개정 및 시행일 ····· 85
[표 2-18]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 87
[표 2-19]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및 시행일 ····· 88

[표 2-2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 89
[표 2-21] 제21대 국회 수사특례규정 관련 발의안 ····· 91
[표 2-22] 제21대 국회 처벌 강화 관련 발의안 ····· 92
[표 2-23] 제21대 국회 삭제지원 강화 관련 발의안 ····· 94
[표 2-24] 제21대 국회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발의안 ····· 96
[표 3-1] 디지털성범죄의 입건 및 구성 비율 추이(2012~2021년) ····· 104
[표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입건건수(2012~2021년) ····· 106
[표 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구성 비율(2012~2021년) ····· 106
[표 3-4] 2020년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 108
[표 3-5] 2021년 경찰의 성착취물 유통사범 검거 현황 ····· 108
[표 3-6] 디지털성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 비율(2012~2021년) ····· 110
[표 3-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2018~2022년) ····· 116
[표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18
[표 3-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18
[표 3-1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2018~2022년) ····· 120
[표 3-11] 피해자 연령별 피해유형 ····· 121
[표 3-12]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플랫폼 ····· 123
[표 3-13] 피해촬영물 유포 시 개인정보동반 유출 비율 및 개인정보 유형 ····· 124
[표 4-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27
[표 4-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N번방 대책 주요 내용 ····· 133
[표 4-3] 범죄수사규칙상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주요 서식 ····· 133
[표 4-4]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시행 이후 현황('21.09.24~'23.08.31.) ····· 134
[표 4-5]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 135
[표 4-6]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종료 현황('23.01.01~'23.06.30.) ····· 136
[표 4-7]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승인·허가 현황 ····· 137
[표 4-8] 국제공조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45
[표 4-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국 리스트 ····· 147
[표 4-10]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결정(2021년) ····· 155
[표 4-11]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2021년) ····· 159
[표 4-12] 검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 163
[표 4-13] 검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 166
[표 4-14] 검찰의 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 167
[표 4-15] 검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 168
[표 4-16] 검찰의 촬영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 170

[표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3~2021년) ····· 177
[표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7년과 2021년) ····· 178
[표 5-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 추이(2013~2021년) ····· 182
[표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 추이(2017년과 2021년) ····· 184
[표 5-5] 디지털성범죄자 취업제한 부과율 추이(2018~2021년) ····· 187
[표 5-6] 디지털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 추이(2013~2021년) ····· 187
[표 5-7]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보안처분 부과비율 추이(2017년과 2021년) ····· 188
[표 5-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 비적용 대상 여부 ····· 191
[표 5-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 ····· 193
[표 5-10]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율 ····· 196
[표 5-11] 법원 및 재판부 유형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율 ····· 197
[표 5-12]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 199
[표 5-1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확정 개수 ····· 200
[표 5-1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 203
[표 5-15]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범위 ····· 205
[표 5-1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영역 분포 ····· 207
[표 5-17] 권고형량의 범위의 조정 ····· 208
[표 5-1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형량 준수여부 ····· 209
[표 5-19] 법원 및 재판부 유형과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준수율 ····· 211
[표 5-20] 권고형량의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 212
[표 5-21]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 213
[표 5-22] 권고형량 하한과 선고형량의 편차 ····· 215
[표 5-2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차이 ····· 216
[표 5-2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선고형량의 차이 ····· 219
[표 5-25]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선고형량의 차이 ····· 220
[표 5-2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 222
[표 5-27]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 223
[표 5-28]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율 차이 ····· 224
[표 5-2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의 차이 ····· 226
[표 5-30] 디지털성범죄의 징역형량 분포에 관한 기술통계 ····· 229
[표 5-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징역형량의 차이 ····· 231
[표 5-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편차의 차이 ····· 231
[표 5-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및

중요도 차이 ····· 234
[표 6-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년 운영실적(2018~2022년) ····· 241
[표 6-2] 지역특화상담소 2022년 운영실적 ····· 242
[표 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 현황 ····· 243
[표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현황 ····· 244
[표 7-1]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사업 및 서비스 유형별 분포 ····· 282
[표 7-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 유형별 일평균 이용자수와 연평균 매출액 ····· 283
[표 7-3]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신고·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 287
[표 7-4] 주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 288
[표 7-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289
[표 7-6] 연도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1년, 2022년) ····· 291
[표 7-7]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2년) ····· 292
[표 7-8]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 301

그림 차례

[그림 2-1] 웹하드 사업자·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 구조 ····· 59
[그림 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2021년) ····· 112
[그림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미성년 범죄자 비율(2012~2021년) ····· 113
[그림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8~2022년) ····· 115
[그림 3-4] 디지털성범죄 여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 117
[그림 4-1] 디지털성범죄자 기소율(2021년) ····· 157
[그림 4-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기소율(2014~2021년) ····· 164
[그림 4-3]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추이(2014, 2020, 2021년) ····· 165
[그림 4-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기소율(2014~2021년) ····· 165
[그림 4-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범죄 기소율(2014~2021년) ····· 169
[그림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 추이(2013~2021년) ····· 177
[그림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2017년과 2021년) ····· 180
[그림 5-3] 디지털성범죄 평균 징역형량 추이(2014~2021년) ····· 183
[그림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2017년과 2021년) ····· 185
[그림 6-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 240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및 내용

1.1.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어진 N번방 사건은 오프라인 성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되어 오던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입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방지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원래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포함된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의 집행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1.2. 본 보고서의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에 대한 분석, 2)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3) N번방 방지대책 중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성과에 대한 점검, 4) N번방 방지대책 중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집행실태 및 성과에 대한 점검,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 등이다.

나. 연구방법

2.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1) 문헌연구, 2) 통계자료 분석, 3) 신상정보등록자료에 대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 분석, 4) 디지털성

범죄 판결문 및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 5)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FGI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N번방 방지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

가. N번방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전 대책과의 차이점

1.1. 2017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의 탐지 및 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 변형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의 전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는〈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1.2. 2019년에는 불법음란물 유통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 카르텔을 해체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불법음란물 유통을 통한 부당 이익을 얻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N번방 사건 이후인 2020년 4월, 정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새로운 범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 전략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로서의 사회적 인식 확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17개의 중과제와 41개의 세부 과제가 마련되었다.

나. N번방 방지법과 후속 개정법률안의 쟁점

2.1. N번방 방지대책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소위 'N번방 방지

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온라인 그루밍, 촬영물 소지·구매·시청,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신설 및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2.2. 전방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 제고,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의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각 개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N번방 방지법의 법제화 추진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목적과 함께, 일부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법제화 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가. 디지털성범죄 입건건수

1.1.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건수는 2012년 4,772건에서 2021년 13,03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의 입건 증가율은 64.3%로, 이는 N번방 방지대책 발표 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256.8% 증가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2.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는 신설된 법 조항으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와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에 운영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중 구매 및 소지 피의자가 66.0%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 비율이 전체의 49.5%에 이르렀다. 이는 구매 및 소지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를 시사한다.

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2.1.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여성 범죄자 비율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미성년자 가해자의 비율도 높다. 허위영상물등편집·반포 범죄에서 미성년자 비율은 62.3%로 가장 높았고,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연령은 20세 이하가 많으며, 특히 10대 피해자 비율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일시적 관계나 낯선 사람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이 관찰된다.

다. 피해특성

3.1.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편집·합성,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유포불안, 기타가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유포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촬영물 유포 플랫폼으로는 소셜 미디어, 성인 사이트, 검색 엔진 등이 있으며, 웹하드에서의 유포는 줄고 성인 사이트에서의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웹하드 등록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 비율은 2022년에 증가했으며, 특히 연령 정보의 유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가.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및 운영

1.1. 2021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와 외국과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1,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 수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 기법이나 경험의 공유가 어렵고,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디지털성범죄에 중점을 둔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1.3. 관련 수사 절차 규정 및 지침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2.1. 2021년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점검, 인적 및 물적 자원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2.2.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승인 및 허가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지연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수사 실무자들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의 적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3.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 거래 및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장 신분 설정 및 어떤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2.4. 현재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해, 성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당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지,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공조수사

3.1.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국제 수사 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국제 공조,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3.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2022년 10월 11일, 우리나라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위해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 입법 필요성 검토 및 국내 절차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이다.

3.3. 수사 실무자들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1년 채택·승인된 제2 추가의정서와 2019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진행 중인 새로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이행 법률 정비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가. 2021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현황

1.1.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없음’)와 수사중지(피의자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후, 나머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결정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처분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2. 2021년,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자 중 14.9%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8.7%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는 ‘혐의없음’으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접촉 성폭력범죄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불송치 비율은 낮았지만, 수사 중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1.3. 디지털성범죄 중 허위영상물편집·반포는 검찰 송치 비율이 56.8%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수사중지' 비율이 28.8%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1.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주로 '혐의없음'으로 인해 내려진 점과, 접촉 성폭력 범죄에 비해 '수사중지' 비율이 더 높은 점(특히 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서 약 3건 중 1건)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특히 익명성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2021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2.1. 2021년 검찰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사건 중 31.4%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공판 청구 결정이 전체 처분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약식재판 청구 비율인 10.5%보다 높았다. 접촉 성폭력 범죄에 비해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약식재판 청구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2.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는 상습촬영물반포가 기소율이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촬영물이용협박과 촬영물이용강요의 기소율이 각각 52.3%와 46.7%로 나타났다. 반면, 촬영물소지 범죄는 16.3%의 기소율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기소율은 30%대에 머물렀으며, 상습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38.5%와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타관송치와 소년부송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기소율이 높은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은 약식재판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이 동일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에서는 약식재판 청구 비율이 매우 낮았다. 촬영물 소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서는 기소율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었다.

다. 방지대책 이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의 변화 양상

3.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검찰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소지 등의 범죄에도 적용되며, 특히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기소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작·배포 범죄의 경우 '기소중지' 비율이 높았고, 소지 등의 범죄는 '혐의없음'과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3.2.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2018년과 2020년에 검찰의 강화된 사건처리 지침 발표·시행으로 주요 정책 대상이 되었지만,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높았으며, 지난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범죄의 불기소 사유 중 '혐의없음'의 비율이 높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신설된 촬영물소지 범죄의 경우 기소율보다 불기소율이 더 높았으나, 2021년에는 불기소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비율은 변화가 없고, 경찰의 보완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기소율 감소의 의미를 상쇄할 수 있다.

6.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가.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추이

1.1.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신상정보등록 센터의 자료와 2021년 판결문 전수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 내린 선고 유형, 징역형량, 보안처분 판결 추이를 분석했다.

1.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3년에는 벌금형 비율이 75.0%였으나 2021년에는 19.1%로 감소했고,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16.6%에서 2021년 50.3%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16년까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지만, 2017년부터 벌금형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N번방 대책 이후에는 집행유예(50.0%)가 징역형(48.3%)보다 약간 높았다.

1.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법정형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징역형량은 2017년 32.6개월에서 2021년 32.2개월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38.7개월에서 2021년 60.7개월로 상승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N번방 대책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1.4. 2020년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 비율이 2018년 6.3%에서 2021년 79.5%로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비율도 2018년 10.8%에서 2021년 55.2%로 크게 증가했다.

1.5.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증가했으며(2019년 3.6%에서 2021년 4.6%),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2019년 3.9%에서 2021년 9.5%).

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2.1.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성범죄 1심 선고사건의 판결문 전수 조사 결과,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은 전체의 17.7%였으며, 주된 사유는 양형기준제 실시 전 기소된 사건과 상상적 경합사건 등이었다.

2.2. 양형위원회는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이 명시적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고형량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경우 양형기준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양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양형기준제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률은 55.9%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 따라 적용률의 편차가 컸으며, 단독 재판부에서의 적용률은 24.6%인 반면 합의 재판부에서는 92.6%로 3배 이상 높았다.

2.3.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를 하나 이상 확정한 경우는 전체의 46.7%였

다. 특별양형인자 확정 시, 가중인자보다 감경인자를 고려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대부분 한 개의 특별양형인자만 고려되었다. 가장 많이 고려된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전체 특별양형인자 중 34.6%를 차지하였고, 판결문의 41.8%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었다. 촬영물이용협박의 경우 83.8%, 촬영물반포의 경우 45.0%에서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었다.

2.4. 특별양형인자를 하나 이상 확정한 판결문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점과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평가원칙에서 행위자/기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다른 행위인자의 감경요소와 함께 있을 때,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평가원칙 등이 56.4%의 판결문에서 권고영역이 '기본영역'으로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 양형기준 이탈률은 약 17%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형량이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반포 범죄의 하향 이탈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판매 범죄의 하향 이탈률도 57.1%로 높았다.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권고형량 하향이탈 판결문의 약 21%를 차지했다.

2.6. 권고형량을 벗어난 경우, 모든 판결문은 이탈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권고형량 이탈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은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방식과 권고형량 이탈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유만을 기재하는 방식이 있었다. 전자는 양형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후자는 권고형량 범위 이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이미 권고형량 범위 결정 시 고려된 특별양형인자를 이탈 사유로 재차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중평가의 우려가 있었다.

2.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범죄유형과 권고영역에 관계없이 상당수 판결문의 선고형량이 권고형량의 하한 부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3.1.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경우 선고형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의 심각성과 같은 영향 요인을 통제했을 때도 양형기준의 적용은 선고형량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징역형량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양형기준 적용된 판결이 미적용 판결보다 징역형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양형기준 적용 여부는 징역형량의 편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양형기준제가 판결 간 형량 편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고 대부분 양형기준이 적용된 경우라 분석사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결과는 추후 더 많은 사례를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3.3. 양형기준 적용이 집행유예 선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3.4.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분석 결과,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에서는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등', '부양해야 할 가족'과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 피해자 의사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 N번방 방지대책의 효과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1.1. 지원기관 종사자와 방심위 실무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 측면에서는 N번방 방지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1.2. 최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 중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 등에서 유포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취하는 접속차단 조치 또한 VPN 등의 사용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및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나. 피해자 지원체계

2.1.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 센터의 업무 중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은 중앙센터와, 밀착지원 업무는 지역특화상담소와 중복되어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그러나 지금은 기관 간 통일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업무 배분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3.1. 삭제지원이나 유포 모니터링 등 장기근속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음에도, 많은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연말과 연초에 심한 업무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비정규 지원 인력의 잦은 이직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새로운 담당자와 다시 상담하고 의논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비 내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4.1.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유포까지 이어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고, 유포 피해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와 피해 대처방안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2.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문화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가. 투명성 보고서의 의의

1.1.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은 기존의 사후적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전적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2. 투명성 보고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하는 문서로,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를 자발적으로 작성·공개해왔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의 한계와 불법유해정보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법적 강제를 통한 투명성 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3.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사전조치의무 대상자가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투명성 보고서에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신고·삭제 요청 횟수 및 처리결과, 유통 방지 절차, 책임자 배치, 내부 교육 실시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제출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을 평가하였다.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실제 플랫폼 방문을 통한 검증 작업도 병행하였다.

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현황과 특성

2.1. 2022년의 전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90개로, 2021년에 비해 3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고,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웹툰/웹소설 사업자는 없었다.

2.2.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매출액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에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에 있어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국 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업자도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인 Telegram은 사적 대화방의 특성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반면,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이버 비공개카페, 밴드와 같이 폐쇄형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었다.

2.4. 국내에 등록된 대규모 일반부가통신사업자만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플랫폼과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로 인한 풍선효과의 우려가 있다.

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 접수 및 처리

3.1. 2022년 한 해 동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접수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은 총 281,931건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이용자 및 피해자에 의한 신고였다. 2022년의 신고·삭제요청건수는 2021년 대비 1,365.5%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플랫폼의 신고기능 구축 완료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2. 서비스 유형별로는 소셜미디어가 신고·삭제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검색서비스가 많았다. 웹하드의 ·삭제요청 건수는 특별 관리대상 지정 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3.3. 접수된 신고·삭제요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사업자의 비율은 2021년 67.8%에서 2022년 71.3%로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삭제요청건수의 대부분은 상위 10개 사업자가 차지했다.

3.4. 신고·삭제요청건수가 많은 상위 그룹에는 주로 국제적인 해외 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사업자 간의 신고·삭제요청건수의 격차는 매우 컸다. 이는 신고시스템 구축 방식과 신고건수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3.4.1.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발효 이전부터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 신고 및 삭제시스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시행된 국내법에 대한 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대응은 1) 국내법이 요구하는 신고시스템을 기존의 자체 신고시스템에 통합하고, 고객센터 등에도 별도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와 2) 기존의 자체 신고시스템과 내부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법 요구에 맞춰 별도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체 신고 및 삭제시스템을 우선하며, 별도의 신고시스템을 고객센터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은 위치에 배치해 국내법을 회피하고, 신고건수를 과소 보고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사업자가 정형화된 서식을 통해 신고삭제요청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에서 규정하는 서식

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대부분 2개 이상의 신고기능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모든 신고기능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을 웹폼 등으로 구현하지 않은 경우, 전체 신고건수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서식을 통해 신고 된 건수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에 신고건수를 공개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신고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조사결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61.1%가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한 경우만 집계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집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3.5. 2022년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은 접수된 신고 접수건 중 70.2%를 처리하였고, 이 중 대다수인 99.8%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삭제 또는 접속차단되었다. 신고 및 삭제요청 된 대부분의 게시물이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당해 연도에 신고 및 삭제요청 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건수와 그 사유, 2) 신고사유(디지털성범죄물 유형)별 처리결과, 3) 사업자가 게시물을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하는 기준과 처리절차, 4) 신고 및 삭제요청 된 게시물 처리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5) 14일 이내 신고자 등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건수 및 기한 초과 사유, 6) 신고 및 삭제요청 된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시자에 대한 제재유형별 건수, 7) 게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제공 여부 및 이의제기건수 등. 현재 대부분의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세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4.1. [신고기능 구축 및 운영] 모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24시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접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고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식은 사업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4.1.1. 국내 사업자 간의 차이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신고시스템

구축 방식(예: 게시물 기능이 없는 웹하드 사업자)과 신고서 작성 방식(웹폼 형식 또는 이메일 제출) 등에서 나타났다.

4.1.2.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자는 게시물 근처와 고객센터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국내법에 맞게 통합하였는지, 여러 신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 중 어디에 국내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신고건수에서 차이를 초래하였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외 사업자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자체 정책을 우선시하여 신고건수가 적었다.

4.1.3. 국내외 사업자 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의 차이는 이용자의 신고 접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신고시스템이 복잡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면 이용자들이 신고를 완료하기 어려워 과소 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검색어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은 검색어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를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검색과 유포를 방지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일관되게 검색 제한 기능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색 제한어 목록을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4.2.1.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해 설정된 검색 제한어에는 '몰카', '누드사진', 그리고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검색 제한어가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물의 검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4.2.2. 검색 제한 시 표시되는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검색 결과 없음'을 공지하는 것부터, 검색 제한 사유와 관련된 사업자의 자체 제재 방침이나 형사 처벌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제한어를 검색한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검색 제한 사유로 사용하는 용어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는 용어(예: 청소년보호, 저작권 보호)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용어(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3. [게시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를 분석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여부를 식별하고 이의 게재를 제한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4.3.1. 일부 사업자는 필터링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재정적 및 관리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제거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정부는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자체 개발 또는 상용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링 기술 적용에 따른 서비스 속도 저하나 장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3. 필터링 기술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그기록의 상세한 보관이 요구된다. 현재 로그기록에 대한 규정은 간단하여, 보관해야 할 로그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4.3.4.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게시물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의 건수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이용자 대상 사전 경고조치] 업로드 기능을 갖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게시판 상단, 홈페이지, 또는 게시글 작성 창 등에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경고 문구를 노출함으로써,

그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들이 경고 문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9. 정책제언

가. 디지털성범죄 수사

1.1. [신분비공개수사에서 사후승인제도 도입] 예외적인 사후 허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만이 규정되어 있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조문 또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수사특례규정 적용범위 확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성인이며 실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국제 공조 강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는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협약에 기반하지 않는 공조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에 기반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과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 제2 추가의정서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 채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미성년 피해자에 친화적인 수사진행 상황 통지 절차 마련] 현행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체계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UN 아동권리협약상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되,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지대상권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통지대상권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하므로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2.1.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처분의 재설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하여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보안처분은 접촉 성폭력범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유 혹은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관련 정보(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상의 사용자 계정 정보 등)를 등록대상 정보로 확대하고, 등록사항의 진위에 대한 점검 시, 등록된 디지털 기기에 대해 사용이력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이나 채팅앱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방식 표준화] 양형기준 이탈 시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유는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제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정해 양형기준 이탈 사유의 표준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2.3. [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 '처벌불원' 기준의 명확화] '처벌불원' 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현재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디지털성범죄에서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감경요인으로 고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처벌불원'으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 및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며, 형사합의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작성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하다.

2.4. [범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양형인자 개발을 통한 양형 적정성 확보]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되는 비율이 낮고, 한 두 개의 특별양형인자만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세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포함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증연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범행특성을 포착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양형인자 개발을 통해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특별양형인자의 적용기준이 엄격해진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충분한 정보나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 지원

3.1.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재 중앙정부, 즉 여성가족부 사업을 통한 지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자 지원체계 하에서는 중앙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의 역할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각 사례에 대한 지원이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는 삭제지원의 특성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원기관들이 유형별로 서로 다른 규정과 체계로 운영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게 된다면 지원체계 전체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지원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통일된 기준과 규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2. [피해자 지원 인적자원 관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외부에서 관련 경력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효과적

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기간제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담당자에게 피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을 일부 줄이더라도 정규직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통한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경력 및 수준별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등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불법촬영과 유포 등의 디지털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전반과 디지털성범죄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자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교육도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에 추가하거나 4대 폭력예방교육 내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4.1. [신고 및 처리대상 불법콘텐츠의 범위 확대]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와 관련된 정보까지 불법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책임이 강화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나,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유해콘텐츠의 범위가 화상, 영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이 대부분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신상관련 정보까지로 불법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피해영상물이 신상정보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댓글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 피해영상물은 법률에 의해 삭제되나 신상정보 및 댓글은 남아 추가 피해에 노출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의 신원정보도 포함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삭제되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4.2.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체적으로 삭제 및 접속차단을 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물은 보관하지 않고 신고/삭제요청 및 삭제에 관한 기록만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차단된 불법영상물은 경찰 수사의 단서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불법촬영물 DB에 축적되어 향후 유통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확인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및 경찰의 부담을 고려하여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대상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하지 않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자체 삭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불법영상물을 보내는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다.

4.3.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이행한 조치 의무가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신고기능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기능과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신고환경인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및 삭제요청 건수를 집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점검하고 명확한 집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가 검색 제한어를 검색하는 경우 교육적 효과 및 경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4.4. [투명성 보고서의 최소보고요건 확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모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되는 내용으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제하는 도구로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보고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삭제·차단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후 삭제·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신고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를 어떻게 제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합·분석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 론

김 지 선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목적 및 의의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시킨 N번방 사건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도 소라넷 사건, 손정우 사건, 웹 카르텔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측면이 드러났었지만, N번방 사건을 통해 일반인은 오프라인 성폭력과 비교하여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1)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2)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3)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4)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네 가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7개 중과제,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국무조정실, 2020). 관련 정부부처은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들을 제안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이어졌

는데, 이를 포괄하여 “N번방 방지법”이라는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이준복, 2022).

N번방 방지법에 포함된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간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 정책화되지 못했던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 경찰의 위장수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의 시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에서 주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2019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성폭력특별법 제14조)를 제7차 양형기준 범죄로 지정하고,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 관행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은 법원의 판결을 먹고 자라났다"는 해시태그에서 드러나듯, 법원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폭되었고, 이에 법관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특별법 제13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로 확대하였으며, 뒤이어 2020년에 신설된 허위 영상물의 편집 및 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도 포함시키고 특별 양형인자를 조정하였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대책 수립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반드시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목표했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N번방 방지법 중 가장 시행 시점이 늦었던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에 본 연구는 N번방 방지법에 포함된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제2절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책 효과 평가에 앞서 N번방 방지대책과 그 입법적 결과인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2020년 4월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이전에 발표된 두 차례의 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책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의의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N번방 방지법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입법적 결과인 N번방 방지법의 제안 배경, N번방 방지법 개정 과정에서 발의된 다양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2020년 이후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제안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으로서 현행 N번방 방지법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향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나.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특성 분석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의 효과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성범죄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정책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실태,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행 특성을 조사하였다.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특성 분석은 다음 네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최근 10년간 성범죄의 전반적 양상과 디지털성범죄가 전체 성범죄 양상에 미친 변화를

조사하였다. 둘째, 디지털성범죄의 세부유형별 변화를 분석하고, N번방 방지대책, 특히 경찰의 특별수사단 등의 운영이 디지털성범죄 증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와 접촉 성폭력 범죄(강간 및 강제추행)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넷째, 피해자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피해자 특성에 따라 피해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다. N번방 방지대책 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본 연구에서는 N번방 방지대책을 두 가지 주요 정책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처벌 강화 정책"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범위 확대, 법정형 상향, 보안처분 확대, 수사 특례 규정 마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책"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와 피해자 지원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정책의 집행 과정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1)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N번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일부에만 적용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제도를 모든 디지털성범죄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수사, 기소, 판결을 담당하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벌 강화 정책의 집행 과정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N번방 사건을 전후로 한 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각 형사사법기관의 N번방 방지대책 시행이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1) 경찰의 수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와 국제공조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N번방 방지법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로 신분비공개수사를 법제화하고 신분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경찰 수사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수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실제 수사에서의 장애요인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탐지 및 적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포 및 복제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조수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 수사기관 및 민간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조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검찰의 처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부분에서는 각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제작 및 촬영, 유포, 구매, 소지 및 시청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 유형별로 검찰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의 송치 결정과 검찰의 처분 결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작 및 촬영, 유포, 구매, 소지 및 시청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유형별로 검찰이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결정과 검찰의 처분 결정을 조사하였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인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변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반으로 한 불기소율 산출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연구에서는 2021년 자료를 분석하여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이것이 검찰의 기소율이나 불기소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20년에 시행된 강화된 검찰의 사건처리지침이 실제 처분 현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식과 그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구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를 재구성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을 대상으로 법원의 선고유형, 징역형량, 보안처분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를 구성하는 세부 행위별로 법원의 판결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의 판결문을 조사하여, 선고유형, 징역형량, 보안처분에서의 변화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21년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와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2021년에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형기준이 적용된 경우에 양형의 전 과정에서 원칙 및 기준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과 적용되지 않은 판결을 비교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 비율, 징역형량, 판결 간 징역형량 편차, 고려되는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에서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양형기준제 도입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벌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였다.

[표 1-1]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주요 연구내용

분야	주요 연구내용 및 검토 지표	
경찰 수사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국제공조 : 해외 형사사법기관, 민간사업체, 국제기구 간 공조	
검찰 처분	2021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결정 및 검찰의 처분	
	처분 추이	• 연구내용 –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검찰의 처분 추이 (2014년~2021년) – 미성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추이 (2014년과 2021년) • 분석대상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 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

분야	주요 연구내용 및 검토 지표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불법촬영물 소지 • 검토 지표 - 구공판 청구율 - 불기소율 - 기소중지율 - 보완수사요청비율(2021년)
법원 판결	판결 추이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한 판 결 및 결정 추이(2013년~2021년) -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의 변화(2017 년과 2021년) • 검토 지표 - 집행유예 선고 비율 - 징역형량 - 보안처분 부과 비율 :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 연구내용 - 양형기준 적용율(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 특별양형인자의 확정 - 권고형량 조정과정에서 원칙 준수 - 권고형량 범위 내 선고형량 분포 - 권고형량 범위 이탈율과 이탈 시 사유 기재율
	양형기준제 효과	• 연구내용 - 디지털성범죄 판결 중 양형기준 적용 판결과 미적용 판결 간 차이 • 검토지표 - 선고형량 - 집행유예 선고 비율 - 징역형량과 징역형량의 편차 -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한 참작사유

2)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1) 지원기관의 피해자 지원

2017년 9월에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던 삭제지원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어 2020년 N번방 방지대책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4시간 신고상담 체계, 선제적 삭제지원,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치유 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요 거점 지역별로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디지털성범죄 대응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 지방자치단체 운영 센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피해자지원 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관 간 협업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발달적 특성과 사회적·법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고유한 특성과 피해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피해영상물 삭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각 피해자 지원 간 협업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전체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각 기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지자체의 지원기관 등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공조 현황이다.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포함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N번방 방지대책에 포함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과정에서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속성과 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온라인 재유통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성폭력특별법 제14조)만을 대상으로 했던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 의무를 허위영상물(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와 모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에게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사전 필터링 기술 적용 등을 포함한 4가지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와 더불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의무 이행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매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각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투명성 보고서에 제시된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이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개선이나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의 주된 분석항목은 크게 1)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이 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2)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 접수 및 삭제·차단 조치 현황과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3)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은 다시 세분하여 ⅰ) 신고기능 구축 및 운영, ⅱ) 검색어 식별 및 검색어 제한 조치, ⅲ) 게시물 식별(필터링) 및 게재제한 조치, ⅳ) 이용자 대상 사전경고 조치 분야에서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접수 및 삭제·차단 조치 현황에 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ISP들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삭제나 차단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에 관한 분석이다. 이 부분에서는 신고 기능 구축 및 운영, 검색어 식별 및 제한 조치, 게시물 식별(필터링) 및 게재 제한 조치, 이용자 대상 사전 경고 조치 등의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한편, 투명성 보고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검색 및 게재 제한과 같은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규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체계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강제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관련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고려해 향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보고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각 조치들을 점검하였다.

[표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관련 주요 연구내용

분야	주요 연구내용 및 검토 지표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지원	• 전체 피해자 지원 체계 및 현황 •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와 국제 공조 현황 • 피해자 지원의 애로 사항 –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 – 운영체계상의 요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	• 사전조치의무부과 대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 •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처리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태 및 문제점 – 신고기능 구축 및 운영 – 검색어 식별 및 검색어 제한 조치 – 게시물 식별(필터링) 및 게재제한 조치 – 이용자 대상 사전경고 조치 • 인터넷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이행 강화 및 규제 성과 평가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에 추가해야 할 최소보고요건 검토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선행연구, N번방 방지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쟁점, N번방 방지법 개정이후 발의된 후속 개정법률안 검토, N번방 방지대책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자 특성에 관한 국내외 실증 연구결과, 외국과 국내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책, 외국과 국내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및 지원방식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 국회 및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의 문제 상황 및 쟁점을 확인하였다.

나. 통계자료 분석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및 처분 현황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연감」을 활용하였다.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나, 공식 통계자료집을 통해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계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진이 다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비공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통계 자료도 필요한 경우 활용하였다. 각 기관별로 활용한 통계자료 항목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각 기관별 활용 통계

기관	통계집/통계	통계항목
경찰청	「범죄통계」, 내부자료	• 입건건수 • 범죄자의 성, 연령 • 피해자의 성, 연령
	사이버범죄수사과 내부자료	•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활용 실태
대검찰청	「범죄분석」	• 검찰의 기소, 불기소 현황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 양형기준제 준수율 • 선고내역 • 선고형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피해자의 성, 연령 •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유형 • 유포된 플랫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 연감」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현황 •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시정요구현황 • 자율규제(선 삭제) 현황

다. 이차자료(secondary data) 분석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이다. 그러나 「사법연감」은 범죄를 형법의 각 장 및 특별법상 죄명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디지털성범죄나 세부유형별 선고 현황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판결문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를 위해 법무부 전자감독과에 요청하여 받은 신상정보등록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해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법무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로, 법원에서 받은 성범죄자의 판결문(혹은 약식명령 등본)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재등록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에 의해 성범죄자가 최초등록 시 경찰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신상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등과 판결문에 포함된 정보인 판결일자,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부착기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개시일, 만료일 등이다(김지선 외, 2020).

2020년 연구진이 구득한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는 200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이며, 성범죄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신상정보 부분은 모두 삭제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 중 양형에 관한 항목을 추출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정리한 후 분석하였다.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는 자료수집 기간이 약 12년간으로 길어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실태 상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선고형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량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디지털성범죄자도 포함하고 있어 자료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자료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닌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성범죄자는 1)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제공, 전시, 상영죄(제3항) 및 소지죄(제5항)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디지털성범죄자의 일부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죄가 전체 디지털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등 및 소지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제외된다는 점, 기소된 디지털성범죄자 전수에 대한 법원의 양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안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내용분석

1) 디지털성범죄 판결문

(1) 조사목적

본 연구에서는 1) N번방 방지대책을 전후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변화(선고유형, 징역형량, 보안처분 등) 양상 파악 및 2)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로 나타나는 양형 실무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과 2021년 디지털성범죄자의 1심 판결문에 대한 전수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2021년 디지털성범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양형위원회에는 매년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에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내역(실형과 집행유예), 양형기준 영역별 분포 및 평균징역형량 등 양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운영지원단에서 양형기준 준수율 집계 시 사용하는 정의 및 기준이 양형연구자들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연간보고서에는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율과 이탈율, 양형기준 이탈 시 이유 기재 여부 및 기재 시 주된 이탈 사유,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시 고려된 양형요인과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선고 시 참작 사유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실질적인 양형기준제의 적용 및 준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이며, 향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주요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1심 판결문을 직접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 판결문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가 적용되는 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1)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2)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3)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4가지 유형의 범죄이다. N번방 방지대책의 주된 초점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이 아닌 디지털성범죄물이라는 점과 연구기간의 한계를 고려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판결문 내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판결문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두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2017년 판결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하며, 2021년 판결문은 2021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 즉, 사건번호가 '2021'로 시작되는 1심 판결문 중 2021년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한다. 두 기간의 판결문 추출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은 2021년 판결문은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기준제의 적용 실태 및 그 효과를 보기 위한 자료는 2021년 판결문 조사자료 중 7월에서 12월 자료만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가 시행되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월 기소된 이후 법원에 접수되어 판결이 시작되기까지 등의 시간을 고려해 2021년 7월 이후 1심 판결문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 조사대상 판결문 수집 방법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 원문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엘○○를 이용해 디지털성범죄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판결문 원문서비스 제공 사이트에서 디지털성범죄 판결문 검색 시 법원에서 판결문 기재 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결문의 죄명에 아래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죄명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디지털성범죄라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거나 공소기각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4] 판결문 검색 시 활용한 죄명 키워드

검색 키워드	해당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3항,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3항,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2항,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

검색 키워드	해당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 5항,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 5항, 2항,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 5항, 3항,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2항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3항,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4항, 1항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4항, 2항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4항,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
	청소년성보호법 11조 3항
	청소년성보호법 11조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 11조 7항, 1항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거쳐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된 판결문 수를 연도별 및 범죄유형별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5] 대상 범죄 및 형종별 조사 판결문 수

대상범죄	형종	조사 판결문 수		
		2017년	2021년	전체
전체 디지털성범죄		1,248 (100.0)	1,640 (100.0)	2,888 (10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유형 제작, 수입, 수출	29 (2.3)	214 (13.0)	243 (8.4)
	2유형 영리목적 판매, 배포 등	18 (1.4)	37 (2.3)	55 (1.9)
	3유형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등	6 (0.5)	47 (2.9)	53 (1.8)
	5유형 구입, 소지, 시청	11 (0.9)	370 (22.6)	381 (13.2)

대상범죄	형종		조사 판결문 수		
			2017년	2021년	전체
카메라등 이용촬영	1유형	불법촬영	1,117 (89.5)	639 (39.0)	1,756 (60.8)
	2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반포, 판매 등	65 (5.2)	103 (6.3)	168 (5.8)
	3유형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2 (0.2)	5 (0.3)	7 (0.2)
	4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0 (0.0)	14 (0.9)	14 (0.5)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유형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0 (0.0)	2 (0.1)	2 (0.1)
	2유형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0 (0.0)	10 (0.6)	10 (0.3)
	3유형	영리목적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	0 (0.0)	3 (0.2)	3 (0.1)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유형	촬영물 등 이용 협박	0 (0.0)	176 (10.7)	176 (6.1)
	2유형	촬영물 등 이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0 (0.0)	20 (1.2)	20 (0.7)

(4) 분석항목

판결문을 통해 추출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6] 디지털성범죄 1심 판결문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건 식별 및 사건 처리 특성	사건 식별	• 사건번호 • 판결 선고연도 • 피해자 연령별(성인, 청소년, 13세미만) 피해자 수
	사건 처리 특성	• 1심 법원명 • 1심 단독/합의심 여부 • 처분죄명 • 경합범 여부 및 종류 • 경합된 범죄명 • 디지털성범죄 세부죄명 및 경합된 디지털성범죄 세부죄명
양형	양형기준제 적용 여부	• 양형기준 기재 여부 및 기재 방식 • 양형기준 기재 사항 상, 하한 이탈 여부, 이탈 시 사유 기재 여부, 구체적인 사유
	양형기준 기재사항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형종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 권고영역 • 권고형량범위 •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조정 여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조정된 권고형량범위 • 처단형과의 불일치에 따른 권고형량 조정 여부 • 조정된 권고형량범위
	선고형량 및 권고형량 이탈여부 등	• 선고형량 • 권고형량 이탈 여부 • 권고형량 이탈 시 양형이유에 사유기재여부 • 기재된 사유
	양형	• 선고유형 • 징역형량 •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 취업제한 부과 여부 및 기간 • 형집행종료후 보호관찰 부과 여부 및 기간 • 신상정보공개/고지 부과 여부 및 기간 • 이수명령 부과 여부 및 기간
	양형인자	• 법적인 가중/감경인자 적용 여부 소년법감경, 미수감경, 방조감경, 누범감경, 심신미약감경,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양형이유 제시된 양형인자(집행유예인 경우, 긍정적, 부정적 참작사유)
범죄자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미성년자 여부) • 지적장애 여부 • 직업 • 정신과 감정 및 치료 여부
	범죄경력	• 범행 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의 여부 • 이종 전과 여부 및 횟수 • 동종 전과 여부 및 횟수

2) 투명성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성 보고서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사전 예방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보고서 형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과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 입력 후 각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투명성 보고서에 제시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제 인터넷 인터페이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가를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이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투명성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했으며, 2021년과 2022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에 제시된 항목은 음영처리 된 항목은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 후 연구자들이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한 항목이다.

[표 1-7] 투명성 보고서 내용분석 항목

분류	내용분석 항목	
Ⅰ. 일반적인 사항	• 사업자명	
	• 주요서비스유형	
	• 3개월 평균이용자수(명)	
	• 연평균 매출액(억원)	
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계획 제시 여부	
	• 계획에 포함된 내용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Ⅲ. 신고기능 구축 및 신고 및 처리관련 내부 지침과 절차	• 신고방식	홈페이지/앱 신고기능
		고객센터 등에 별도의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페이지 운영여부 별도 신고센터 운영시 안내용 팝업이나 배너 현출 여부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 안내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기타 신고기능
	• 온라인 신고 사이트 주소 및 접속가능여부	
	• 홈페이지, 앱 자체 고기능과 별도 고센터의 구현 방식	-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 배치 여부 - 자체 신고기능 이용 시 로그인 필요 여부 - 신고항목에 불법촬영물 등 관련 항목 포함 여부 및 사용된 용어 - 신고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 작성 방식 : 웹폼,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신고기능 마련 여부
	• 신고, 삭제요청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 여부	
	• 신고삭제 요청을 한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내부절차 안내 여부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처리를 담당할 부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 여부	
Ⅳ. 검색어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디지털성범죄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설정 및 제시 여부	
	• 검색 제한어 DB 구축 여부	
	• 검색결과 송출 제한 조치 건수 제시 여부 및 조치 건수	
	•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내부기준 및 방법 제시 여부	
	• 연관검색어 등 제한에 관한 사항 제시 여부	
	• 검색 제한어 및 연관검색어 검색 시 이용자에게 송출하는 메시지 내용	

분류	내용분석 항목	
Ⅴ. 게시물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필터링 기술	- 필터링 기술 적용여부 - 미적용 시 , 미적용 이유 -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기술적 필터링을 적용하는지 여부 - 일부에 적용된다면, 기술적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 - 적용 시, 적용기술(정부기술 vs 자체개발 기술 vs 상용기술) - 자체기술개발인 경우, 기술명
	• 오식별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시 여부	
	• 필터링을 통해 차단된 게시물 수	
	• 게시물을 차단당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Ⅵ. 사전경고	• 사전경고 문구 게시 여부 및 게시 내용	
	• 사전경고 문구가 게시된 위치	
Ⅶ. 로그기록 보관	•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 제시 여부	
	• 보관되는 로그기록 내용에 관한 사항 제시 여부	
Ⅷ. 기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 유통 방지관련 내부규칙 제시 여부	
	• 신고처리 관련 통계관리 제시 여부	
	• 유통 방지관련 캠페인 등 홍보 관련 사항 제시 여부	
	• 기타 유통 방지 노력으로 제시한 사항	
Ⅸ.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 신고삭제요청인 집계 시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한 신고서만 집계했는지 여부	
	• 신고·삭제요청인 건수	- 피해자등(명) - 기관단체(명)
	• 신고사유별 건수	- 불법촬영물(건) - 허위영상물(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건) - 신고사유의 중복집계여부 - 신고현황표 제출 시 신고사유별로 사용된 용어
	• 처리결과별 건수	- 삭제접속차단(건) - 방심위 심의요청(건) - 기타(건) - 기타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여부
	• 삭제차단 이유별 건수	- 불법촬영물(건) - 허위영상물(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건)
Ⅹ. 유통 방지교육	• 자체교육 횟수	
	• 법정교육 횟수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실제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는 사항임

마. 개별 심층면접 및 FGI

1) 개별 심층면접 및 FGI 개요

N번방 방지대책의 시행 현황, 시행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및 문제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접 혹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그룹 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별 심층면접 방식을 활용하였다.

개별 심층면접 혹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크게 1)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2) 경찰, 3)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실무자 집단별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와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

(1)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및 FGI는 반구조화된 면접조사표를 활용하여, 주로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변화 양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용, 업무량,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유관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현황, 현 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피해 특성과 관련된 지원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 시에는 1) 주로 성인 대상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특화 지원체계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상이하다는 점, 2) 디지털성범죄 특화 지원체계도 한국여성인권진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특화상담소”,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분화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3) 지역특화상담소의 경우에도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 4)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아동형 해바라기센터(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아동·청소년 관련 성폭력 피해상담기관 및 성매매 지원기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

원센터, 17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종사자가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의 구성 시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기관 종사자와 디지털성범죄 특화 지원체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구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는 개별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면접 및 FGI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 방식과 대면 방식 및 서면 자문을 병행하여 활용하였고, 한 집단 또는 한 명의 종사자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표 1-8]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연번	소속기관 분류	일자	일자
1	지방자치단체 지원 센터	23.05.17.	개별
2	지방자치단체 지원 센터	23.05.22.	개별
3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23.05.22.	개별
4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23.05.30.	FGI
5	해바라기센터	23.05.26.	FGI
6	지역특화상담소	23.05.30.	FGI
7	민간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23.05.26.	FGI
8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23.10.19.	개별
9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23.10.20.	개별
10	지방자치단체 지원 센터, 지역특화상담소	23.10.25.	개별
11	지방자치단체 지원 센터, 지역특화상담소	23.10.26.	개별
12	지역특화상담소	23.11.06.	서면

(2) 경찰

경찰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구매, 온라인 그루밍 등 신설된 디지털성범죄 처벌 조항 수사의 어려움,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술개발 관련 이슈, 효율적인 수사조직 구성 방안 등에 대한 경찰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1)]

1) 경찰 대상 면접조사지는 [부록2] 참조.

현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과에서 수사 시 필요에 따라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과 소속 경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중 가급적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련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경찰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체 연구 및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의뢰하였고, 4명의 경찰을 소개받았다. 이후에는 심층면접을 마친 경찰을 통해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경찰을 소개받는 스노우 볼링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1-9] 경찰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연번	소속 과	근무지역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경험
1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위장수사 정책담당	서울	
2	사이버수사과	서울	○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경북	○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제주	○
5	사이버수사과 국제공조 담당	서울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및 FGI 또한 유사하게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변화 양상, 자율규제 요청 및 접속 차단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취하는 조치의 내용, 업무량,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피해자 지원기관 및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현황, 현 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로는 1) 피해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인과 2) 심의위원회 운영 등 긴급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인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표 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연번	소속기관 분류	주요 업무	일자	진행방식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접수	23.10.31.	FGI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대응(심의)	23.10.31.	FGI

3. 용어의 정의

가.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물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현재의 법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을 채택하여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행위'로 정의한다(김희정 및 박광민, 2021; 최종선, 2022; 장다혜 및 최수아, 2018).

다만, 연구대상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3조)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서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등의 신고 시 삭제차단조치 의무를 부과한 대상인 '불법촬영물 등'을 대체하는 용어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사용하였다. 이 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 등'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용어와 '불법촬영물 등'이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으며, 기존 용어인 불법촬영물에 '등'이 추가되었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이 용어를 사용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디지털성범죄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한 사업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유통을 매개해주는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임효준, 2023).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에 관련된 두 개의 법, 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다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김 민 지

제2장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제1절 | N번방 방지법의 시행 배경 및 경과

1. N번방 방지대책 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가.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1)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

2017년 당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수법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과거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촬영 장소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점,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2] 디지털성범죄는 ⅰ) 판매 및 촬영 단계에서는 누구나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수입·판매할 수 있고, 촬영음을 무음으로 변경시켜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

2) JTBC 뉴스,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수억 챙긴 일당 붙잡혀", 2015.09.0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5580(검색일: 2023.06.30.), 연합뉴스,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 올려 1억6천만원 챙겨", 2016.6.24.,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4085800065?input=1195m(검색일:2023.06.30.), 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OUT…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2017.08.18.,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62(검색일:2023.06.30.), 오마이뉴스, "몰카에 여성들 죽어가는데... 이메일도 안 읽는 SNS업체", 2017.8.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3919 (검색일:2023.06.30.) 등.

이 어려워졌다는 점, ii) 유포 및 신고 단계에서는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 및 유포·확산을 촉진시키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 iii)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기법 및 능력이 부족하고 채증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iv)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경미하고, 현행 처벌 규정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v)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부재하고, 피해자 본인이 불법영상물의 삭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vi) 불법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홍보·교육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표 2-1] 디지털성범죄의 문제점

단계	문 제 점
판매·촬영	• 소형·변형카메라 수입·판매 관련 무규제 → 이력관리 불가능
	•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의 어려움
유포·신고	• 불법영상물 신속한 검출·차단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부재
	• 영리목적 유포자(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단속·수사	• 디지털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수사기법·대응력 부족
	• 공중화장실 등 몰카 단속 위한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가해자 처벌	•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벌금형 등)
	•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 처벌요건 미비
피해자 지원	• 피해사실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체계적 지원 부재
	• 피해자가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예방·교육	• 몰카 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피해방지 위한 홍보·교육 미흡

※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7),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p1.

이와 같은 2017년 당시 사회적 배경 하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하, '2017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3]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 안심

3)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총괄 하에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인사처, 방통위, 관세청, 경찰청, 방심위까지 총 14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09.26.).

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전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2)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017년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성범죄의 각 6단계: 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②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③ 디지털성범죄 단속·수사, ④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⑥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첫 번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변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고, 촬영 사실 표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위험성 고지 등을 통해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의 이용을 제한하고,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을 통하여 영상촬영기기의 보안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수입 심사 및 검사도 강화하고, 우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단계에서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하여 불법영상물에 대한 즉시 내지 先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불법영상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통제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및 DNA 필터링 기술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의 탐지·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긴급신고 버튼 개설 및 불법영상 모니터링 신고 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디지털성범죄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조치로 탐지 장비를 확충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및 숙박시설,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일제 점검하고, 국내외 몰카 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

4) 이하 내용은,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09.26.) 참고.

위하여 국내 행정기관 및 국제 기간 사이 불법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네 번째,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단계에서는 영리목적 등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하며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추징하고, 디지털성범죄 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시행하고,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며,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을 정부가 선지급하되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공공기관 및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나.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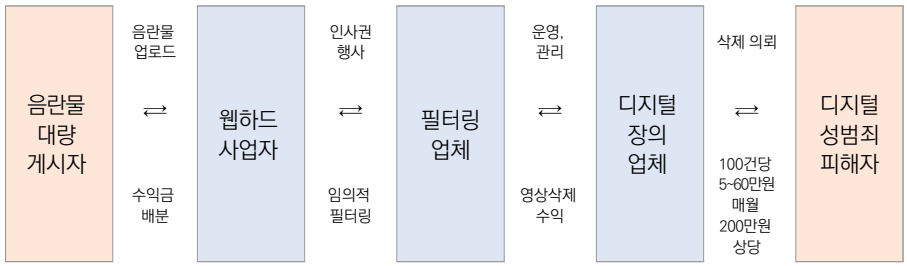
1)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의 추진 배경

2017년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자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되었다.[5]

---

5) 뉴시스, “"양진호 선정적 영상이 시선 끌어…본질은 '웹하드 카르텔'"”, 2018.11.06., https://news is.com/view/?id=NISX20181106_0000464926&cID=10201&pID=10200(검색일:2023.06.30.), 경향신문, “양진호 소유 ‘위디스크 → 필터링 → 디지털장의업체’ 거대 조직이었다”, 2018.11.0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1072141015 (검색일:2023.06.30.), 조선일보, “'몰카 생산독려→ 유통→감시' 3각카르텔 중심에 양진호 있었다”, 2018.11.16., https://www.ch 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6/2018111601325 .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2023.06.30.) 등.

[그림 2-1] 웹하드 사업자·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 구조



※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웹카르텔 방지 대책, pp. 1~5 재구성.

이에 따라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 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하, '2019년 방지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6]

2)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

2019년 방지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당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는데, 크게 3가지 분야: ①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의 신속한 차단 및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의 강력 처벌, ②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 DB 제공,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로 나누어 각 분야별 추진 사항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먼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 매체 및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위한 심의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 및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

---

6) 방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방심위까지 총 8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01.24.).

7) 이하 내용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01.24.) 참고.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까지 필터링에 참여하고,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 DB를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며,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추진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관련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원스톱 지원체계의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분야의 확대가 추진 방안으로 포함되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계획도 대책으로 담겼다.

2. N번방 방지대책

가. N번방 방지대책의 수립

2017년 및 2019년 디지털성범죄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정부는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하, 'N번방 방지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8] 앞서 2017년 및 2019년의 2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N번방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당시 상황과 달리, 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였고 ⅱ) 불법촬영물 등의 유효화를 통하여 대규모의 범죄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가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조직화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새로운 범죄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

8)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총괄 하에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까지 총 9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04.23.).

[표 2-2]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	(단순 촬영물)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한 불법영상	⇨	(다양화) +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공한 성착취물
유통매체	(공개적)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폐쇄적) • 해외 서버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가해자	(개인 범죄) •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조직화) •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피해자	(피해자 불특정) •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자료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p2.

N번방 방지대책은 새로운 범죄 유형 대응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마련된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환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총 17개 중과제 및 41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N번방 방지대책은 수립 당시 디지털성범죄의 새로운 양상으로 인하여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책의 범위 및 처벌 유형 및 정도, 수사 방법 등에 있어 앞선 2차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과 차이가 있다. N번방 방지대책 중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과제들은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표 2-3] N번방 방지 대책 마련 전후 비교

구분	기 존	개 선
대책의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처벌기준(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美 10년 이하 vs 韓 1년 이하 징역)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구분	기 존	개 선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선고 ▸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 적발 곤란	▸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 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시 수익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 자료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p9.

나.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추진 경과

1)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

(1) 수사의 실효성 제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N번방 방지대책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성범죄의 폐쇄성 및 보안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21대 국회에 총 3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안[9], 진선미 의원안[10], 양금희 의원안[11]이 발의되었다. 3건의 발의안 모두

9) 의안번호 2100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3인), 제안일자 2020.06.11.
10) 의안번호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4.
11) 의안번호 21050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내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시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 신분을 위장 내지 비공개하여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2-4] 위장수사제도 관련 발의안의 차이

구분	제안자	주요 내용
대상범죄	권인숙 의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범죄
	진선미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및 제15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
	양금희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
개시 요건	권인숙 의원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진선미 의원	
	양금희 의원	
수사 방식	권인숙 의원	•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 •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
	진선미 의원	•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에게 접근하여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 •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에게 접근하여 위장된 신분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
	양금희 의원	•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
통제 장치	권인숙 의원	• 사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승인
	진선미 의원	
	양금희 의원	
수사 기간	권인숙 의원	• 6개월 제한
	진선미 의원	• 6개월 제한 • 수사 갱신 가능 • 안전한 수사 중지를 위한 최대 4개월 추가 수사 가능
	양금희 의원	• 6개월 제한
증거능력	권인숙 의원	• 해당 규정 없음
	진선미 의원	• 해당 규정 없음
	양금희 의원	•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

구분	제안자	주요 내용
수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권인숙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위임
	진선미 의원	
	양금희 의원	
신원공개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권인숙 의원	• 해당 규정 없음
	진선미 의원	• 수사 진행 사법경찰관리의 신원 공개 금지 • 신원 공개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양금희 의원	• 해당 규정 없음

권인숙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양금희 의원안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02.17.)에 상정되어,[12] 각 법률안의 내용이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13] 위 법률이 2021년 3월 12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이다.[14]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의 수사 특례에 관한 규정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벌칙 규정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시안 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이다. 3건의 발의안이 공통적으로 제25조의2 단일 조문 신설을 통해 위장수사의 대상 및 요건, 기간 등을 정하되 나머지 수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위원회 대안은 총 9개의 조문 신설 및 벌칙 규정 개정을 통해 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ⅱ) 수사기법별로 허용되는 행위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으며, ⅲ)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및 자료의 사용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면책, 수사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

12) 2020년 12월 15일 황보승희 의원이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9)도 함께 상정되어 위원회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본문에서 별도 언급하지 않는다.

13)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1.02.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02.26.)에서 수정가결되었고, 이 법안은 2021년 2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M0C1L2D1E5Y1V4H1W4W0H4R8Z8S7, 최종검색일: 2023.06.30.).

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M0C1L2D1E5Y1V4H1W4W0H4R8Z8S7, 최종검색일: 2023.06.30.).

한편, 3건의 발의안 중 진선미 의원안에서 제시된 수사 갱신 결정 없이 안전한 수사 중지를 위해 최대 4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상 허용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안 제25조의2제3항), 수사 진행 사법경찰관리의 신원공개 금지 및 이에 따른 처벌 조항(안 제25조의2 제5항 및 제65조 제1항·제2항) 등은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나, 3건의 발의안 모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 특례 규정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N번방 방지대책은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써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성범죄 신설 및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23건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2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2차례의 걸쳐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되었는데,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성범죄를 신설하거나 기존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건[15]이,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건[16]이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

15) 청원번호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2.10. 해당 청원은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2020.2.10. 접수되어 2020.3.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며 2020.3.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청원 취지가 반영되어 2020.3.4. 본회의불부의되었다. 청원의 요지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U0B2J1N1Z1Q3D2J2J2N6C0B5H7, 최종검색일: 2023.10.10.).

16) 이 중 8건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06.28.; 의안번호 20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2.29.; 의안번호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8.01.05.; 의안번호 20123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5]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17]	민경욱 의원[18]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박대출 의원[19]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박광온 의원[20]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거나 그 합성물·편집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이종걸 의원[21]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22]	백혜련 의원[23]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송희경 의원[24]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
	박광온 의원[25]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의2 개정),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박대출 의원[26]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8.03.06.; 의안번호 20181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1.16.; 의안번호 20200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19.04.29.; 의안번호 20220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8.19.; 의안번호 2020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05.03.)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한정애 의원[27]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죄를 상습 가중 처벌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4항 신설)
	이종배 의원[28]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 처벌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정성호 의원[29]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 범위 확대 및 법정형 현실화 등 (안 제14조 개정)
	윤소하 의원[30]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 재조정(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개정), 괴롭힘 또는 협박 목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4조의3 신설)
	윤상직 의원[31]	협박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에게 촬영물 유포 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3항신설)
	김영호 의원[32]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죄 신설(안 제14조제3항 신설)
	진선미 의원[33]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의 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7) 의안번호 20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자 2020.03.04.
18) 의안번호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8.02.14.
19) 의안번호 20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11.29.
20) 의안번호 2023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15.
21) 의안번호 2023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9.10.31.
22) 의안번호 20248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자 2020.04.29.
23) 의안번호 2024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일자 2020.03.23.
24) 의안번호 2024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25.
25) 의안번호 2024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31.
26) 의안번호 20248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4.09.
27) 의안번호 20248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28) 의안번호 2024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1.20.
29) 의안번호 2009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09.07.
30) 의안번호 20191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3.13.
31) 의안번호 2018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1.09.

먼저, 첫 번째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의 내용이 통합·조정되어 제안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2020년 3월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34] 위 법률은 2020년 3월 13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35] 당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에 따른 개정안으로 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성안되었다.

두 번째로 마련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19건의 법률안의 내용이 통합·조정되어 제안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 법안은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36] 위 법률은 2020년 5월 8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0년 5월 19일 공포·시행되었다.[3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등으로 성안되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새로운 디지털성범죄를 신설하거나 기존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32) 의안번호 2020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05.07.

33) 의안번호 20233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19.10.30..

34)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0. 3. 4.)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법안은 2020년 3월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H0D0P3S0J3L2R0J3C9F3U1H0A7H1, 최종검색일: 2023.10.10.).

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H0D0P3S0J3L2R0J3C9F3U1H0A7H1, 최종검색일: 2023.10.10.).

36) 제377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0. 04. 29.)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법안은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최종검색일 2023.10.10.)

3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최종검색일 2023.10.10.).

안 대안으로 반영되었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6]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38]	송희경 의원[3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 일괄 상향,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소지한 자에 대한 형량 강화(안 제11조 개정)
	박대출 의원[40]	협박, 강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안 제11조 신설)
	백혜련 의원[4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의 하한 설정 등 법정형 강화(안 제11조 개정)
	한정애 의원[4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의 형량을 일괄 상향(안 제11조 개정)
	정춘숙 의원[4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제3항 개정)
	윤후덕 의원[4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정형 강화(안 제11조 개정)
	강창일 의원[45]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안 제11조제5항 개정)
	신창현 의원[4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하한 규정 마련을 통한 처벌 강화(안 제11조제2항 개정 등)
청소년성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47]	진선미 의원[4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상의 그루밍 처벌 규정 마련 등(안 제13조제2항 개정)
	황보승희 의원[49]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권인숙 의원[5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개정)

38) 의안번호 20249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0.05.20.
39) 의안번호 20248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25.
40) 의안번호 20248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4.09.
41) 의안번호 20248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4.20.
42) 의안번호 20248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43) 의안번호 20248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4.24.
44) 의안번호 20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10.11.

먼저, 첫 번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51]의 내용이 통합·조정되어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고,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52] 2020년 5월 22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2020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53]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마련되었다.

두 번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4건의 법률안[54]의 내용이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26일 제384회 국회

---

45) 의안번호 20238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14.

46) 의안번호 2023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21.

47) 의안번호 21084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1.02.26.

48) 의안번호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4.

49) 의안번호 21064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12.15.

50) 의안번호 2100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3인), 제안일자 2020.06.11.

51) 청원번호 2000214,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국민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4.15. 해당 청원은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2020.4.16.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5.6.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청원 취지가 반영되어 2020.5.7. 본회의 불부의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U0L0J4O1P6T0A8I4S8F5A6V5J4L3, 최종검색일 2023.10.10.).

52) 위원회 대안은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0.5.20.)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0Q0K5Z0J6P1S5D3W2C2J1H5L3B1, 최종검색일 2023.10.10.).

5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0Q0K5Z0J6P1S5D3W2C2J1H5L3B1, 최종검색일 2023.10.10.)

54) 이 중 1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수사특례규정 도입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55] 위 법률은 2021년 3월 12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56] 당시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의2가 마련되었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1) 삭제지원 강화

N번방 방지대책 중 피해자 보호·지원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의 범위 및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총 2차례의 걸쳐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표 2-7] 삭제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57]	김수민 의원[58]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개정)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59]	권인숙 의원[60]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제2항)

5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1.02.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위원회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02.26.)에서 수정가결되어,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M0C1L2D1E5Y1V4H1W4W0H4R8Z8S7, 최종검색일: 2023.06.30.).

5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M0C1L2D1E5Y1V4H1W4W0H4R8Z8S7, 최종검색일: 2023.06.30.).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양금희 의원[6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18조의2 신설)

먼저, 첫 번째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 삭제지원 강화 부분은 2건의 법률안[62] 중 김수민의원안이 조정되어 대안으로 마련, 의결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 법률은 2020년 1월 17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0년 1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63] 두 번째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5건의 법률안[64]이 통합·조정되어 제안된 위원회 대안은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65]

---

57) 의안번호 220240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19.11.28.

58) 의안번호 2016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8.11.29.

59) 의안번호 21062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0.12.08.

60) 의안번호 210276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6.

61) 의안번호 21050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62) 2018년 12월 21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699)도 함께 상정되어 위원회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이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것으로, 본문에서 별도 언급하지 않는다.

63)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9.11.27.)에서 성폭력방지법 제14조 개정 내용 및 법문체계 논리성, 조문구성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어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P9Q0X6A 2S7V1T3D2J0Q5I1Z2C5Y1, 최종검색일: 2023.10.10.).

64) 이 중 3건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6인), 제안일자 2020.09.15.; 의안번호 210229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22.; 의안번호 2101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7.09.)는 삭제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6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0.12.8.)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은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되었고, 이 법안은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위 2번에 걸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 및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가 선제적 삭제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로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삭제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66]

(2)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N번방 방지대책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제20대 국회에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1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67]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2조의6, 제95조의2 및 제104조 신설 등).

/billDetail.do?billId=PRC_H2P0K1O2P 0A1Q1J4M0K0O5U1Q4Z6I5, 최종검색일: 2023.10.10.)

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0.12., 2~3면 참고.).

67) 의안번호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5.04.

[표 2-8]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기존		개선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 불법촬영물에 한정		• 디지털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재수단	• 과태료 부과 (2천만원 이하)		•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 자료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p8.

이원욱 의원안은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0. 5. 6.)에서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68]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29일 정부에 이송되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69]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유통방지 조치 등에 관한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제95조의2 및 제104조에 따른 벌칙 규정은 이원욱 의원안이 통합·조정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시안 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 거의 모든 내용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용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4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4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

68) 이원욱 의원안 외에도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위원회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12건의 법안들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통방지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본문에서 별도 언급하지 않는다.

69)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5. 7.)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위원회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0.05.20.)에서 수정가결되었고, 이 법안은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최종검색일: 2023.08.30.).

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이 중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9]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관련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70]	백혜련 의원[7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7 및 제70조의3)
	박광온 의원[72]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을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안 제44조의9 및 제64조의6 등)
	한정애 의원[73]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금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제44조의7제1항제1호 등)
	이원욱 의원[7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총 8건[75]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되어 위원

70) 의안번호 20249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자 2020.05.20.

71) 의안번호 202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일자 2020.03.23.

72) 의안번호 2024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73) 의안번호 2024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74) 의안번호 2024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5.04.

75) 이 중 4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8.10.29.; 의안번호 20231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회 대안으로 마련, 의결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29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76]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제44조의9 및 제64조의5,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시안 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에서 제시된 불법정보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제2절 | N번방 방지법 내용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가. 수사의 실효성 제고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의2부터 법 제25조의8까지 소위 위장수사 등에 관한 수사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되었다. 이는 N번방 방지대책 중 하나인 '잠입수사 활성화' 과제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의 신설에 따라, ⅰ) 합법적이면서도

자 2019.10.29.; 의안번호 20223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0.03.; 의안번호 2024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11.29.)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76)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0.05.20.)에서 수정가결되어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 최종검색일: 2023.10.10.).

적시에 필요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ii)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화되어 잠재적 예비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상의 한계는 분명하나 새로운 유형의 수사방식에 대한 명시적 입법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 2-10] N번방 방지법 수사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법령명	조항	개정일	시행일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 제65조제1항제1호	2021. 3. 23	2021. 9. 24.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도입된 수사특례규정은 대상 범죄의 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어 법 제25조의2 이하 신설된 조문에서 각 수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법 제25조의2에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고 있으며,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및 위반시 벌칙 규정(법 제25조의7 및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면책 규정(법 제25조의8)을 두고 있으며, 법 제25조의9에서 수사지원 및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수사'라 정의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보다 구체적인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i) '신분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ii)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등을 구입 내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

고자 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하여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시행령 제5조의4 제3항), 이와는 별도로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및 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 등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법 제25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인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및 건수, 종료일시 및 사유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6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장수사'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ⅰ)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ⅱ)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ⅲ)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등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의 요건 충족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법 제25조의3 제3항·제4항). 신분위장수사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는데,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3 제5항·제6항·제7항). 신분위장수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요건이 존속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5조의3제8항).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법 제25조의4).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4 제2항).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1]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정리

구분	조항	주요 내용
대상범죄	§25의2①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한정 – 성착취물 제작·배포(§11) – 불법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14②,③) – 성착취 목적 대화(§15의2)
신분 비공개수사	§25의2①	• 신분비공개 상태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내지 범인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 범행 증거 및 자료 등 수집 가능
신분위장수사	§25의2②	• 범죄혐의 상당성·보충성 요건 충족시 신분위장수사 가능 – 신분위장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행사 – 위장신분 이용 계약·거래 –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소지, 판매·광고
통제장치	§25의3 ①,② §25의6	• 신분비공개수사 : 내외부 통제 강화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 3개월 제한 – 종료시 국가경찰위원회·반기별 국회 상임위 보고
	§25의3 ③~⑧ §25의4	• 신분위장수사 : 사법 통제 강화 – 법원 허가, 긴급시 사후 청구 – 3개월 제한 (연장시 최대 1년 제한)
증거능력	§25의5	• 수집된 증거·자료 사용 가능한 경우 – 당해 디지털성범죄 및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 범죄 예방 – 당해 디지털성범죄 및 관련 범죄 징계절차 –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 다른 법령 규정 있을 때
비밀준수의무	§25의7	•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공개·누설 금지 의무 부여
면책	§25의8	• 고의·중과실 외 형사, 징계·문책, 손해배상 면책
수사지원·교육	§25의9	• 인적·물적 지원, 피해자 보호 등 수사 방법·절차 교육 실시
벌칙	§65①	•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나. 처벌 강화

N번방 방지대책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77] 관련 대책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구체적으로 ⅰ) 새로운 디지털성범죄 유형의 신설, ⅱ) 법정형 상향, ⅲ) 보안처분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2] N번방 방지법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법령명	조항	개정일	시행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020. 5. 19.	2020. 5. 19.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2020. 5. 19.	2020. 5. 19.
	제14조제4항	2020. 5. 19.	2020. 5. 19.
	제14조의2	2020. 3. 24.	2020. 6. 25.
	제14조의3	2020. 5. 19.	2020. 5. 19.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2020. 6. 2.	2020. 6. 2.
	제11조	2020. 6. 2.	2020. 6. 2.
	제13조제2항	2021. 3. 23	2021. 9. 24.
	제15조의2	2021. 3. 23	2021. 9. 24.
	제49조제1항제1호/제50조제1항제1호	2020. 5. 19	2020. 11. 20.
	제56조제1항	2020. 6. 2.	2020. 6. 2.

먼저,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시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78] 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

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2조제5호.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제1항 및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14조의3에 마련되었다.[79] 덧붙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고(법 제11조)[80]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법 제15조의2)도 마련되었다.[81]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 또한 대폭 상향되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은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되었고(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도 상향되었다(법 제14조).[82] 덧붙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이 강화되었으며(법 제11조),[8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도 상향되었다(법 제13조 제2항).[84]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후 디지털성범죄 법정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8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표 2-13] N번방방지법 시행 전후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비교

법률명	죄명	개정 전	개정 후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14①,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14③)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 등(§11②)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 등(§11③)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11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13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디지털성범죄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85]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추가되어 종전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표 2-14]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등록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록정보의 고지 (법 제50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가. 삭제지원 강화

2020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및 2021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 및 삭제지원 요청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일환으로 추진된 2020년 및 2021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상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5] N번방 방지법 삭제지원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법령명	조항	개정일	시행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2021. 1. 12.	2021. 7. 13.

먼저, 2020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로 확대하고, 이를 "촬영물등"으로 통칭하여 제7조의3의 표제도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개정하였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삭제지원 대상을 복제물을 제외한 촬영물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지원 대상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법 제7조의3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작'이라는 이름

으로 유통되고 있어 삭제가 시급한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이 불법촬영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피해자와 일정 범위에 있는 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86]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은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일괄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동조 제3항).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삭제지원 대상물 및 삭제지원 요청자의 범위는 2020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서 더 확대되었다. 먼저,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대하고(동조 제1항).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동조 제2항). 나아가 국가가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어도 ⅰ)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등, ⅱ)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의6은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서류로 위임장 등을 정하고(동조 제3항 제3호),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기관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조 제4항).

위 2차례의 개정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 및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한 법 제7조의3이 신설된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과 이후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일환으로 추진된 2020년 및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강화된 삭제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6)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03., 6~7면 참고.

[표 2-16]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른 삭제지원 강화 추이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2021년 개정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지원 요청자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대상자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지원대상자(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지원 대상자 지정 대리인
국가의 선제적 삭제지원	-	-	국가의 선제적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1) 전기통신사업자법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2-17]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개정 및 시행일

법령명	조항	개정일	시행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2020. 6. 9.	2020. 12. 10
	제22조의6	2020. 6. 9.	2020. 12. 10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법 제22조의5제1항)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법 제22조의5 제2항),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법 제22조의6)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부여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22조의6),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95조의2 제1호의2),

다음으로, 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법 제95조의2 제1호의3),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ⅰ)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ⅱ)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ⅲ)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ⅳ)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를 말한다(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음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만이 부과되었고, 이후 2020년 6월 9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통방지 의무 대상자 및 대상 정보, 제재가 확대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 등에 따른 제재 조항도 함께 신설되었다. 2020년 6월 9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전후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8]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구분		2018.12.24.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유통 방지 조치	의무자	•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조치의무사업자 –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대상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반시 제재 등	•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법 제95조의2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자	–	•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
	위반시 제재 등	–	•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구분		2018.12.24.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법 제95조의2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조치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2-19]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및 시행일

법령명	조항	개정일	시행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2020. 6. 9.	2020. 12. 10
	제64조의5	2020. 6. 9.	2020. 12. 10
	제76조제2항제4호의4	2020. 6. 9.	2020. 12. 10
	제76조제3항제25호	2020. 6. 9.	2020. 12. 10

2020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제44조의9 및 제76조 제2항 제4호의4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4조의5 및 제76조 제3항 제25호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 제44조의9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지정된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 제64조의5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하고, 보고서의 사실 확인 내지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해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소위 '투명성 보고서'라 불리는 이 보고서에는 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ⅲ)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ⅳ)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2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구분		2020. 6. 9.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	2020. 6. 9.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
유통 방지 조치	책임자	-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정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구분		2020. 6. 9.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	2020. 6. 9.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반시 제재 등	-	•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위반시 제재 등	-	•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절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후속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 초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일환으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삭제지원 강화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의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이후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삭제지원 강화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의무 관련 해당 법률의 추가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가. 수사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도입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수사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신분위장수사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표 2-21] 제21대 국회 수사특례규정 관련 발의안

법률명	발의안 정보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88 홍정민 의원 2021-11-18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 (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65 박성준 의원 2022-04-14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디지털성범죄'로 규정, 디지털성범죄의 수사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2118540 이형석 의원 2022-11-29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의 절차 요건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 (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발의안은 ⅰ)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와 ⅱ) 현행 수사특례규정상 절차적 요건 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홍정민 의원안[87]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고, 박성중 의원안[88]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수사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두 수사특례규정의 적용 확대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형석 의원안[89]은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가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

87)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1.18.
88) 의안번호 21152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4.14.
89) 의안번호 2118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11.29.

여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분위장수사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 처벌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신설되고 법정형도 강화되었으나 현 제21대 국회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에 있다.

[표 2-22] 제21대 국회 처벌 강화 관련 발의안

법률명	발의안 정보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77 황운하 의원 2020-08-2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또한 '유포'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2103734 백혜련 의원 2020-09-10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안 제14조제2항)
	2103806 박재호 의원 2020-09-11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2109568 권인숙 의원 2021-04-19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2115468 민형배 의원 2022-05-02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 법률에 명시(안 제13조의2 신설)
	2117239 이인영 의원 2022-09-05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 삭제 및 법정형 하한 상향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67 윤영석 의원 2020-06-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자 및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102763 권인숙 의원 2020-08-0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법률명	발의안 정보	주요 내용
	2103740 백혜련 의원 2020-09-10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한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 처벌 (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2105530 유정주 의원 2020-11-19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 포함(안 제2조제5호).
	2107046 양금희 의원 2020-12-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구체화 :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제5항).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확대 및 보완하는 방식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거나 현행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N번방 방지대책의 법제화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처벌 강화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가. 삭제지원 강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강화를 위한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 및 삭제지원 요청자의 범위 등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 2021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강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은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삭제지원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7조의3의 삭제지원 주체로 추가하는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수사기관등의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계류중에 있다.

[표 2-23] 제21대 국회 삭제지원 강화 관련 발의안

법률명	발의안 정보	주요 내용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248 이해식 의원 2021-08-26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안 제7조의3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239 안민석 의원 2020-11-1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2113825 홍정민 의원 2021-12-09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25조의10 신설).

먼저,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90]은 ⅰ)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3제1항), ⅱ)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의3제2항), ⅲ)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3제3항), ⅳ)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 제7조의3제5항)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추가하였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한 2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먼저, 안민석 의원안[91]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과 동시

90)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8.26.

91) 의안번호 21052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12.

에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피해아동·청소년을 구제·지원하기 위한 삭제지원 조치 규정 등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상물의 재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등 영상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92] 홍정민 의원안[93]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피해 영상물 및 게시판의 삭제·차단요청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적 대응을 통해 영상물 등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도 부처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94]

나.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추가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현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2)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1.2., 4~7면 참고.

93) 의안번호 21138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2.09.

94)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2.9., 3~10면 참고.

[표 2-24] 제21대 국회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발의안

법률명	발의안 정보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58 권인숙의원 2021-08-26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 포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2109117 조승래의원 2021-03-24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2113444 박성중의원 2021-11-19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각종 불법정보 유통 사정 인지시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2113820 홍정민의원 2021-12-09	성폭력처벌법상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22조의5제1항)
	2114933 권인숙의원 2022-03-23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104조제6항 신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565 박광온의원 2021-01-22	국내대리인의 대리업무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업무'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 추가(안 제32조의5)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안 제44조의10)
	2119913 박대출의원 2023-02-09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 부과(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6 송옥주 의원 2020-06-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물 삭제의무 등 부과(안 제2조제3항, 제14조의4 신설 등)
	2113823 홍정민 의원 2021-12-09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등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65 강선우 의원 2022-01-18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 신설(안 제34조의2 및 제67조제4항).

먼저, 전기통신사업상 각 발의안의 주요 내용 및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발의 권인숙 의원안[95]은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규범의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해당 대화가 삭제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고 있다.[96]

조승래 의원안[97]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차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98]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 등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 보일 수 있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리·감독 권한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99]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박성중 의원안[100]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의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95) 의안번호 21003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4인), 제안일자 2021.08.26.
9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0.7., 4~7면 참고.
97) 의안번호 21091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3.24.
9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4., 5~8면 참고.
9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4., 10~11면 참고.
100) 의안번호 2113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11.19.

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등 임시조치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101]

홍정민 의원안[102]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 내의 불법촬영물등을 필수적으로 삭제·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도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하기만 하면 원인을 불문하고 유통방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 발생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103]

마지막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스스로의 판단 또는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인숙 의원안[104]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방송통신위원회는 ⅰ) 개정안과 같이 인터넷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터넷사업자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ⅱ) 과태료의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방심위로의 과다 이체 등

1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3., 7~13면 참고.
102) 의안번호, 21138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12.09.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2.3., 3~8면 참고.
104) 의안번호 21149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2.03.23.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을 불러올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05]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조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각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중 ⅰ) 박광온 의원안[106]은 해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등을 강화하고자 하며, ⅱ) 박대출 의원안[107]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표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조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각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해당 발의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ⅰ) 송옥주 의원안[108]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려는 내용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109] ⅱ) 강선우 의원안[110]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핵심적인 업무로 하지 않음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신고의무의 실효성 유무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1]

---

1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2.4., 3~8면 참고.

106) 의안번호, 21075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1.01.22.

107) 의안번호 2119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3.02.09.

108) 의안번호 21007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6.19.

10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0.7., 3~11면 참고.

110) 의안번호 21144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1.18.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어 쉽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강화된 삭제 및 차단, 신고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11)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9., 3~10면 참고.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김 지 선

제3장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제1절 | 디지털성범죄 발생 실태

1. 입건건수

이 절에서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공식범죄통계자료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관심은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대책을 전후로 한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에서의 변화이다. 디지털성범죄와의 비교를 위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범죄에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112] 경찰의 공식범죄통계자료인「범죄통계」에서 '발생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아래 표에서도 발생건수라는 명칭을 그대로 하였다. 하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표에 제시된 수치는 발생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신고 등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경찰이 인지한 사건 중 입건한 사건에 해당한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가 암수범죄가 많다는 점과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으로 기록된 범죄통계의 수치는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일부분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

112)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와의 비교를 위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이를 줄여 '접촉 성폭력'이라고 명명하였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채팅을 통해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이 있었고, 이후 비접촉 강제추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강제추행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고, 경찰의 공식범죄통계는 장기간에 걸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정책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접촉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를 합계한 전체 성범죄[113]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성범죄는 2012년 24,427건 입건되었으나, 2021년에는 33,315건으로 2012년 대비 36.4% 증가하였다. 이 중 접촉 성폭력은 2012년 19,655건에서 2021년에는 20,276건으로 지난 10년간 3.2% 증가하였다. 그러나 접촉 성폭력은 2017년 24,10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디지털성범죄는 2012년 4,772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8,850건으로 전년대비 85.5% 증가였고, 이후 7천에서 9천 건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N번방 방지대책이 발표된 2020년에는 9,698건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3,039건으로 2019년 대비 64.3%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1년의 입건건수는 10년 전인 2012년 대비하여 173.2% 증가하였다.

접촉 성폭력범죄는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2013년 이후 급증하였고, N번방 방지대책 발표 이후 입건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성범죄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9.5%였지만, 2021년에는 39.1%로 약 2배 증가하였다. 2021년의 경우 입건된 성범죄 10건 중 약 4건 정도는 디지털성범죄이다.

[표 3-1] 디지털성범죄의 입건 및 구성 비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건, %)

연도	전체 성범죄		접촉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구성 비율	건수	증감율	구성 비율
2012	24,427	-	19,655	-	80.5	4,772	-	19.5
2013	31,151	27.5	22,301	13.5	71.6	8,850	85.5	28.4
2014	29,660	-4.8	21,048	-5.6	71.0	8,612	-2.7	29.0
2015	30,666	3.4	21,281	1.1	69.4	9,385	9.0	30.6

113)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한 성폭력 중 ① 형법 상 강간과 강제추행죄, ② 성폭력특례법 제3조에서 제15조의 죄 중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제외한 죄, ③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죄, ④ ①, ②, ③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의미한다.

연도	전체 성범죄		접촉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구성 비율	건수	증감율	구성 비율
2016	29,303	-4.4	22,198	4.3	75.8	7,105	-24.3	24.2
2017	32,296	10.2	24,109	8.6	74.7	8,187	15.2	25.3
2018	31,753	-1.7	23,475	-2.6	73.9	8,278	1.1	26.1
2019	31,471	-0.9	23,536	0.3	74.8	7,935	-4.1	25.2
2020	31,413	-0.2	21,715	-7.7	69.1	9,698	22.2	30.9
2021	33,315	6.1	20,276	-6.6	60.9	13,039	34.5	39.1

※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주 : 1)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
2) 구성비율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디지털성범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의미함.

다음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법조항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발생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3-2]의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입건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19일부터 처벌대상이 된 '허위영상물등편집·반포'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를 제외했을 때, 지난 10년간 입건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디지털성범죄는 통상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건건수는 2021년 5,067건으로 2012년 대비 454.4% 증가하였다.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29.7% 증가하였으나, 최대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는 2013년 2,59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대폭 감소하여 2017년에는 47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 이후 상승하여 2020년에는 2,619건으로 2019년 대비 256.8%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건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N번방 사건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입건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입건건수(2012~2021년)

(단위 : 건, %)

연도	디지털성범죄유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12	914	-	2,412	-	-		-		1,446	-
2013	1,411	54.4	4,841	100.7	-		-		2,598	79.7
2014	1,250	36.8	6,635	175.1	-		-		727	-49.7
2015	1,130	23.6	7,615	215.7	-		-		640	-55.7
2016	1,109	21.3	5,170	114.3	-		-		826	-42.9
2017	1,249	36.7	6,465	168.0	-		-		473	-67.3
2018	1,365	49.3	5,925	145.6	-		-		988	-31.7
2019	1,437	57.2	5,764	139.0	-		-		734	-49.2
2020	2,047	124.0	4,881	102.4	31	-	120	-	2,619	81.1
2021	5,067	454.4	5,541	129.7	259	735.5	546	355.5	1,626	12.4

※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입건건수의 변화에 따라, 전체 디지털성범죄의 7~80%를 상회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비율은 2020년에는 50.3%, 2021년에는 42.5%로 대폭 감소했다([표 3-3] 참조). 2020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27.0%였고, 2021년에는 12.5%로 1/2 이상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5년에 12.0%에서 시작하여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8.9%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구성 비율(2012~2021년)

(단위 : 건, %)

연도	디지털 성범죄(계)	디지털성범죄유형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12	4,772	19.2	50.5	-	-	30.3
2013	8,850	15.9	54.7	-	-	29.4
2014	8,612	14.5	77.0	-	-	8.4
2015	9,385	12.0	81.1	-	-	6.8
2016	7,105	15.6	72.8	-	-	11.6

연도	디지털 성범죄(계)	디지털성범죄유형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17	8,187	15.3	79.0	-	-	5.8
2018	8,278	16.5	71.6	-	-	11.9
2019	7,935	18.1	72.6	-	-	9.3
2020	9,698	21.1	50.3	0.3	1,2	27.0
2021	13,039	38.9	42.5	2.0	4.2	12.5

※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N번방 방지대책이 발표된 2020년과 그 직후인 2021년 디지털성범죄의 입건건수가 전년대비 2~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발생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3]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N번방 방지대책의 주요 대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2020년 2019년에 비해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경찰은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2020년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운영하여, 2021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2020년에는 3,575명,[114]2021년에는 1,625명을 검거하였다.[115] 2020년 검거된 피의자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의자가 2,810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6.0%가 '구매·소지' 피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검거된 피의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의자가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1.9%가 구매·소지자에 해당한다.

114) 2020년 검거된 피의자에는 조직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박사방' 피의자 222명과 'n번방' 피의자 804명이 포함되어 있다.

115) 위 표에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 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을 의미하며, 불법 성영상물은 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의미한다(경찰청, 2020.12.31.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 25.~12.31.) 결과).

이 자료는 경찰이 N번방 사건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의자와 구매·소지자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입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2020년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단위: 건(%))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총계	제작·운영자	판매·유포자	구매·소지자	기타
총계	2,807	3,575(100.0)	511(14.3)	1,170(32.7)	1,875(52.4)	19(0.5)
성착취물	1,891	2,810(100.0)	429(15.3)	509(18.1)	1,854(66.0)	18(0.6)
불법 성영상물	916	765(100.0)	82(10.7)	661(86.4)	21(2.7)	1(0.1)

※ 자료출처 : 경찰청, 2020. 12. 31.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3. 25.~12.31.) 결과

[표 3-5] 2021년 경찰의 성착취물 유통사범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검거 인원				
	총계	개설·운영	촬영·제작	유통·판매	이용자
	1,625	95	174	650	706
성착취물	805(49.5)	54(56.8)	80(46.0)	92(14.2)	579(82.0)
불법촬영물	454(27.9)	5(5.3)	66(37.9)	256(39.4)	127(18.0)
불법합성물	81(5.0)	9(9.5)	24(13.8)	48(7.4)	
불법 성영상물	285(17.5)	27(28.4)	4(2.3)	254(39.1)	

※ 자료출처 : 경찰청, 2021. 11. 11. 보도자료.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구속 97명)
* 2021년 3월 2일에서 10월 31일까지 단속현황임

한편, 이전에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를 범죄화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한 적극적인 입법정책도 N번방 방지대책 이후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N번방 방지대책으로 신설된 죄는 1) 불법촬영물의 소지 , 구입, 저장, 시청(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4항),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 구입, 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중 일부), 4)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등이다. 이중 불법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 구입, 시청은 같

은 해 6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범죄의 일부는 이전 경찰의 범죄통계에서 협박·강요나 명예훼손 등으로 분류되었다가 새로운 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범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거건수가 크게 늘어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검거 통계가 구분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범위 확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116]은 2020년 18명, 2021년 127명이 검거되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2020년 31명이 입건되었으나, 2021년에는 25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도 2020년 120명에서 2022년 54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디지털성범죄는 2013년 이후 7천~8천 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접촉 성폭력범죄의 절대건수가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되며, 이에 따라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중 N번방 방지대책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이고, 그 중 구매, 소지 피의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조항의 신설이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에 일정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마련한 특별수사본부가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표방하면서 구매·소지자(이용자)가 대거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단속이나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착취물 등의 소지, 구매가 디지털성범죄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게 된 점도 디지털성범죄의 입건건수 증가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16) 경찰의 검거통계인 [표 3-4]에서는 구매소지자, [표 3-5]에서는 이용자에 해당한다.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 가해자 특성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성범죄 범죄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이를 고려하여, [표 3-6]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여성 범죄자 비율을 다양한 하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디지털성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2014년의 2.0%에서 2022년의 5.5%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실제로, 접촉 성폭력 범죄와 비교할 때, 디지털성범죄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접촉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모두 여성 범죄자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디지털성범죄 유형별로 여성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 범죄자 비율이 높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13년에 4.1%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2.1%로 다섯 가지 디지털성범죄 범주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3-6] 디지털성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 비율(2012~2021년)

(단위 : %)

연도	접촉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계)	디지털성범죄유형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012	2.1	3.1	3.9	1.9	-	-	4.0
2013	1.8	3.2	4.1	2.1	-	-	4.1
2014	1.7	2.0	2.3	1.7	-	-	2.7
2015	1.7	2.7	3.8	2.4	-	-	3.0
2016	2.0	3.0	5.2	2.6	-	-	1.9
2017	2.4	3.5	5.9	3.1	-	-	2.3
2018	2.8	3.9	5.6	3.5	-	-	3.8
2019	3.2	4.5	5.5	4.9	-	-	1.1
2020	3.5	4.4	6.3	5.2	12.5	6.5	1.8
2021	3.4	5.5	6.6	5.4	9.3	7.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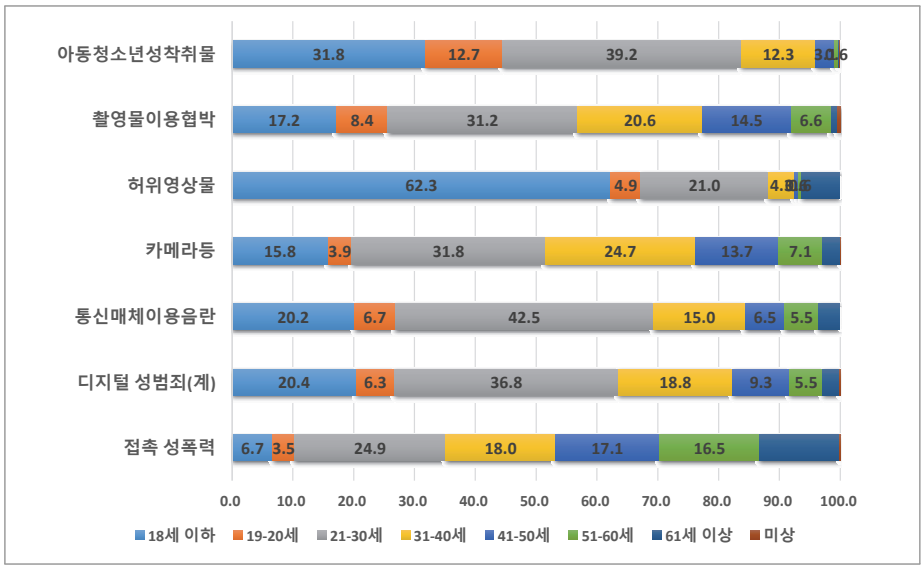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2022), 「2022 여성폭력통계」.

디지털성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참조). 2021년에는 접촉 성폭력 범죄자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35.2%인 반면, 디지털성범죄자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63.5%로 약 1.8배 이상 더 높았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범죄가 30세 이하 범죄자의 비율이 88.3%로 가장 높았으며,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83.7%로 그 뒤를 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30세 이하 범죄자의 비율이 51.5%로 가장 낮았다.

30세 이하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성범죄자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 비율은 20.4%로 접촉 성폭력범죄(6.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가 미성년 범죄자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31.8%로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5.8%로 가장 낮았다.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인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는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당수가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30세 이하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성범죄자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 비율은 20.4%로 접촉 성폭력 범죄(6.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범죄가 미성년 범죄자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31.8%로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범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15.8%로 가장 낮았다.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인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범죄는 다른 디지털성범죄와 비교하여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당수가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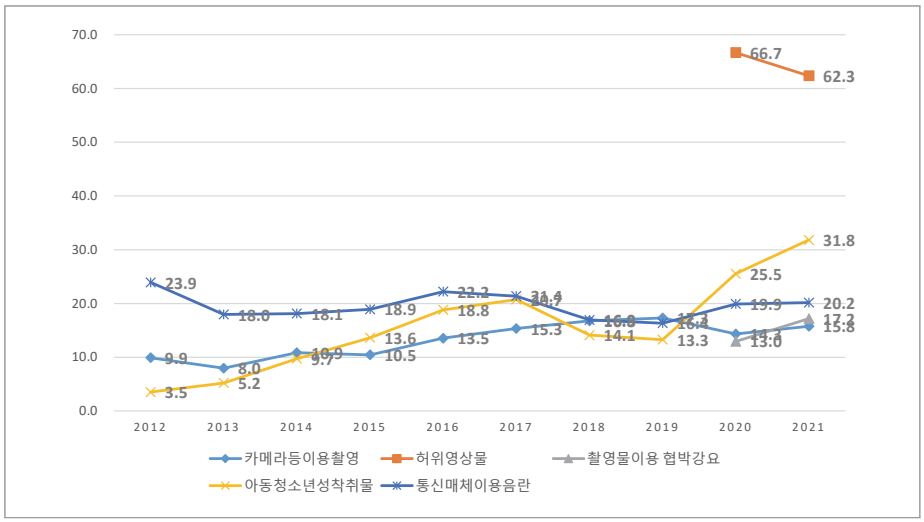
[그림 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2021년)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2022),「2022 여성폭력통계」.

지난 10년간 디지털성범죄자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2019년 13.3%에서 2020년 25.5%, 2021년 31.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미성년 범죄자 비율(2012~2021년)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2022), 「2022 여성폭력통계」.

나. 피해자 특성

앞서 설명한대로, 공식 범죄통계는 암수범죄 문제와 피해자 특성 파악의 한계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식범죄통계를 수집하는 도구인 범죄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와 같은 3종의 통계원표는 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대표 피해자에 대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통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2017년 9월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30일에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의 기관이다.[117]「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설립 초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지원 기관으로서, 피해 촬영물 삭제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삭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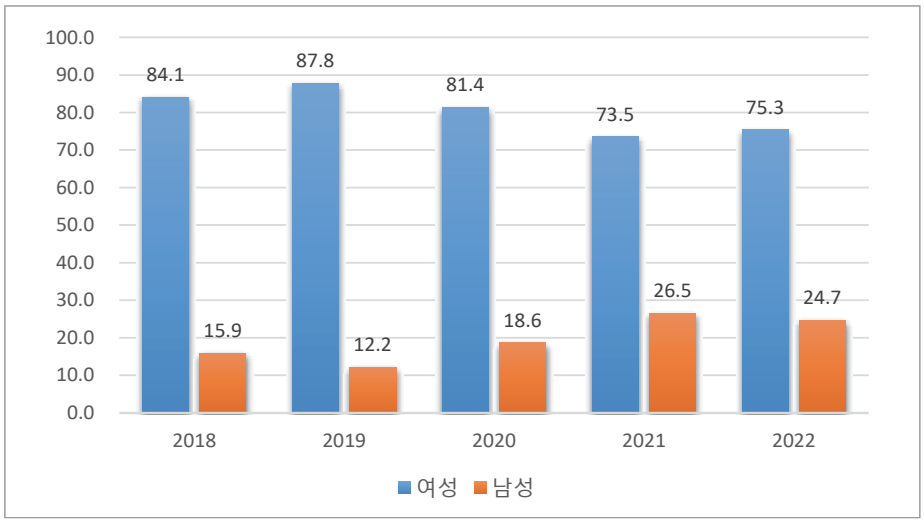
1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피해자는 직접 이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른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연계되었다. 따라서 이 센터의 피해자 지원 통계는 초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전체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졌다.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지방에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화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역시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제30조의5에 따라 삭제요청 권한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되어,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수집된 최근 통계는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계를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통계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를 합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지원 센터에서 통계를 집계하여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의 취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포괄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성범죄의 실제 피해 상황을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21년 기준 73.5%에 달하며, 이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함을 나타낸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8년 15.9%에서 2019년 12.2%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0년 18.6%, 2021년 26.5%, 2022년 24.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8~2022년)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2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피해자 분포에서 '연령 미상'이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피해자나 의뢰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14). 특히, 저연령층에서는 보호자나 학교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연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령 미상을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10대의 비율은 17.8%, 20대는 18.2%로, 20세 이하의 비율이 36.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10대가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남성 피해자 중에서는 20대가 1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 미상을 제외한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19년 이후로는 1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피해자의 비율은 2018년 8.6%에서 2020년 24.9%, 2021년 23.4%, 2022년 20.2%로 최근 3년 동안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 중 '연령 미상'의 비율이 연도별로 44.4%에서 59.4%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를 단순히 디지털 피해자의 저연령화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선제적 삭제지원' 정책의 실시로 인해 10대 피해자 수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으므

로, 디지털 피해자의 저연령화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와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

[표 3-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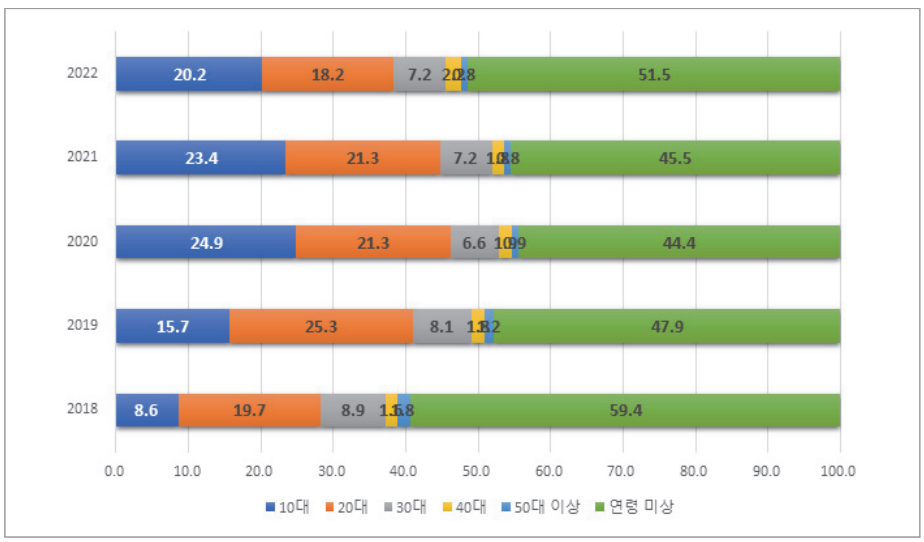
(단위 : 명, %)

기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18	여성	1,106	95	218	98	18	20	657
	·	·	8.6	19.7	8.9	1.6	1.8	59.4
	남성	209	16	33	11	16	5	128
	·	·	7.7	15.8	5.3	7.7	2.4	61.2
	계	1,315	111	251	109	34	25	785
	·	100	8.4	19.1	8.3	2.6	1.9	59.7
2019 · ·	여성	1,832	288	463	148	33	22	878
	·	100.0	15.7	25.3	8.1	1.8	1.2	47.9
	남성	255	33	41	19	17	10	135
	·	100.0	12.9	16.1	7.5	6.7	3.9	52.9
	계	2,087	321	504	167	50	32	1,013
	·	100.0	15.4	24.1	8.0	2.4	1.5	48.5
2020	여성	4,047	1,007	863	267	77	36	1,797
	·	100.0	24.9	21.3	6.6	1.9	0.9	44.4
	남성	926	197	189	65	57	51	367
	·	100.0	21.3	20.4	7.0	6.2	5.5	39.6
	계	4,973	1,204	1,052	332	134	87	2,164
	·	100.0	24.2	21.2	6.7	2.7	1.7	43.5
2021	여성	5,109	1,194	1,090	367	91	42	2,325
	·	100.0	23.4	21.3	7.2	1.8	0.8	45.5
	남성	1,843	287	371	104	81	96	904
	·	100.0	15.6	20.1	5.6	4.4	5.2	49.1
	계	6,952	1,481	1,461	471	172	138	3,229
	·	100.0	21.3	21.0	6.8	2.5	2.0	46.4
2022	여성	6,007	1,211	1,093	430	131	51	3,091
	·	100.0	20.2	18.2	7.2	2.2	0.8	51.5
	남성	1,972	212	357	104	65	71	1,163
	·	100.0	10.8	18.1	5.3	3.3	3.6	59.0
	계	7,979	1,423	1,450	534	196	122	4,254
	·	100.0	17.8	18.2	6.7	2.5	1.5	53.3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주 : 1) 최초 접수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 2018년 통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수치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3-8][118]과 같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도, '관계 미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계가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2020년을 기점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친밀한 관계가 각각 23.5%, 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만 만나거나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30%대였던 '관계 미상' 비율이 2020년 이후 50%대로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4] 디지털성범죄 여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18) 표에서 제시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시적 관계 :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으로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예) 공중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가족 관계 :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친척·사촌 등 친족관계, 미상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 유포 피해를 입었으나, 유포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표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명, %)

기간	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관계 미상
2018	1,315	198	169	309	136	5	498
	(100.0)	(15.1)	(12.9)	(23.5)	(10.3)	(0.4)	(37.9)
2019	2,087	331	373	500	227	5	651
	(100.0)	(15.9)	(17.9)	(24.0)	(10.9)	(0.2)	(31.2)
2020	4,973	1,239	280	429	227	15	2,783
	(100.0)	(24.9)	(5.6)	(8.6)	(4.6)	(0.3)	(56.0)
2021	6,952	1,963	548	539	290	17	3,595
	(100.0)	(28.2)	(7.9)	(7.8)	(4.2)	(0.2)	(51.7)
2022	7,979	2,295	730	603	481	17	3,853
	(100.0)	(28.8)	(9.1)	(7.6)	(6.0)	(0.2)	(48.3)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주 : 1) 최초 접수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 2018년 통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수치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별 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1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그룹에서 일시적인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일시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10대 연령 그룹에서는 일시적인 관계 비율이 2020년의 28.8%에서 2021년에 34.2%, 2022년에는 3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는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연령 그룹에서 이러한 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

연령	연령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미상
2020	10대	1.9	7.2	0.2	28.8	6.6	55.2
	20대	16.1	4.0	0.6	14.8	7.4	57.1
	30대	19.6	6.0	0.3	14.2	5.1	54.8
	40대	13.4	7.5	0.0	17.9	2.2	59.0
	50대 이상	11.5	6.9	1.1	29.9	4.6	46.0
	연령 미상	6.7	2.9	0.2	29.5	4.5	56.2
	계	8.6	4.6	0.3	24.9	5.6	56.0

연령	연령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미상
2021	10대	2.9	7.8	0.1	34.2	9.7	45.3
	20대	14.0	4.3	0.5	22.7	10.4	48.1
	30대	14.9	5.1	0.2	23.4	9.8	46.7
	40대	13.4	3.5	1.2	30.2	8.7	43.0
	50대 이상	6.5	3.6	0.7	32.6	2.2	54.3
	연령 미상	5.9	2.4	0.1	28.4	5.9	57.4
	계	7.8	4.2	0.2	28.2	7.9	51.7
2022	10대	2.5	8.8	0.1	37.2	9.3	42.1
	20대	12.3	5.6	0.7	27.4	11.0	43.0
	30대	14.4	7.1	0.0	21.4	11.8	45.3
	40대	16.8	9.2	0.0	23.5	9.2	41.3
	50대 이상	10.7	5.0	0.0	30.3	14.7	39.3
	연령 미상	6.3	5.0	0.1	27.5	8.0	53.1
	계	7.6	6.0	0.2	28.8	9.1	48.3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2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주 : 1) 최초 접수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 2018년 통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수치임

제2절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1. 피해유형

[표 3-10]은 피해자가 여러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중복 집계하였으나, 한 피해유형에 대해 여러 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 건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유포 피해가 각각 33.1%와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하였다(2018년 28.7%, 2019년 25.4%). 그러나 2020년에는 '불법촬영' 피해가 32.1%로 가장 높았으며, 유포 피해가 그 뒤를 이었다. 2020년에 불법촬영 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경찰에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를 센터로 연계한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표 3-1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2018~2022년)

(단위 : 건, %)

연도	피해자 수	계	피해유형별						
			불법 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	1,315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	2,087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	4,973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	6.952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2022	6,077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40
주 : 1) 피해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번 입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였고, 피해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집계함
2) 2018년 통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수치임

2021년 이후부터는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유포 불안'이 각각 25.7%와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유포 불안'은 2018년에는 9.4%로, '유포'나 '불법촬영'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1%로 높아졌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져서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추가로 성적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금전 등을 취득하는 '유포 협박' 피해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연령대별 피해 유형은 연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11] 참조). 2020년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불법촬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에서 불법촬영 피해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10대에서 '불법촬영'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유포' 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유포불안'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22년에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포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대에서도 '불법촬영'과 '유포 불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연령대와 무관하게 유포 불안 피해가 높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을 성적으로 합성 또는 편집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 '편집합성' 피해는 전반적으로 피해 비율이 낮으며, 주로 10대와 2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에도 10대에서 피해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11] 피해자 연령별 피해유형

(단위 : %)

연도	연령	불법 촬영	사진 합성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0	10대	32.7	10.6	12.3	17.3	20.1	4.5	2.6
	20대	34.3	4.8	25.6	14.8	15.2	2.1	3.1
	30대	37.5	2.3	27.8	12.2	14.6	2.7	2.9
	40대	27.6	2.0	21.9	27.0	9.2	1.5	10.7
	50대 이상	33.6	0.0	15.2	28.8	12.8	0.0	9.6
	연령 미상	29.5	2.3	27.4	9.6	12.2	6.4	12.6
	합계	32.1	5.0	22.7	13.8	15.0	4.4	7.0
2021	10대	30.6	3.2	10.5	17.9	27.5	8.0	2.3
	20대	15.9	1.9	25.4	19.6	30.5	3.8	2.8
	30대	13.9	0.7	31.5	19.0	27.8	4.0	3.0
	40대	12.4	0.3	22.4	30.3	26.6	2.8	5.2
	50대 이상	11.0	0.8	19.7	32.7	28.3	0.8	6.7
	연령 미상	21.8	1.0	21.2	17.1	21.6	4.8	12.5
	합계	21.5	1.7	20.3	18.7	25.7	5.1	6.9
2022	10대	31.3	2.5	10.4	17.4	31.1	5.9	1.4
	20대	13.5	2.4	25.7	20.1	33.9	3.4	1.0
	30대	12.2	0.6	34.5	17.3	32.1	2.8	0.6
	40대	15.9	0.3	26.3	23.5	31.3	1.7	1.1
	50대 이상	15.8	0.5	18.6	28.5	31.7	0.5	4.5
	연령 미상	21.5	1.3	18.4	16.8	28.0	4.3	9.7
	합계	21.1	1.7	19.5	18.0	30.1	4.2	5.4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주 : 피해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번 입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였고, 피해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집계함

2.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119]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소셜미디어가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성인사이트(28.5%)가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검색엔진의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2019년), 그 다음은 P2P(30.9%)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8년과 유사하게 소셜미디어가 41.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성인사이트가 그 뒤를 이었다(24.1%).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불법 사이트가 34.8%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비율은 2019년 18.8%에서 2021년 14.5%로 감소하였다. 한편, 커뮤니티의 비율은 2018년 2.9%에서 증가하여 2021년 17.4%, 2022년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삭제 지원한 피해촬영물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1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된 피해 영상물의 건수와 소설미디어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웹하드의 비율이 2022년에 0%에 이르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사업자를 불법영상물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의 급격한 감소는 웹하드 등록제와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항의 신설로 인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형태의 웹하드 유포가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그러나 성인사이트에서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의 건수는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

119) 성인사이트 : 불법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검색엔진 :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 개인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커뮤니티 : 공통 주제를 공유하며 이용자 간 소통하는 플랫폼, 이미지 업로드·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팅 사이트, P2P ; 토렌트 등 P2P(Peer-to-peer Network)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웹하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블로그 : 검색엔진 내 개인별 온라인 공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카이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를 영구 보존하는 사이트, 스트리밍 :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 중앙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23).

났다. 성인사이트에서 삭제된 피해 영상물은 2020년 38,332건에서 2021년 59,113건, 2022년 95,485건으로 2년 사이 149.1% 증가했다. 성인사이트는 피해촬영물을 포함한 성적 촬영물과 도박, 성매매 등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기 때문에 유포, 시청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해 피해촬영물을 공유하고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는 등 커뮤니티 성격의 불법 성인사이트가 새로운 가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34, 2022).

[표 3-12]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플랫폼

(단위 : 건, %)

기간	합계	성인 사이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P2P	웹하드	기타*
2018	28,879 (100.0)	8,239 (28.5)	6,705 (23.2)	10,312 (35.7)	848 (2.9)	2,158 (7.5)	317 (1.1)	300 (1.0)
2019	95,083 (100.0)	26,170 (27.5)	31,369 (33.0)	4,337 (4.6)	2,042 (2.1)	29,359 (30.9)	190 (0.2)	1,616 (1.7)
2020	158,760 (100.0)	38,332 (24.1)	25,383 (16.0)	65,894 (41.5)	14,550 (9.2)	5,152 (3.2)	45 (0.03)	9,404 (5.9)
2021	169,820 (100.0)	59,113 (34.8)	30,372 (17.9)	31,980 (18.8)	29,608 (17.4)	5,181 (3.1)	344 (0.2)	13,222 (7.8)
2022	213,602 (100.0)	95,485 (44.7)	37,025 (17.3)	31,053 (14.5)	28,111 (13.2)	4,158 (2.0)	0 (0.0)	17,770 (8.3)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41

센터에서 삭제지원한 피해 촬영물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경우는 2018년 20.6%에서 2021년 15.0%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18.4%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2022년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서 연령 정보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명(39.5%), 소속(8.6%) 등이 순위에 있었다. 연령 정보가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비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이 유포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인다.

[표 3-13] 피해촬영물 유포 시 개인정보동반 유출 비율 및 개인정보 유형

(단위 : 건, %)

기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개인 정보 동반유출	개인정보 유형					
			계	연령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2018	28,879 (100.0)	5,935 (20.6)	6,700 (100.0)	546 (8.1)	4,793 (71.5)	533 (8.0)	622 (9.3)	206 (3.1)
2019	95,083 (100.0)	17,427 (18.3)	22,437 (100.0)	2,203 (9.8)	16,595 (74.0)	2,773 (12.4)	820 (3.7)	46 (0.2)
2020	158,760 (100.0)	24,962 (15.7)	37,800 (100.0)	8,991 (23.8)	20,873 (55.2)	2,525 (6.7)	5,237 (13.9)	174 (0.5)
2021	169,820 (100.0)	25,432 (15.0)	27,047 (100.0)	7,058 (26.1)	12,803 (47.3)	4,794 (17.7)	2,375 (8.8)	17 (0.1)
2022	213,602 (100.0)	39,298 (18.4)	48,926 (100.0)	24,445 (50.0)	19,322 (39.5)	4,213 (8.6)	895 (1.8)	51 (0.1)

※ 자료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4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

김 민 지 · 김 지 선

제4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

제1절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가.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현황

디지털성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수사 조직 편성은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2017년 정부의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개선 방안에서 최초로 찾아볼 수 있다. 단계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표 4-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Ⅳ. 단계별 개선방안

3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 ㅇ 경찰내에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 **신고·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
  - 디지털성범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 일선기관에 배포
-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우선적 시행

⇒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경찰청, '17.10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11면.

2017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경찰청은 불법촬영음란물·아동음란물유포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당시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구성하여 각 지방청에 신설된 수사팀에서 사건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고, 피해자 상담·삭제 차단 안내·공조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120] 또한, 같은 해 7월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총 159명의 수사관이 대거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투입되기도 했다.[121] 2019년 1월에는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성폭력 91명을 비롯하여 총 192명의 사이버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17개 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팀의 정식 직제화 등 사이버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였다.[122] 나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운영하였고,[123]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종료 후에는 전국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이어 나갔다.

덧붙여, 2021년 3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국회 통과 이후 9월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국제공조를 위해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였다.[124] 같은 해 10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설된 수사특례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명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2021년 말 사이버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120) “경찰,「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개최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지원 강화-”(경찰청 보도자료, 2018.03.06.).
121)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여 수사-”(경찰청 보도자료, 2018.07.05.).
122) “경찰, 사이버 조직·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총력 대응”(경찰청 브리핑, 2019.01.25.).
123)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 25.~12.31.) 결과 -총 2,807건 · 3,575명 검거, 245명 구속,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향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속, -위장수사 법제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경찰청 브리핑, 2020.12.29.).
124)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경찰청 브리핑, 2021.03.19.).

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할 것을 밝혔다.[125] 이에 2023년 현재, 18개 시도경찰청 모든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126]

나아가 2023년 9월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이 추진되었고[127] 이에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범죄 유형의 하나로 기존 사이버수사국에서 수사국에 통합됨에 따라 사이버수사심의관이 신설되는 등 관련 조직의 인력 등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128]

> 경찰청 단위 직제 개편을 하면서 통합 수사국 형태로 이제 바뀐 상태에서 조직의 인력을 비롯하여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수사 조직 및 운영은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와 외국과의 국제공조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경찰 실무에서는 대개 여성청소년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뉘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주로 불법촬영물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 시 불법촬영물의 유포 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유포 시에는 사이버수사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있고, 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법촬영물 등의 단순 유포 내지 판매 등의 경우는 사이버수사과에서, 최초 신고 당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접근을 통해 공갈 내지 협박에 의해 불법촬영물 등이 촬영, 유포된 경우라든지 피해자 보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등 각 청의 상황에 맞게 사무가 분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

125)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국수본(사이버범죄수사과) 내 위장수사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관련 기능 참여 위장수사 합동점검단 운영 방침-"(경찰청 브리핑, 2021.10.27.).

126)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1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10. 30.] [대통령령 제33812호, 2023. 10. 17., 일부개정]

128) "경찰청 조직재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 (기구) 경찰 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정비, -(인력) 본청·시도청·경찰서 행정관리인력 감축, 치안현장 재배치, -(운영) 가시적 예방순찰 강화, 범죄분위기 제압 및 체감치안 제고"(경찰청 보도자료, 2023.09.18.).

유포되지 않으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유포가 된 부분이 있으면 사이버에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1-1)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업무가 분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1)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거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취소 처리하고, 여기에서 채팅을 통해가지고 공갈 내지 협박이 병합되면서 성착취물을 얻거나 유포하는 그런 방식은 여청수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2)

유포가 된 상황에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이분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면서 저희한테 찾아온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사이버보다는 여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3-2)

나. 수사 조직 편성 및 수사 진행상의 어려움

2017년 종합대책 및 N번방 방지 대책에 따라 현재 시·도경찰청 18곳에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이 꾸려져 있고, 조직도 재편성되는 등 디지털성범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 수사 조직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다만, 각 청의 상황에 따라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 수사 기법이나 경험에 대한 공유가 쉽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외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디지털성범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 밝혔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수사 기법이나 경험이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2)

마약 수사대처럼 따로 활성화를 할 거면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사이버든 여청이든 여기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해가면서까지 할 여력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1)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사항은 디지털성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및 국제공조 등 수사 실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행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촬영물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부서가 분리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부서가 변동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반복된 수사 등으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관련 수사절차 규정 및 지침 등이 다소 불분명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담당자에게도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부모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설득을 해서 부모님 중에 어머님한테만 알리겠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변호사분들도 오셔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안 알리지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경찰 대상 참석자 1-1)

현재 우리 법제상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통지제도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이하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범죄수사규칙 제13조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서 ⅰ) 제1항에서 피해자 등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을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대상자로 정하되, ⅱ)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며, ⅲ) 예외적으로 통지대상권자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인 경우 통지에서 배제되고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는 범죄수사규칙 제13조를 근거로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성범죄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범죄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현행 수사 진행상황 통지 관련 규정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다.[129] 반면, 미성년자의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는 미성년자의 알 권리 및 복리를 보장·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미성년자의 연령, 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알 권리의 주체가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을 넘어 과도하게 미성년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현행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 자체가 미성년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 등의 형사절차상 알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 실무에서 통지 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등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근거 규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13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가. 제도운영 현황과 성과

2020년 N번방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디지털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잠입수사의 도입'이 과제로 포함되었다. 2020년 당시 N번방 방지 대책에는 '잠입수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로 구매자 내지 일반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형태의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위장수사'로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129)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정·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동제연·윤덕연·배수진, 2021,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29~332면; 권현정, 2022,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강선우·임호선,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13~23면; 조윤희, 202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강선우·임호선,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25~39면 참고.

130) 김민지, 2023,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 방향", 한국피해자학회 제31권제1호, 119~123면 참고.

[표 4-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N번방 대책 주요 내용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5면.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번방 방지 대책 중 잠입수사 도입 부분은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수사특례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정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131]에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방법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행령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조문이 신설되었다. 더불어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132]에는 제2편 제7장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칙"이 신설되고,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각 절차에 필요한 서식이 마련되었다.

[표 4-3] 범죄수사규칙상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주요 서식

근거 조항	서식	서식명
제185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별지 제201호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
	별지 제202호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별지 제203호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제185조의3 (신분위장수사)	별지 제204호	신분위장수사 허기신청(사전)
	별지 제205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별지 제206호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별지 제207호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8호, 2021. 9. 24., 일부개정].

13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시행 2021. 9. 16.] [경찰청훈령 제1035호, 2021. 9. 16., 일부개정]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현재 시행된 지 약 2년을 경과하고 있는데,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표 4-4])에 따르면 지난 약 2년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64건 중 287건, 약 78.8%),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전체 775명 중 560명, 약 72.3%),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9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4.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133]

[표 4-4]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시행 이후 현황('21.09.24~'23.08.31.)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전체	364건	42건	287건	8건	8건	19건
	775명 (구속 65)	79명 (구속 16)	560명 (구속 41)	109명 (구속 3)	7명 (구속 4)	20명 (구속 1)
신분 비공개	297건	17건	261건	-	2건	17건
	514명 (구속 24)	8명 (구속 4)	493명 (구속 20)	-	-	13명
신분 위장	67건	25건	26건	8건	6건	2건
	261명 (구속 41)	71명 (구속 12)	67명 (구속 21)	109명(구속 3)	7명 (구속 4)	7명 (구속 1)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덧붙여, 위 표에서 신분비공개수사는 총 297건으로 신분위장수사보다 약 4.4배 많고 총건수에서 약 81.6%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신분비공개수사가 빈번하게 수사기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비교적 다수인 것이지, 신분비공개수사가 신분위장수사보다 요건 및 절차 등에 있어 간단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133)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참고.

> 인터넷상에서 쉽게 우리가 판매자나 음란 사이트 검색이 되다 보니까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쉽게 접근했던 것이고 신분위장수사는 피의자가 좀 특정되고 텔레그램에서 운영자가 특정이 됐을 때 그 방에 들어가거나 해야 할 때 사용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건 건수가 많지는 않았죠. (경찰 대상 참석자 1-1)

또한, 경찰청은 2023년 7월 보도자료[134]를 통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종료 현황에 대한 통계를 통해 2023년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2.5%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한 검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1명에서 187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135] 즉,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성범죄를 대상으로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표 4-5]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구분		총계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2022. 1. ~ 6.	승인	96건	80건	16건
	검거	104명(구속 14)	71명(구속 7)	33명(구속 7)
2023. 1. ~ 6.	승인	108건	88건	20건
	검거	256명(구속 22)	187명(구속 8)	69명(구속 14)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7),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2면.

또한, 2023년 상반기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종료 대비 수사 목적 달성 건수 비교를 통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효율성 높은 수사기법임을 입증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으로,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에서(94.7%)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134)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135)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참고.

2023년 상반기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총 121건 중 108건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약 89.3%의 높은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4-6]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종료 현황('23.01.01~'23.06.30.)

구분		총계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102건
	수사 목적 달성*	90건
신분위장수사	종료	19건
	수사 목적 달성	18건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7),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2면.

요약하자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의 도입은 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상의 한계는 분명하나, 우리 법제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시행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합법적이면서도 적시에 필요한 수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덧붙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마련되면서, 법 제25조의8에 면책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된 것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위장수사가 제도화됨으로 인해 면책 특권 측면에서 법제화가 된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경찰 대상 참석자 3-2)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승인 및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및 허가 현황은 알 수 없으나, 개별 심층 면접 및 FGI 참여자 대상 조사에서는 신청 건 모두 승인 내지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수사 신청에 대한 승인 및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2021년 10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약 1개월 후의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만 공식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상급경찰관서 수사 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 6건 불승인(중복수사 5건 및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되었고,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

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136]

[표 4-7]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승인·허가 현황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신청	승인	불승인	신청	허가	검사불청구	법원기각
38건	32건	6건	4건	3건	1건	-

※ 출처: 경찰청 브리핑(2021.10),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2면.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3년 차인 2023년 현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불승인 내지 검사불청구, 법원기각 없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 신청 시 대부분 승인 및 허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사팀을 직접 따로따로 불러내가지고 소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 없이 했는데 대부분 다 허가서를 발부해줬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1)

한편,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과 함께 2021년 당시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ⅰ)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승인·허가 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고, ⅱ)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ⅲ)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을 수립하였다.[137] 경찰청은 이후 지난 2년 동안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138] 대표적으로

136)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국수본(사이버범죄수사과) 내 위장수사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관련 기능 참여 위장수사 합동점검단 운영 방침-"(경찰청 브리핑, 2021.10.27.).

137)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막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경찰청 브리핑, 2021.09.16.).

138)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 방침의 시행 결과는 총 4차례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ⅰ)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국수본(사이버범죄수사과) 내 위장수사 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하여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하는 등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해 인적 자원의 지원 및 배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9]

나.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어려움

1)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승인 및 통제 절차에 따른 어려움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규정이 법 제25조의2부터 법 제25조의9까지 마련되었고,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하위 법령상 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021년 국회 논의 당시 위장수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140] 이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쉽게 조정되지 않았는데,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와 같은 수사방식은 수사기관이 신분을 감춘 채 피의자에게 접근해 수사하는 만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관련 기능 참여 위장수사 합동점검단 운영 방침-"(경찰청 브리핑, 2021.10.27.), ⅱ)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96명 검거- ※ 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총 90건 실시"(경찰청 보도자료, 2022.03.23.), ⅲ)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261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2.09.23.), ⅳ)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139)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3.07.21.).

140) 2021년 국회 논의 당시,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새로운 수사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었고, 이미 선행연구에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소위 잠입수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김택수, 2016,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윤지영, 2020,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등 참고.

남용의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 중 주요하게 대립한 부분이 바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승인 및 통제 절차로 최종적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승인 및 통제 절차를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발견되어 비공개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25조의3 제1항), ⅱ)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제25조의3 제3항). 나아가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 내부 승인만을 통해 착수할 수 있는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일종의 추가 외부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현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승인 및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건 모두 거의 승인이 나는 것으로 인터뷰에서는 조사되었지만, 다소 승인 및 허가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다수의 문헌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현행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제 수사 실무에서의 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141]

> 신분 비공개 수사는 단지 그냥 저희가 저희 신분을 밝히지만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법제화로 인해 경찰청에다가 승인받고 수사 지휘받고 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좀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1)

141) 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의 승인 및 통제 절차가 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신분비공개수사를 강제수사로 파악하고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도 경찰 내부의 자율 통제로는 부족하므로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민수, 2023,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64호, 583~585면, 유사한 취지의 문헌으로 황만성, 20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3권 제1호, 119~120면 등 참고.

> 사전에 승인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를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대상 참석자 2-1)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경찰청 내 보고에 불과하지만 선행될 수밖에 없는 구두 보고 등 내부 절차가 있어 실상 법률에서 규정한 일회성 보고로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사전승인제도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사후승인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하였다. 여러 관련 문헌에서도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142]

> 신문 비공개 수사에 들어가야 될 보고서라든가 본청에 보고 절차라든가, 보고 라인이라든가, 준수해야 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본청에 승인받는 시간보다 법원에 허가를 받는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대상 참석자 2-1)

>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의 경우 현장 의견을 들으면 100이면 100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어서 무조건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구요. (경찰 대상 참석자 1-2)

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활용상 어려움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가 법제화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143]

그러나 신분위장수사에 있어 위장 신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44] 어떤 성착취물

---

142)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6면; 추효정, 2022,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10면 등 참고.

143)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등.

144) 이를 위해 일부 문헌에서는 가상의 신원으로 주민등록증을 정식 발급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주민등록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신분위장수사 목적 주민등록증 발

을 소지·판매·광고 할 것인지, 나아가 성착취물의 판매 및 광고 행위는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사 실무에서 난점으로 지적되며, 현재 위장신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는 신분위장수사 방법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45]

> 법 규정상 판매 및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든가, 수사의 비례성을 따져보면,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1-2)

> 어떤 특정 여성의 나체 영상을 올려서 인증을 받아서 비밀 채팅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영상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cg로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렇다고 외국 음란 영상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다른 방법은 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경찰청이나 아니면 우리 경찰청에서 어떤 특정 영상을 만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2)

한편,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일명 '그루밍' 행위가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성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급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경찰청·군산대학교, 2022,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위장신분 설정·구축에 대한 연구, 113~118면 참고.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바, 필요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으로 보진 않는다.

145) 유사한 내용의 선행연구로, 오상지, 20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 161면, 176면; 박찬걸, 202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2021.9.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 99~103면;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6~7면; 추효정, 2022,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11면 등 참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현행 온라인 그루밍 규정의 개선 및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46][147]

이에 대해 경찰 실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사의 동력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상 이를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아 실제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저희가 어떤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긴 건 사실이죠. 제작까지 안 가더라도 성적 욕망 등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수사가 가능하니, 저희한테 하나의 무기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1-1)

>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온라인 그루밍까지 안 당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와서 접수가 돼야 할 텐데, 보통 접수 단계는 이미 온라인 그루밍 이후의 단계까지 넘어서 있고, 온라인 그루밍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으니깐요. (경찰 대상 참석자 1-2)

> 단순히 이제 교감을 쌓기 위해 대화하는 거나 남자친구가 됐으면 어때 여자친구가 됐으면 어때 이런 식의 경우 등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도 성착취 목적 대화로 좀 인정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2-1)

---

146) 김정연, 2021,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39~145면; 오상지, 20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 158~159면; 강나래·이상진, 2022,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제36권 제4호, 265면; 박찬걸, 202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2021.9.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 91~95면;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6면; 황만성, 20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3권 제1호, 123~124면 등 참고.

147) 일부 이를 불능미수로 보아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능미수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을 제도적 한계로서 정책 개선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범위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증거를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수사대상자의 별건 범죄혐의, 공범추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현행 우리 법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그 근거를 마련하여 그 적용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당하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어 왔다.[148]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백 개 영상 중에서 성인인지 아동 청소년인지 저희가 구분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게 성인이라 해서 그게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피해인데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실제 수사를 함에 있어 굉장히 큰 걸림돌이긴 하죠. (경찰 대상 참석자 3-1)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고,[149] 디지털성범죄의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은 ⅰ) 성폭력처벌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150]과 ⅱ) 수사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151]으로 나뉜다.

---

148) 최대현·장응혁, 2022,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등 참고.

149)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5면; 추효정, 2022,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10면 등 참고.

1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2021.02., 3면; 이종현·강동욱, 2021,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2권 제3집, 58~60면 등 참고.

한편,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됨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물론 마약, 사기,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도입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152][15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위장수사에 대한 명시적인 첫 입법례로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3. 국제공조수사

가. 국제공조수사 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기술을 이용한 소위 사이버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시간 내지 장소에 국한됨이 없이 누구나 쉽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포 내지 복제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현재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외국과의 수사 공조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개별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협약[154]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국제

151) 최준혁, 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1~202면; 경찰청·군산대학교, 2022,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위장신분 설정·구축에 대한 연구, 134면; 박찬걸, 202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2021.9.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 98면; 오상지, 2022,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치안정책리뷰 제76호, 15면; 최대현·장응혁, 2022,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320면 등 참고.

152) 현재 개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들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의안번호 2122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3.05.16., 의안번호 21217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3.05.03., 의안번호 211675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2.08.22., 의안번호 2117062,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의원 등 17인), 제안일자 2022.08.29.,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1인), 제안일자 2021.11.18.가 있다.

153) 최대현·장응혁, 2022,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320면.

154) 202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41개국과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41개국과의 개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에서 확인가능하다.

공조,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의 공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55] 해당 국가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설령,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 협조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비추어 대응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156]

대표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국제공조는 2017년 종합대책에서 국내외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내 음란물 유포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표 4-8] 국제공조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국내외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Ⅳ. 단계별 개선방안

4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단속 및 처벌**

○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
* 소라넷은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상대로 IP, 서버 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 조치

○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검거**
⇒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법무부, 상시)**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7면, 14면 .

이후 제20대 국회부터 국민청원동의[157]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지속해서 언급되어 왔다. 해당 국민청원동의 청원 원문에서 "…또한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라는 점을 이용해 이들은 경찰

155)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방식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은 전현욱 외, 2015,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36~138면 참고.

156)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2.11. 3면 참고.

157) 청원번호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2.10. 해당 청원은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결찰의 국제공조수사를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 U0B2J1N1Z1Q3D2J2J2N6C0B5H7, 최종검색일: 2023.10.10.).

신고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우회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채널과 영상 유포자를 신고해도, 텔레그램 측에 접수되었다는 점만 알 뿐 즉각적으로 유포 계정/채널이 정지되지 않아 단순 모니터링과 신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범을 방지하고 본질적으로 성착취영상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공조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와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소라넷 폐쇄를 이뤄낸 선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독일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한다면 해외 서버라는 한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서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 특히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협약[158]')의 가입은 비교적 오랜 시간 학계 및 관련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경찰 실무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이행법률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 나아가 협약 가입에 따른 우려 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159] N번방 사건에서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국외에 근거를 두고 발생한 디지털성범죄가 끊임없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고,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먼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160]

---

158)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서명이 2001년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되어, 소위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라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 협약에 대한 다양한 번역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으로 칭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문서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 문서에서 사용한 협약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159) 정재준, 2013,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부다페스트(Budapest) 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 형사법의 신동향 제39호; 차진아, 2013,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박희영·최호진·최성진, 2015,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이경렬·하건우, 2018,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정태진·이광민, 2019,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타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제2호; 신용우, 2020,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7호 등 참조.

160) 물론 유럽 사이버범죄 협약이 통신데이터 또는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등을 의무화하

>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은 너무 필요한 상태로, 협약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협약상 보전명령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항에 따라 증거의 휘발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 사이버범지 방지 협약에 따라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는데, 현재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관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체계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국가 사이의 수사공조가 신속,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01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주도하여 만든 국제조약으로 전문과 4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ⅰ) 협약의 당사국이 필수적으로 범죄화하여야 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제시하고,[161] ⅱ) 신속한 보존, 수색, 압류 등 사이버범죄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절차 규정 및 ⅲ) 국가 사이의 신속한 수사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68개국이 가입한 상황이다.[162]

[표 4-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국 리스트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국 리스트(2023. 11. 기준)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통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키프로스 (이상 68개국)

※ 출처 :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대의 견도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이버범죄 수사·소추·재판절차를 위한 조치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및 정보주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등 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우, 2020,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5면 참고.

161)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그 유형으로 불법 접속(Illegal Access), 불법 감청(Illegal Interception), 데이터 침해(Data Interference), 시스템 방해(System Interference), 장치 오용(Misuse of Devices),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및 위조(Fraud and Forgery),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Child Pornography),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IPR-Offences)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2) 유럽평의회 홈페이지〈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2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의 개선 권고안을 통해 피해 영상물의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 방안으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신속히 가입하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의 국제사법공조가 신속화·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163] 본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사이버범죄관련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 접근 등을 규율하고 있고, 동 협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신속화하는 것인바, 우리나라도 이에 신속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64]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165]'이 2022년 4월 20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본 결의안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 국가 간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의 특징으로 인해 수사와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ⅰ)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으로서 제안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 그리고 ⅱ) 대한민국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형사사법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67개국이 사이버범죄 협약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결의안은 정부에 대하여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과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166]

---

163) 법무부, 2022, 디지털성범죄등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법무행정자료, 142면.
164) 법무부, 2022, 디지털성범죄등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법무행정자료, 145면 참고.
165) 의안번호 211533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등 26인), 제안일자 2022.04.20.
166)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2.11. 8면.

현재 2022년 10월 11일 정부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위하여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고[167]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 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 필요성 검토 등 국내 절차 진행 과정을 준비 중이다.[168]

나아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2001년 협약 체결 및 발효 이후 약 23년이 지난바, 2017년부터 유럽평의회는 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지난 20년간의 정보통신 환경변화를 반영할 필요에 따라 협약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제2 추가의정서(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on enhanced co-operation and disclosure of electronic evidence (CETS No. 224))가 채택·승인되었다.[169] 제2 추가의정서는 ⅰ) 디지털증거가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빠르고 쉽게 복사, 이동 또는 삭제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 ⅱ) 형사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사이버범죄가 폭증하였고, ⅲ) 기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5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으며, 2023년 6월 기준 총 3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170][171]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제2 추가의정서의 채택과 가입으로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2 추가의정서의 채택과 가입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근 학계에서는 2001년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외 제2 추가의정서의 채택 여부 등 제2 추가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72]

---

167) 2023.11. 기준 우리나라 외에도 23개국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서명 및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구체적인 국가 목록은, 유럽평의회 홈페이지〈https://www.coe.int/en/web/cybercrime/parties-observers〉 참조.

168)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2.11. 8면.

169) 이지우·이경렬, 2023,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CLOUD Act와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226~227면 참고.

170) 유럽평의회 홈페이지〈https://www.coe.int/en/web/cybercrime/opening-for-signature-of-the-second-additional-protocol-to-the-cybercrime-convention〉.

171) 이지우·이경렬, 2023,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CLOUD Act와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227~228면 참고.

172) 박재성, 2021,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비록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개별 국가의 수사기관 간 공조, 국제기구와 공조, 민간기업과 공조 등 다양한 국제공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는 등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73]

> 경찰 내부적으로 현재 국제공조 방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인터폴 공조인데, 국제공조의 모든 방식들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중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요청들이 다 발생하고 있어요,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기업 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하자마자 이것이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가장 먼저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 공조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조금 더 두드러진 현상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나. 국제공조수사에 있어 어려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사이버 범죄 자체에서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이런 사이버 인프라가 모든 범죄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a 국가에 살고 있는 피의자가 b 국가에 있는 인프라를 써서 한국의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범죄가 사이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공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게 사이버 성폭력도 디지털성범죄도 그런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5호; 이지우·이경렬, 2023,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CLOUD Act와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등 참조.

173)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경찰청 브리핑, 2021.03.19.).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2023년 11월 기준, 총 68개국만이 가입한 상태로 현재까지 꽤 높은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약으로 평가하긴 힘들다. 또한, 2019년 12월 UN에서는 러시아의 주도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174]의 채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상황으로 미국, EU 가입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는 이미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조약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서방 국가의 입장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은 디지털성범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미국 같은 경우는 CLOUD Act를 제정해서 국가 간의 정보 교류의 폭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늘리고 있고 제2 추가의정서도 마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여 규범 내지 협약의 형태를 계속 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논의에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관계 부처, 시민사회나 학계 모두의 도움을 다 합쳐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뺐으면 합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2021년 제2 추가의정서까지 채택·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부터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임의적 국제공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

174) 2919년 새로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재성, 2021,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5호, 266~277면 참고.

175) 박재성, 2021,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5호, 249면 참고.

> 이미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제2 추가의정서까지 나아가서 수단을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기본 협약 가입 논의부터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 그런 게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이지 협약 가입 필요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물론,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하더라도 이후 이에 따른 후속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가입 이후의 국내 이행법률의 신속한 제·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인데,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상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협약 가입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법공조, 사생활 보호, 기업의 부담 완화, 국가안보 등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76] 두 번째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방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학계나 경찰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협약 가입으로 단점도 있지만 협약 가입을 통해 범죄 수사로 얻는 국민 보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작년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거고요. 동남아 쪽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별도 협약에 준한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경찰 대상 참석자 4)

한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 추가의정서가 채택·승인되었고, 2019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2 추가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조약의 주요 논의 사항들을 지속해서 확인하여 국내 이행법률을 정비하는 데 고려해야

176) 신용우, 2020,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5~6면.

할 것이다.[177] 덧붙여,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으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한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공조도 병행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 특정 영상물을 글로벌하게 삭제 내지 모니터링하여 차단하는 예방 개념의 네트워트가 형성되서 범죄 수사 공조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망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대상 참석자 4)

제2절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1. 2021년 검찰의 처분 현황

가. 경찰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종전과는 달리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갖게 되면서,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피고인, 참고인 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지결정을 한 후, 이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소년부송치,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고, 불송치 사건은 송부된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결정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경찰은 입건된 디지털성범죄자 중 76.4%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14.9%는

177) 제2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쟁점 및 국내 입법 정비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성, 2021,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5호, 250~266면, 이지우·이경렬, 2023,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CLOUD Act와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227~247면 참고.

불송치, 8.1%는 수사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송치된 디지털성범죄자의 대다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되었다. 전체의 14.9%를 차지하는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없음'이었고, 전체 디지털성범죄자의 14.2%, 불송치사건의 95.7%에 해당하였다. 디지털성범죄자에 비해 접촉 성폭력 범죄자의 검찰 송치비율이 약간 더 낮았는데, 이는 접촉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혐의없음'의 사유(25.0% vs 14.2%)로 불송치한 사건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 중 허위영상물편집·반포는 검찰송치비율이 56.8%로 다른 디지털성폭력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결정하는 '수사중지' 비율이 28.8%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의 뒤를 이어 촬영물이용협박 협박강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수사중지비율이 각 13.8%과 11.1%로 다른 범죄유형보다 높았다.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한 비율은 촬영물이용협박 협박강요등 범죄가 10.9%로 높았고, 그다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작배포등(3.5%)의 순이었고, 이 두 가지 디지털성범죄는 접촉 성폭력(5.7%)에 비해 구속송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결정(2021년)

(단위 : 명(%))

범죄유형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기타
		책임송치			법정송치	소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계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소계	구속	불구속									
접촉 성폭력범죄	20,844 (100.0)	14,911 (71.5)	1,186 (5.7)	13,725 (65.8)	230 (1.1)	5,430 (26.1)	5,213 (25.0)	46 (0.2)	171 (0.8)	261 (1.3)	231 (1.1)	30 (0.1)	12 (0.1)
디지털성범죄(계)	12,460 (100.0)	9,518 (76.4)	360 (2.9)	9,158 (73.5)	45 (0.4)	1,855 (14.9)	1,775 (14.2)	26 (0.2)	54 (0.4)	1,012 (8.1)	998 (8.0)	14 (0.1)	30 (0.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79 (100.0)	1,284 (76.5)	117 (1.0)	1,167 (69.5)	3 (0.2)	279 (16.6)	253 (15.1)	9 (0.5)	17 (1.0)	108 (6.4)	105 (6.3)	3 (0.2)	5 (0.3)
카메라등이용촬영	5,051 (100.0)	3,972 (78.6)	164 (3.2)	3,808 (75.4)	22 (0.4)	830 (16.4)	807 (16.0)	4 (0.1)	19 (0.4)	214 (4.2)	211 (4.2)	3 (0.1)	13 (0.3)
허위영상물	229 (100.0)	130 (56.8)	8 (3.5)	122 (53.3)	0 (0.0)	33 (14.4)	33 (14.4)	0 (0.0)	0 (0.0)	66 (28.8)	65 (28.4)	1 (0.4)	0 (0.0)
촬영물이용협박강요	514 (100.0)	396 (77.0)	56 (10.9)	340 (66.1)	0 (0.0)	47 (9.1)	39 (7.6)	2 (0.4)	6 (1.2)	71 (13.8)	70 (13.6)	1 (0.2)	0 (0.0)
통신매체이용음란	4,987 (100.0)	3,736 (74.9)	15 (0.3)	3,721 (74.6)	20 (0.4)	666 (13.4)	643 (12.9)	11 (0.2)	12 (0.2)	553 (11.1)	547 (11.0)	6 (0.1)	12 (0.2)

※ 자료출처 : 경찰청(2022), 「범죄통계」.

주 : 1) 접촉성폭력은 경찰청 범죄통계 중 강간(소계), 유사강간(소계), 강제추행(소계), 기타(강간강제추행등 소계)와 공중 밀집장소추행을 합한 수치임.

2) 법정송치는 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를 합한 수치임.

나. 검찰의 처분 현황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을 세부유형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검찰 처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아닌 [검찰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연감]에 '타관송치' 건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소율을 계산했을 때, [범죄분석]보다 다소 낮게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21년 검찰은 접수된 16,271명의 디지털성범죄자의 31.4%를 기소 처분하였고, 26.2%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리고 6.6%를 법원에 송치하였는데, 대부분이 소년부송치 즉 소년범죄자를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소를 공판과 약식재판으로 구분해보면, 공판청구 비율이 20.9%로 약식재판 청구비율(10.5%)보다 더 높았다. 피의자를 구속하여 공판을 청구한 비율은 2.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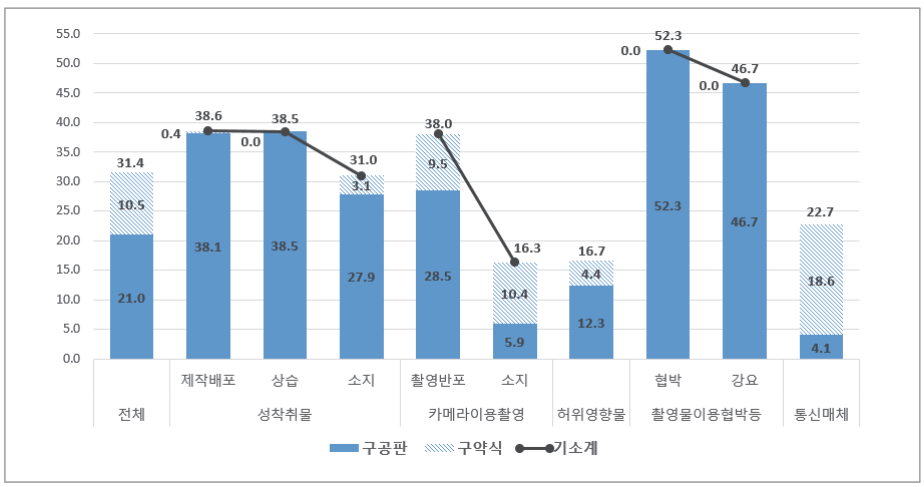
이를 접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와 비교해보면, 접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은 각각 43.0%와 33.1%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31.4%)과 구공판 비율(21.0%)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약식재판 청구비율은 접촉 성폭력 9.9%, 디지털성범죄 10.5%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 처리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성범죄 유형별로 검찰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상습 촬영물반포가 6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촬영물이용협박(52.3%), 촬영물이용강요(46.7%)등의 순이었고, 촬영물소지가 16.3%로 가장 낮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는 16.7%로 촬영물소지와 비슷한 순이었다. 이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소율이 22.7%인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는 30%대의 기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상습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의 기소율이 각 38.5%와 38.6%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 두 가지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타관송치(각 23.1%, 25.8%), 소년부송치의 비율(15.4%, 10.1%)이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기소처분을 공판과 약식재판 청구로 세분해보면, 기소율이 높은 범죄의 경우 약식재판청구가 한 건도 없어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이 같았다. 이외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의 약식재판 청구비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8.6%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촬영물소지(10.4%), 촬영물반포(9.5%)의 순이었다. 촬영물소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기소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사건의 대부분은 구약식기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디지털성범죄자 기소율(2021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공소유예, 각하, 기소 및 참고인 중지 등을 포함한 광의의 불기소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디지털성범죄는 26.2%로 접촉성폭력 범죄(26.1%)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불기소율이 42.8%로 가장 높았고, 촬영물소지가 42.6%로 그 뒤를 이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촬영물소지는 검찰 처분대상 사건 10건 중 약 4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촬영물소지는 대부분 기소유예처분(39.9%)을 받은 반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기소유예(24.3%)뿐 아니라 각하[178]되는 비율(14.0%)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송치 비율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성착취물제작배

178) 각하는 ①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② 고소, 고발이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⑤ 고소장, 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동항 제5호).

포가 각 23.4%, 15.4%, 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는데, 이는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의 상당부분이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의 미성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접촉 성폭력에 비해 타관송치의 비율(19.3% vs 12.2%)이 높았다. 특히 세부 범죄유형별로 타관송치 비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처리사건이 10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촬영물이용강요, 성착취물 제작 배포, 성착취물소지가 타관송치 비율이 20~30%대를 차지해 매우 높았다. 타관송치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6조), 2021년에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애초에 검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검찰에서 인지하여 경찰로 수사지휘한 사건들의 경우 더 이상이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있을 관할권이 없게 되어서 경찰서로 타관이송하는 사례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디지털성범죄는 2021년 이전에도 타관이송의 비율이 높아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중 보완수사의 비율도 상당하였다. 보완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통계항목이다. 이는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검사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력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11]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2021년)

(단위: 명, %)

범죄유형	처리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등송치	타관송치	보완수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기소중지등			
			구속	불구속											
접촉성폭력(계)	24,574	43.0	5.3	27.8	9.9	26.1	7.9	9.4	0.0	0.4	7.9	0.4	1.9	12.2	16.7
디지털성범죄(계)	16,271	31.4	2.6	18.3	10.5	26.2	4.1	14.5	0.0	0.3	7.1	0.2	6.6	19.3	16.4
성착취물(계)	3874	34.3	4.5	27.8	1.9	10.8	5.4	4.1	0.0	0.3	1.0	0.0	7.6	24.1	23.2
성착취물제작배포등	1675	38.6	9.7	28.4	0.4	6.6	2.4	2.6	0.0	0.3	1.3	0.1	10.1	25.8	18.9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13	38.5	30.8	7.7	0.0	7.7	7.7	0.0	0.0	0.0	0.0	0.0	15.4	23.1	15.4
성착취물소지	2,186	31.0	0.4	27.5	3.1	14.0	7.6	5.3	0.0	0.3	0.8	0.0	5.5	22.9	26.5
카메라등이용촬영(계)	5777	36.9	2.9	24.5	9.5	22.5	4.1	12.9	0.1	0.4	5.0	0.1	6.6	15.7	18.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5399	38.0	2.9	25.7	9.5	21.3	4.3	11.4	0.1	0.4	5.2	0.1	7.0	15.5	18.2
촬영물 소지등	338	16.3	0.0	5.9	10.4	42.6	1.2	39.9	0.0	0.0	1.5	0.0	0.9	18.3	21.9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40	60.0	37.5	22.5	0.0	2.5	0.0	0.0	0.0	2.5	0.0	0.0	5.0	20.0	12.5
허위영상물(계)	253	16.6	3.2	9.1	4.3	12.6	4.0	6.7	0.0	0.0	2.0	0.0	23.3	31.2	16.2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252	16.7	3.2	9.1	4.4	12.7	4.0	6.7	0.0	0.0	2.0	0.0	23.4	31.0	16.3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촬영물이용협박(계)	596	51.3	11.6	39.8	0.0	8.4	1.3	4.7	0.0	0.0	2.3	0.0	7.0	19.0	14.3
촬영물이용협박	501	52.3	10.6	41.7	0.0	9.4	1.4	5.2	0.0	0.0	2.8	0.0	7.0	17.4	14.0
촬영물이용강요	92	46.7	16.3	30.4	0.0	3.3	1.1	2.2	0.0	0.0	0.0	0.0	7.6	27.2	15.2
상습촬영물이용협박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상습촬영물이용강요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통신매체이용음란	5,771	22.7	0.1	4.0	18.6	42.8	3.5	24.3	0.1	0.4	14.0	0.5	5.2	19.3	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2022),「검찰연감」.

주 : 1) 접촉 성폭력범죄는「검찰연감」강간과 추행의죄, 성폭력범죄/성폭특례 중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제외한 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 중 제11조, 제12조~제15조를 제외한 범죄를 합한 수치임. 2. 소년부 등 송치는 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를 합한 수치임.

2. N번방 방지 대책 이후 검찰 처분의 변화

가. 검찰의 강화된 사건처리지침 시행

아래에서는 2014년에서 2021년까지 8개년 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통해, 1, 2차에 걸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과 특히, 2020년 4월 9일 3차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직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서 밝힌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실제 검찰의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9월의 제1차 정부 종합대책은 주된 대상이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소형 혹은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화장실, 모델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초기에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던 연인 간 동의 혹은 비동의 성적 촬영물에 대한 비동의 유포였다. 대검찰청은 2018년 11월 이와 관련하여 강화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하였다. 동 기준은 ⅰ) 불법촬영범죄를 피해자 몰래 촬영, 몰카 영상/사진 유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사진 유포, 영리목적유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총 8개 유형 세분화, ⅱ) 유형별 기본구형 설정 및 가중·감형 양형요소 반영 기준 마련, ⅲ) 피해자 식별가능 등 중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ⅳ) 합의된 경우 등에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79]

한편, 2020년 4월 9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사건처리지침은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성범죄·폭행·협박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사건이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영상물인 '성착취영상물'에 적용된다. 해당기준은 사건처리지침이 발표된 2020년 4월 9일부터 현재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180]

사건처리지침은 '성착취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행위로 유형화하여 기존의 사건처리지침보다 강화된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제작사범은 범행방법(조직적, 개별적)과 가담 정도(공범, 방조범), 피해자 유형(아동, 성인), 동종전

179) 매일경제, 2018. 11. 8.일자, 검, 불법촬영엄단.

180) 이외에도 재판 중인 사건도 기소 과정이나 정상관계를 반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구형을 상향하도록 각 검찰청에 지시하였으며, 각 청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혐의없음, 기소유예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 810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 등 불문하고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적 제작사범의 주범은 15년 이상, 개별적 조직사범의 주범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두 범죄 모두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유포사범 중 영리목적유포사범은 전원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유포사범도 동종 전력,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의 경우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적으로 유포한 사범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에 대한 피해 야기 등 죄질 불량 시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그 외 일반유포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지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한 소지·운반사범이나 동종 3범 이상 일반소지 사범도 구속 적극 검토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엄벌로 범죄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지사범이나 동종 재범 또는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 및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하고, 초범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초범인 소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 기소유예를 못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자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한다. 검찰의 처분에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검찰연감]을 활용하였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분석]과 [검찰연감] 뿐이다. [검찰연감]이 [범죄분석]에 비해 범죄유형을 세분화해서 검찰의 처분현황을 공개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검찰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검찰연감]에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소율, 구속기소율, 기소유예율 등의 지표만으로는 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제작/촬영 범죄와 유포 범죄에 대한 통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포 범죄도 영리목적 여부에 따른 통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행위유형별 처분에서의 변화는 제작 및 촬영과 소지범죄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검찰연감]의 통계가 2021년 이후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과 피의자중지 및 참고인중지 등 수사중지결정을 한 후 이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 중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송치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에 기소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기소처분 비율의 증가는 검찰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통계적 착시의 문제를 고려해 2021년과 이전 연도의 비교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81)]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의 변화

먼저 지난 8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는 '타관송치'의 비율이 최저 25.6%에서 최고 42.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소율은 가장 낮았던 2015년의 8.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에는 3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착취영상물 사건처리지침이 발표된 2020년의 기소율은 전년대비 10.5%p나 상승하였고, 증가세는 2021년에도 이어졌다.

구속기소율은 2014년에 0.7%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2020년에는 14.1%로 전년 대비 7.7%p, 2014년 대비 13.4%p나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10.0%로 낮아졌으나 2020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20년 발표한 사건처리지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 가담정도, 피해자유형, 동종전과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 처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소처분을 공판청구와 벌금형이 예정된 약식재판 청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약식재판 청구 비율은 2015년 이후 증가해 2018

18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대검찰청은 2021년부터 [범죄분석]에서 검찰의 처분통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와 수사중지건수에 관한 통계를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유형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년에는 6.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2020년 1.8%, 2021년 0.4%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2020년 대책발표 이전에도 기소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일정부분 구약식 기소비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기소율의 급격한 증가는 공판 청구 비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처분이었다. 불소기율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22.2%로 전년 대비 23.6%p 감소했고, 2021년에는 6.7%로 전년 대비 15.5%p 감소하였으며, 주로 불기소비율의 감소는 기소유예 처분비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기소처분비율과 기소유예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기소중지의 비율은 2014년 1.9%에서 증가하여 2018년 6.8%, 2019년 15.8%, 2020년 10.8%이었다. 그리고 2021년은 경찰이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1,679건 중 수사중지결정을 한 범죄자가 6.7%로 여전히 일정 비율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가 미결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2020년 4월 사건처리지침 시행을 기점으로 기소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공판청구비율의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중지비율이 높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2] 검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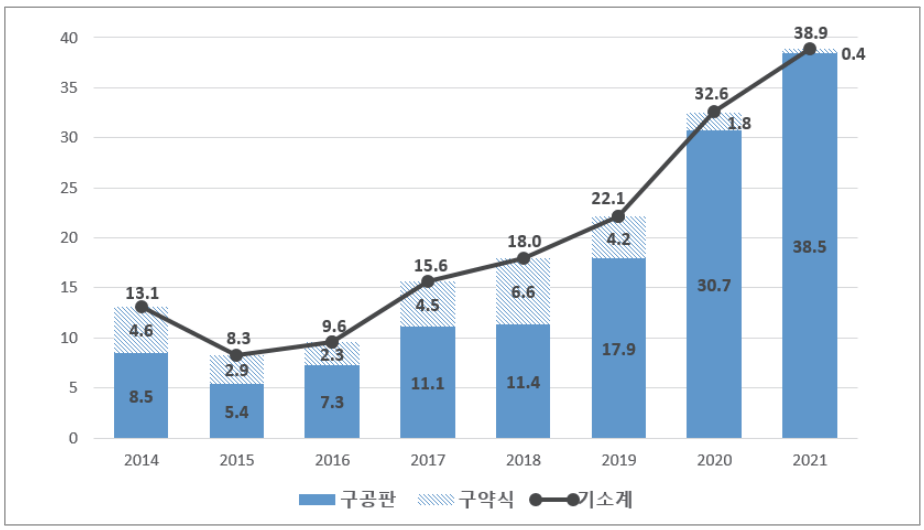
(단위: 명, %)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19	996	1,356	647	916	885	1,635	1,675
기소계	소계		13.1	8.3	9.6	15.6	18.0	22.1	32.6	38.9
	구공판	구속	0.7	0.8	2.4	4.9	5.2	6.4	14.1	10.0
		불구속	7.8	4.6	4.9	6.2	6.2	11.5	16.6	28.5
	구약식		4.6	2.9	2.3	4.5	6.6	4.2	1.8	0.4
불기소계	소계		46.8	49.0	45.9	45.7	33.1	45.8	22.2	6.7
	혐의없음		6.8	3.6	2.9	5.3	4.3	6.3	4.6	2.5
	기소유예		37.6	43.0	40.5	34.6	21.3	21.6	3.9	2.6
	죄가안됨		0.0	0.0	0.1	0.2	0.1	0.2	0.1	0.0
	공소권없음		0.5	0.2	0.8	0.6	0.5	1.4	2.3	0.3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소중지	1.9	2.0	1.5	4.9	6.8	15.8	10.8	1.3
	각하 등	0.0	0.2	0.1	0.2	0.1	0.5	0.5	0.1
소년보호사건송치		0.7	1.0	3.0	4.6	6.4	6.4	9.4	10.3
타관송치		39.4	41.7	41.5	34.0	42.5	25.6	35.8	26.0
보완수사		-	-	-	-	-	-	-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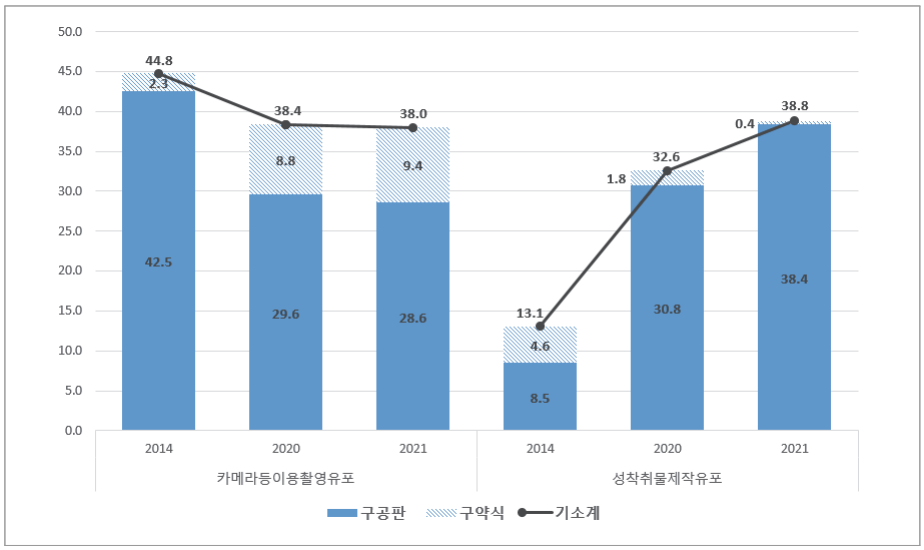
※ 자료출처 : 대검찰청,「검찰연감」, 각 연도.
주 : 1) 기소중지 등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중지가 포함됨.
2) 소년부 등 송치에는 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타 법정 송치가 포함됨.

[그림 4-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 기소율(2014~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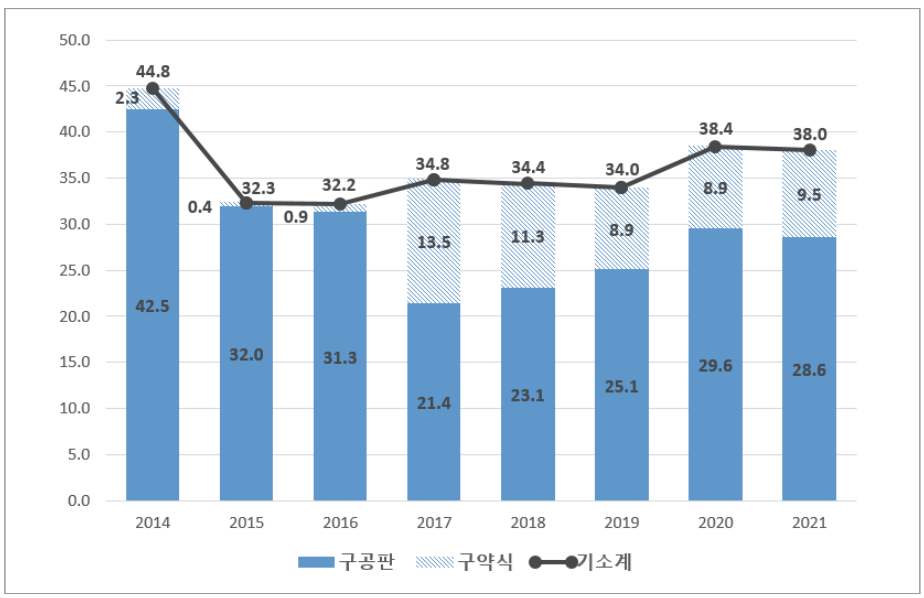


2018년과 2020년 대책에서 주된 정책대상이 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추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44.8%로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32.3%로 감소하였고 이후 30%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1차 범정부대책이 발표되었던 2017년과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이 발표되었던 2018년에는 이전 연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사건지침이 발표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4%p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구약식비율도 가장 높았던 2017년에 비해 2021년 9.5%로 낮아졌으나 여러 해에 걸친 점진적인 감소가 누적된 결과였다.

[그림 4-3]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추이(2014, 2020, 2021년)



[그림 4-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기소율(2014~2021년)



불기소처분 비율은 2018년과 2020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없으나, 기소유예처분 비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는 다른 범죄에 비해 혐의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5년 8.0%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에는 18.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4.3%로 낮아졌으나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4-13] 검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단위: 명, %)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376	4,963	5,775	6,577	6,636	6,796	5,795	5,399
기소계	소계		44.8	32.3	32.2	34.8	34.4	34.0	38.4	38.0
	구공판	구속	2.3	2.3	2.7	2.1	2.8	2.9	2.8	2.9
		불구속	40.2	29.7	28.6	19.3	20.3	22.2	26.8	25.7
	구약식		2.3	0.4	0.9	13.5	11.3	8.9	8.9	9.5
불기소계	소계		38.4	43.8	44.8	44.6	42.1	44.5	41.2	21.3
	혐의없음		8.6	8.0	9.9	12.5	13.7	16.7	18.2	4.3
	기소유예		25.1	29.8	27.4	24.4	17.7	14.1	9.8	11.4
	죄가안됨		0.0	0.1	0.0	0.0	0.0	0.1	0.1	0.1
	공소권없음		0.1	0.2	0.2	0.4	0.5	0.7	0.9	0.4
	기소중지		3.5	5.1	6.8	6.6	7.7	9.2	8.6	5.2
	기타		0.9	0.6	0.5	0.6	2.4	3.6	3.7	0.1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3.1	2.9	4.4	5.2	6.6	6.4	5.4	7.0
타관송치			13.8	21.0	18.6	15.4	17.0	15.1	14.9	15.5
보완수사			-	-	-	-	-	-	-	18.2

※ 자료출처 : 대검찰청,「검찰연감」, 각 연도.
주 : 1) 기소중지 등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중지가 포함됨.
2) 소년보호사건 송치등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가 포함됨.

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제1항)과 촬영물이용강요죄(제14조의3 제2항)는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만들어진 처벌규정이다. 2020년 4월 검찰의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이 발표될 당시 촬영물이용협박과 강요죄는 신설되지 않았으나,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정의에는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0년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기소율은 50.0%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높았고,

2021년에는 다소 하락한 46.7%이지만 여전히 높다. 촬영물이용강요죄의 기소율은 2020년 50.8%로 촬영물이용협박죄에 비해 약간 더 높고, 2021년에는 52.3%로 더 상승하였다. 촬영물이용강요와 협박죄 모두 약식재판청구는 2년 연속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촬영물이용협박과 강요죄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인 기소 및 참고인 중지 비율이 12.5%와 14.5%로 다소 높았다. 2021년에는 기소 및 참고인 중지 비율이 각 0%와 2.8%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성명불상이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사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이외의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 앞의 [표 4-10]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2021년 촬영물이용협박과 강요 범죄자에 대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비율은 13.8%(261건 중 71건)로 허위영상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4] 검찰의 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단위: 명, %)

구분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이용강요	
			2020	2021	2020	2021
계			24	92	124	501
기소계	소계		50.0	46.7	50.8	52.3
	구공판	구속	29.2	16.3	18.5	10.6
		불구속	20.8	30.4	32.3	41.7
	구약식		0.0	0.0	0.0	0.0
불기소계	소계		16.7	3.3	22.6	9.4
	혐의없음		4.2	1.1	2.4	1.4
	기소유예		0.0	2.2	3.2	5.2
	죄가안됨		0.0	0.0	0.0	0.0
	공소권없음		0.0	0.0	0.0	0.0
	기소중지		12.5	0.0	14.5	2.8
	기타		0.0	0.0	2.4	0.0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12.5	7.6	4.0	7.0
타관송치			20.8	27.2	22.6	17.4
보완수사			-	15.2	-	14.0

※ 자료출처 : 대검찰청,「검찰연감」, 각 연도.
주 : 1) 기소중지 등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중지가 포함됨.
2) 소년보호사건 송치등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가 포함됨.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및 촬영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의 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의 기소율은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 29.1%, 2021년 31.0%로 두 해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구약식기소 비율은 2020년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의 1/2 수준으로 감소해 2020년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의 기소율 또한 구공판 기소율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를 상회하였던 불기소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2020년 21.2%, 2021년 14.0%를 기록했다. 두 개년도의 불기소율의 감소는 기소유예 비율의 감소가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인 2020년 혐의없음이 12.9%로 전년대비 5.6%p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혐의없음 7.6%, 보완수사요구비율이 26.5%로 나타나 디지털성범죄 수사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5] 검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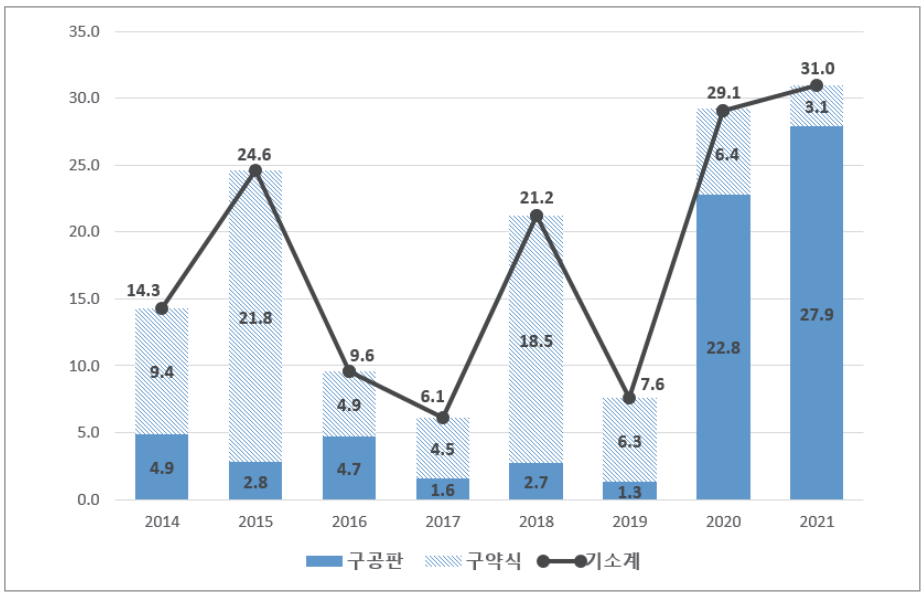
(단위: 명, %)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23	248	532	440	703	837	2,570	2,186
기소계	소계		14.3	24.6	9.6	6.1	21.2	7.6	29.1	31.0
	구공판	구속	1.3	0.0	0.0	0.0	0.0	0.0	0.3	0.4
		불구속	3.6	2.8	4.7	1.6	2.7	1.3	22.5	27.5
	구약식		9.4	21.8	4.9	4.5	18.5	6.3	6.4	3.1
불기소계	소계		48.4	41.9	46.1	51.4	45.1	41.5	21.2	14.0
	혐의없음		2.7	9.7	4.5	5.2	7.5	7.3	12.9	7.6
	기소유예		44.8	30.6	41.2	44.8	31.4	26.0	6.1	5.3
	죄가안됨		0.0	0.4	0.0	0.0	0.0	0.0	0.0	0.0
	공소권없음		0.0	0.4	0.0	0.5	0.3	0.0	0.4	0.3
	기소중지		0.9	0.8	0.4	0.9	5.8	8.0	1.8	0.8
	기타		0.0	0.0	0.0	0.0	0.0	0.1	0.0	0.0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0.4	3.6	1.5	1.8	2.0	1.4	5.3	5.5
타관송치			36.8	29.8	42.9	40.7	31.7	49.5	44.3	22.9
보완수사			-	-	-	-	-	-	-	26.5

※ 자료출처 : 대검찰청,「검찰연감」, 각 연도.
주 : 1) 기소중지 등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중지가 포함됨.
2) 소년보호사건 송치등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가 포함됨.

촬영물소지죄는 N번방 후속 입법의 하나로 2020년 새롭게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2020년은 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이 34건에 불과했다. 이 중 61.8%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전체의 38.2%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비율도 11.8%를 차지하였다. 2021년에는 처분대상이 된 사건이 338건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2020년에 비해 기소율이 증가하였다. 기소처분을 받은소지 범죄자 10명 중 6명은 약식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기소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기소유예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비율이 증가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범죄 기소율(2014~2021년)



[표 4-16] 검찰의 촬영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단위: 명, %)

분류			2020		2021	
계			34	100.0	338	100.0
기소계	소계		4	11.8	55	16.3
	구공판	구속	0	0.0	0	0.0
		불구속	3	8.8	20	5.9
	구약식		1	2.9	35	10.4
불기소계	소계		21	61.8	144	42.6
	혐의없음		5	14.7	4	1.2
	기소유예		13	38.2	135	39.9
	죄가안됨		0	0.0	0	0.0
	공소권없음		0	0.0	0	0.0
	기소중지		2	5.9	5	1.5
	기타		1	2.9	0	0.0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4	11.8	3	0.9
타관송치			5	14.7	62	18.3
보완수사			0	0.0	74	21.9

※ 자료출처 : 대검찰청,「검찰연감」, 각 연도.

주 : 1) 기소중지 등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중지가 포함됨.

2) 소년보호사건 송치등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 법정송치가 포함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김 지 선

제5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제1절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1. 선고유형과 징역형량

N번방 방지 대책의 핵심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은 처벌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기존에 처벌되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처벌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은 디지털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이는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일반 대중의 법 감정과 입법자의 의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구현된다.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법정형과 비교하여 절대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전 양형 실태와 비교하여 상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양형은 구체적인 범죄 사안에서 가벌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가중 및 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양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법정형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대한 처벌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법정형 상향에 계속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제도의 변화가 법관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양형 실태와의 비교를 통한 점진적 변화의 과정을 평가하는 상대적 관점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양형의 변화를 이전 양형 실태 및 법정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실태 분석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12년 12월의 성폭력 관련 대대적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면 거의 자동으로 부과되던 취업제한이 2013년 8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후,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1월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확대되어 2018년 7월 17일부터 재개되었다(안성훈 외, 2022). 2020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거의 모든 기존 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형벌 및 보안 처분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장 제2절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 판결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구성하였다. 법원 판결 및 결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범연감]은 형법의 각 장 및 절과 특별법에 따라 범죄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포함된 디지털성범죄 각 유형별로 법원 판결 현황과 추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첫 번째 자료는 N번방 방지 대책 이전의 법원 판결 추이를 비교적 긴 시간 프레임으로 검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센터에 등록된 성범죄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판결문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연구 목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고, 범죄 유형 및 주요 판결 사항에 관한 자료를 2020년 본 연구원에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에 포함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된 케이스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두 번째 자료는 2017년과 2021년 2개 년도에 1심에서 디지털성범죄로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자료이다. 이는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가 2019년까지의 대상자만 포함하고 있고, 판결문 첫 장에 기록된 죄명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성범죄 각 조항별 범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N번방 이후 법원 판결 현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절에서는 N번방 방지 대책 전후의 법원 판결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편집·반포)와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는 이전부터 처벌 대상이었지만 연도별 추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2020년 이전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N번방 방지 대책이 주로 디지털성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 등), 제2항(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등), 제3항(성착취물 반포), 제4항(아동·청소년 알선)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항(촬영물 등 반포), 제3항(영리목적의 촬영물등 유포)에 해당하는 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1년의 법원 판결 추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미 연령에 의해 범죄유형이 구분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외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 연령에 따라 성인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구분한 통계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가. 선고유형

선고유형은 징역형(무기징역 포함),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 그리고 선고유예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벌금형 비율이 명확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2013년 75.0%에

서 2018년 49.1%로), 전체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벌금형 비율이 41.5%로 하락하였고, 2021년에는 16.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집행유예는 2013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50.3%)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5.7%에서 2021년 32.3%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N번방 방지 대책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018년까지는 벌금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불법촬영에 대한 대책 강화 및 법정형 상향 조정 이후인 2019년에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019년까지 성인 피해자보다 높은 벌금형 비율을 유지하다가 2020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된 이후인 2021년에는 징역형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징역형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2016년까지는 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부터 벌금형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50.6%로 가장 높았다. N번방 방지 대책 시행 이후인 2021년에는 집행유예(50.0%)가 징역형(48.3%)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높은 편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벌금형 비율은 2016년까지 최저 30.8%에서 최고 72.1%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도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3~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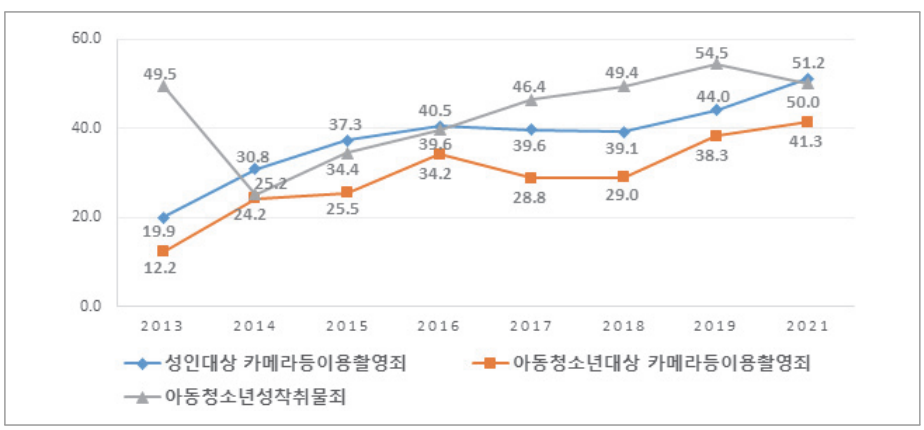
(단위 : 명, %)

범죄유형		선고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전체 피해자	N	452	1,349	1,635	1,880	2,313	2,676	2,585	747
		징 역	8.4	11.4	13.6	17.6	14.2	14.8	15.7	32.3
		집행유예	16.6	28.4	32.5	37.8	35.1	35.4	41.5	50.3
		벌 금	75.0	60.2	53.8	44.6	50.6	49.1	41.5	16.6
		선고유예	0.0	0.0	0.1	0.1	0.0	0.7	1.2	0.8
	성인 피해자	N	256	861	976	1,085	1,355	1,685	1,466	461
		징 역	6.6	12.0	14.0	19.0	14.7	15.0	16.8	29.7
		집행유예	19.9	30.8	37.3	40.5	39.6	39.1	44.0	51.2
		벌 금	73.4	57.3	48.7	40.5	45.7	45.2	38.0	18.0
		선고유예	0.0	0.0	0.0	0.1	0.1	0.7	1.2	1.1
	아동 청소년 피해자	N	196	488	659	795	958	991	1,119	63
		징 역	10.7	10.5	12.9	15.6	13.6	14.4	14.2	50.8
		집행유예	12.2	24.2	25.5	34.2	28.8	29.0	38.3	41.3
		벌 금	77.0	65.4	61.5	50.2	57.6	55.8	46.2	7.9
		선고유예	0.0	0.0	0.2	0.0	0.0	0.8	1.3	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N	198	147	96	91	97	79	143	298
		징 역	4.0	2.7	24.0	29.7	47.4	50.6	44.1	48,3
		집행유예	49.5	25.2	34.4	39.6	46.4	49.4	54.5	50.0
		벌 금	46.5	72.1	41.7	30.8	6.2	0.0	0.0	1.3
		선고유예	0.0	0.0	0.0	0.0	0.0	0.0	1.4	0.3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연령 구분 시 미상은 제외하고 분석함.

** 2013년~2019년은 신상정보등록센터 자료를 활용하였고, 2021년은 2021년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로 1심이 선고된 판결문 자료를 활용함.

[그림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 추이(2013~2021년)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이 감소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정형 강화와 국민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도 징역형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높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촬영 및 제작, 유포, 소지·구매 등 다양한 행위 유형별로 죄책의 정도가 다르므로, 판결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로 법원의 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5-2]와 같다. 2018년과 2020년에 걸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 한 해 동안의 1심 선고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특별법 제14조)를 살펴보면, 촬영(제14조 제1항)은 2017년 벌금형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집행유예가 51.2%로 가장 높고, 징역형도 17.5%에서 31.0%로 상승하였다.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는 2017년 집행유예가 6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 대비 17.5%p 감소하였고, 대신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017년에는 집행유예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징역형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 반면, 성인 피해자의 경우 2021년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7년과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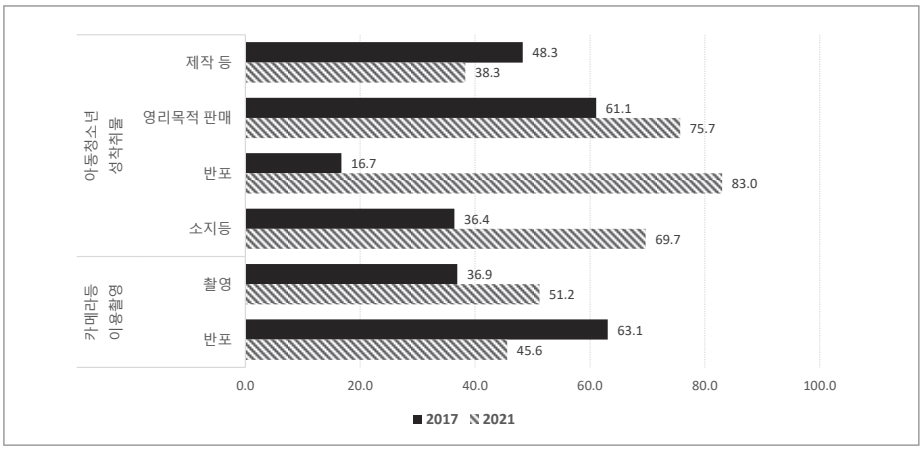
(단위 : 명(%))

범죄유형			연도	N	선고유형(%)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전체		2017	1,184	210(17.7)	454(38.3)	478(40.4)	42(3.5)
			2021	761	243(31.9)	384(50.5)	128(16.8)	6(0.8)
	죄명	촬영	2017	1,117	195(17.5)	412(36.9)	469(42.0)	41(3.7)
			2021	639	198(31.0)	327(51.2)	110(17.2)	4(0.6)
		반포	2017	65	15(23.1)	41(63.1)	8(12.3)	1(1.5)
			2021	103	40(38.8)	47(45.6)	14(13.6)	2(1.9)
		영리목적 유포	2017	2	0(0.0)	1(50.0)	1(50.0)	0(0.0)
			2021	5	3(60.0)	2(40.0)	0(0.0)	0(0.0)
	피해자 연령	아동·청소년	2017	127	45(35.4)	47(37.0)	34(26.8)	1(0.8)
			2021	63	32(50.8)	26(41.3)	5(7.9)	0(0.0)

범죄유형			연도	N	선고유형(%)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성인	2017	693	130(18.8)	288(41.6)	262(37.8)	13(1.9)
			2021	461	137(29.7)	236(51.2)	83(18.0)	5(1.1)
		연령 미상	2017	364	35(9.6)	119(32.7)	182(50.0)	28(7.7)
			2021	222	72(32.4)	113(50.9)	36(16.2)	1(0.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2017	64	26(40.6)	30(46.9)	7(10.9)	1(1.6)
			2021	668	167(25.0)	407(60.9)	88(13.2)	6(0.9)
	제작등		2017	29	14(48.3)	14(48.3)	1(3.4)	0(0.0)
			2021	214	131(61.2)	82(38.3)	1(0.5)	0(0.0)
	영리목적판매		2017	18	7(38.9)	11(61.1)	0(0.0)	0(0.0)
			2021	37	9(24.3)	28(75.7)	0(0.0)	0(0.0)
	반포		2017	6	1(16.7)	1(16.7)	3(50.0)	1(16.7)
			2021	47	4(8.5)	39(83.0)	3(6.4)	1(2.1)
	소지등		2017	11	4(36.4)	4(36.4)	3(27.3)	0(0.0)
			2021	370	23(6.2)	258(69.7)	84(22.7)	5(1.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제작(제11조 제1항)과 영리목적판매(제11조 제2항)는 2017년과 2021년 모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제작(제11조 제1항)은 두 기간 모두 징역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징역형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영리목적판매(제11조 제2항)는 두 기간 모두에서 집행유예가 징역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반포(제11조 제3항)와 소지(제11조 제5항)는 2017년에는 벌금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1년에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소지(제11조 제5항)는 2017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36.4%로 같았으며, 벌금형도 22.7%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집행유예가 6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2017년과 2021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 대비 2021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매자(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를 적극적으로 검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강화된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과거에는 기소되지 않았던 소지·구매 사건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7년에 재판에 회부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매자가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17.2%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55.4%까지 증가하였다.[182]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및 반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2항)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법관의 유포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포/판매 및 소지/구매는 디지털성범죄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법정형 상향과 적극적인 단속 및 검거, 그리고 높아진 기소율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해 보다 강력한 양형이 필요하다.

이와 대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전보다 더 엄격한 양형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주를 이루며 징역형 비율이 매우

182) [표 5-2]는 2017년과 2021년 선고유형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020년 신설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소지(제5항)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1년 제14조 제5항의 소지죄로 판결을 받은 14명 중 57.1%가 집행유예, 28.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낮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2021년에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고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주된 선고유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 상향 조정이 실제 양형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점진적인 인식 변화와 강화된 법적 대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법원 판결 추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징역형량

최근 9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디지털성범죄자의 징역형량 추이는 [표 5-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3년은 '10년 미만'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미만'의 징역형량이 20~3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2년 미만'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년 미만'이 24.9%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징역형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 31개월에서 최고 41개월 사이를 오르내렸으나, 2019년과 2021년에는 각각 31.2개월과 32.2개월로 이전보다 하락했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평균 징역형량이 항상 더 높았으며,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 모두 2020년 이후 평균 징역형량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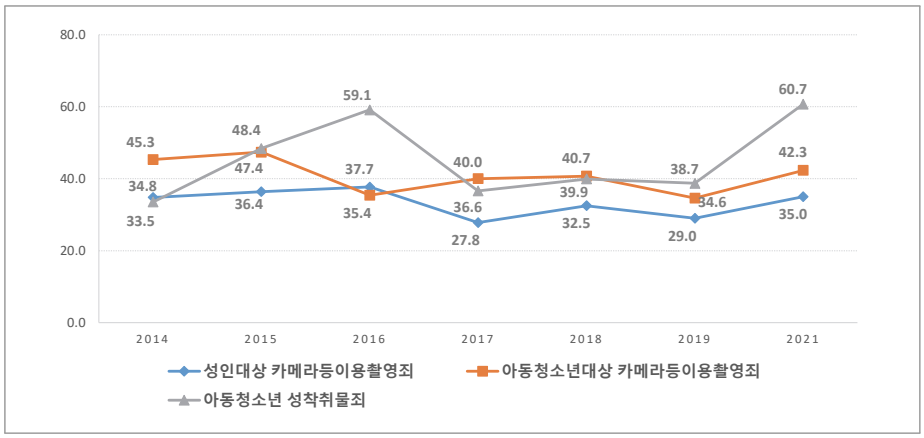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수가 10건 미만인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살펴볼 때, 2015년과 2016년에는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5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3년 미만'이 28.6%로 가장 높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의 80.9%가 5년 미만의 형을 받았다. 2021년에는 '5년 미만'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7.1%가 3년 이상의 형을 받아 큰 변화가 있었다. 평균형량은 2016년에 59.1개월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36.6개월까지 감소하였다가,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에는 60.7개월로 급증하였고, 최근 9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5-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 추이(2013~2021년)

(단위 : 명, %)

범죄유형		징역형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N	38	154	221	330	328	392	406	241
		1년 미만	13.2	30.5	23.5	33.0	34.8	28.8	31.0	24.5
		2년 미만	7.9	14.9	18.1	18.8	20.7	24.7	29.1	29.9
		3년 미만	5.3	12.3	17.6	12.1	10.1	12.2	15.0	12.0
		5년 미만	18.4	24.0	19.0	17.3	18.9	15.3	11.6	24.9
		10년 미만	39.5	9.7	14.9	9.4	8.5	11.5	7.4	5.0
		10년 이상	15.8	8.4	6.8	9.4	7.0	7.4	5.9	3.7
		평균형량(월)	69.3	38.3	40.6	36.8	32.6	35.5	31.2	32.2
	성인 피해자	N	17	103	137	206	198	251	247	137
		1년 미만	23.5	35.0	24.1	35.0	34.3	32.3	30.8	28.5
		2년 미만	17.6	16.5	20.4	18.4	24.7	24.3	29.1	29.9
		3년 미만	0.0	8.7	15.3	11.2	10.1	10.0	16.6	10.9
		5년 미만	5.9	24.3	23.4	16.0	20.2	17.9	10.9	19.0
		10년 미만	47.1	7.8	11.7	9.7	5.6	9.6	7.3	5.8
		10년 이상	5.9	7.8	5.1	9.7	5.1	6.0	5.3	5.8
		평균형량(월)	50.7	34.8	36.4	37.7	27.8	32.5	29.0	35.0
	아동 청소년 피해자	N	21	51	84	124	130	141	159	32
		1년 미만	4.8	21.6	22.6	29.8	35.4	22.7	31.4	9.4
		2년 미만	0.0	11.8	14.3	19.4	14.6	25.5	28.9	18.8
		3년 미만	9.5	19.6	21.4	13.7	10.0	16.3	12.6	12.5
		5년 미만	28.6	23.5	11.9	19.4	16.9	10.6	12.6	43.8
		10년 미만	33.3	13.7	20.2	8.9	13.1	14.9	7.5	12.5
		10년 이상	23.8	9.8	9.5	8.9	10.0	9.9	6.9	3.1
		평균형량(월)	84.4	45.3	47.4	35.4	40.0	40.7	34.6	42.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N	8	4	23	27	46	40	63	144
		1년 미만	50.0	25.0	8.7	3.7	15.2	7.5	9.5	2.1
		2년 미만	12.5	25.0	8.7	7.4	19.6	25.0	22.2	5.6
		3년 미만	12.5	25.0	34.8	29.6	21.7	22.5	28.6	15.3
		5년 미만	12.5	0.0	26.1	25.9	26.1	27.5	20.6	52.8
		10년 미만	12.5	25.0	13.0	11.1	13.0	12.5	12.7	16.7
		10년 이상	0.0	0.0	8.7	22.2	4.3	5.0	6.3	7.6
		평균형량(월)	20.8	33.5	48.4	59.1	36.6	39.9	38.7	60.7

[그림 5-3] 디지털성범죄 평균 징역형량 추이(2014~2021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이루어진 개정으로 모든 범죄 유형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징역형량은 201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2021년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에 비해 상당히 길어졌고(38.7개월에서 60.7개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평균 형량보다 2배 이상 길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60.7개월로, 법정형 하한(징역 5년 이상)에 머물렀다.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약 8명(80.9%)은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5년 미만'의 형을 받았다. 이는 분석대상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5항) 범죄가 제외되어 있고, 2020년 6월 2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목적 판매(제11조 제2항) 및 배포(제11조 제3항)의 법정형 하한이 각각 5년 이상과 3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2017년과 2021년 판결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 세부 유형별로 징역형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와 같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 2017년 32.8%가 '1년 미만'의 형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2년 미만'을 받은 범죄자가 30.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평균 징역형량은 36.7개월에서 33.2개월로 감소했다.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에서는 2017년 '1년 미만'이 46.7%

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평균 징역형량이 19.2개월에서 25.9개월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경우, 2017년에는 57.1%가 '3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에는 '5년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78.7%가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았다. 평균 징역형량은 2017년 48.9개월에서 2021년 63.1개월로 증가했다.

[표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 추이(2017년과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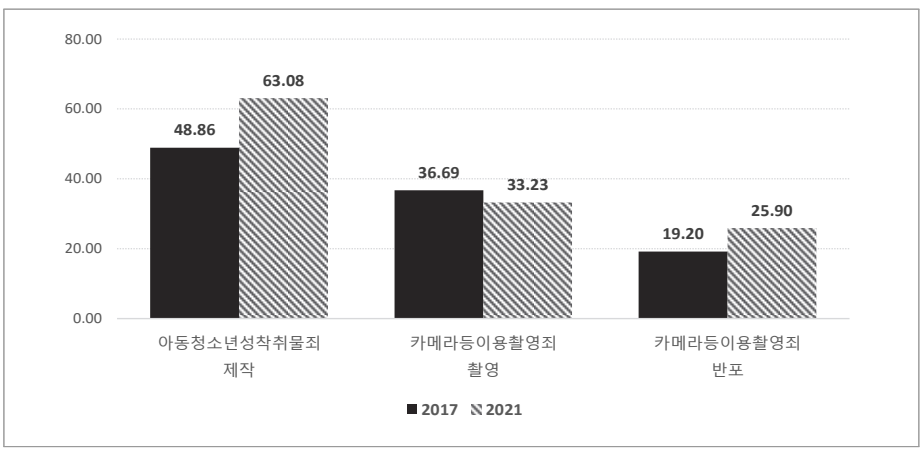
(단위 : 명(%), 개월)

범죄유형			연도	계 (N)	선고형량(%)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중간값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2017	210	71 (33.8)	36 (17.1)	23 (11.0)	56 (26.7)	12 (5.7)	12 (5.7)	35.4	18.0
			2021	241	59 (24.5)	72 (29.9)	29 (12.0)	60 (24.9)	12 (5.0)	9 (3.7)	32.2	18.0
	죄명	촬영	2017	195	64 (32.8)	33 (16.9)	21 (10.8)	54 (27.7)	11 (5.6)	12 (6.2)	36.7	24.0
			2021	198	49 (24.7)	61 (30.8)	22 (11.1)	46 (23.2)	11 (5.6)	9 (4.5)	33.2	18.0
		반포	2017	15	7 (46.7)	3 (20.0)	2 (13.3)	2 (13.3)	1 (6.7)	0 (0.0)	19.2	12.0
			2021	40	10 (25.0)	11 (27.5)	7 (17.5)	11 (27.5)	1 (2.5)	0 (0.0)	25.9	19.0
		영리 목적 유포	2017	-	-	-	-	-	-	-	-	-
			2021	3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45.3	48.0
	피해자 연령	성인	2017	130	49 (37.7)	22 (16.9)	11 (8.5)	33 (25.4)	8 (6.2)	7 (5.4)	35.4	16.0
			2021	137	39 (28.5)	41 (29.9)	15 (10.9)	26 (19.0)	8 (5.8)	8 (5.8)	35.0	18.0
		아동·청소년	2017	45	6 (13.3)	5 (11.1)	7 (15.6)	19 (42.2)	3 (6.7)	5 (11.1)	49.8	36.0
			2021	32	3 (9.4)	6 (18.8)	4 (12.5)	14 (43.8)	4 (12.5)	1 (3.1)	42.3	39.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2017	26	5 (19.2)	4 (15.4)	10 (38.5)	6 (23.1)	0 (0.0)	1 (3.8)	33.5	30.0
			2021	167	9 (5.4)	19 (11.4)	27 (16.2)	77 (46.1)	24 (14.4)	11 (6.6)	54.7	42.0
	제작		2017	14	0 (0.0)	0 (0.0)	8 (57.1)	5 (35.7)	0 (0.0)	1 (7.1)	48.9	30.0
			2021	131	2 (1.5)	4 (3.1)	22 (16.8)	69 (52.7)	23 (17.6)	11 (8.4)	63.1	48.0

범죄유형		연도	계 (N)	선고형량(%)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중간값
	영리 목적 판매	2017	7	3 (42.9)	2 (28.6)	1 (14.3)	1 (14.3)	0 (0.0)	0 (0.0)	17.1	18.0
		2021	9	0 (0.0)	2 (22.2)	0 (0.0)	6 (66.7)	1 (11.1)	0 (0.0)	43.7	48.0
	반포	2017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2.0	12.0
		2021	4	1 (25.0)	2 (50.0)	0 (0.0)	1 (25.0)	0 (0.0)	0 (0.0)	22.0	17.0
	소지등	2017	4	2 (5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14.0	13.0
		2021	23	6 (26.1)	11 (47.8)	5 (21.7)	1 (4.3)	0 (0.0)	0 (0.0)	17.1	18.0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의 평균 징역형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균 징역형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징역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상향 조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의 평균 징역형량은 약 33개월로, 법정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 상향은 선고유형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평균 징역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2017년과 2021년)



2. 보안처분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2020년 4월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일환으로, 법정형 상향과 함께 보안처분의 확대 적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2020년 11월 20일 시행)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11월부터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는 이전에는 등록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범죄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이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으로 변경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성범죄로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등록제도와는 다르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다. 이에 따라, N번방 사건 전후로 이루어진 이 두 유형의 보안처분 부과 현황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화된 처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 개정 전과 후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 정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판결 시 자동으로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으므로 별도의 통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 법률 개정 이후부터는 취업제한이 신상정보등록센터의 별도 입력항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래의 [표 5-5]에는 2018년 이전의 취업제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2018년의 10.8%에서 2021년에는 55.2%로 급증하였다. 이 증가 추세는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일어나지만,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2021년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도,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 범죄자의 비율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비율이 낮았으나, 2021년에는 이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표 5-5] 디지털성범죄자 취업제한 부과율 추이(2018~2021년)

(단위 : 명, %)

범죄유형		구분	2018	2019	2021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N	2,676	2,585	732
		부과율	10.8	43.6	55.2
	성인 피해자	N	1,685	1,466	226
		부과율	12.2	45.0	49.7
	아동·청소년 피해자	N	991	1,119	63
		부과율	8.4	41.7	7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N	79	143	292
		부과율	6.3	21.7	79.5

이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명령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비율은 2013년의 7.1%에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이 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6%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2021년의 신상정보공개 비율은 9.5%로, 2019년에 비해 5.6%p 증가했다.

[표 5-6] 디지털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 추이(2013~2021년)

(단위 : 명, %)

범죄유형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전체	N	452	1,349	1,635	1,880	2,313	2,676	2,585	732
		부과율	7.1	5.3	5.4	4.8	2.6	3.3	3.6	4.6
	성인 피해자	N	256	861	976	1,085	1,355	1,685	1,466	461
		부과율	4.7	4.4	4.8	5.1	2.4	2.6	3.3	3.9
	아동·청소년 피해자	N	196	488	659	795	958	991	1,119	63
		부과율	10.2	6.8	6.4	4.4	2.7	4.4	3.9	9.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N	198	147	96	91	97	79	143	292
		부과율	2.0	0.7	15.6	13.2	5.2	11.4	10.5	5.1

2020년 법 개정 전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13세 미만 대상의 범죄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법원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다. [표 5-6]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비율은

2019년 이전에 최대 15.6%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가 종종 성폭력범죄와 함께 발생하여, 경합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신상정보공개 명령 비율이 이전보다 낮은 5.1%로 나타난 것은, 기소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중에 제작 범죄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소지 및 배포 범죄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의 세부유형별로 2017년과 2021년의 보안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7]에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취업제한명령 부과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2021년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명령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범죄의 취업제한 명령 비율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영리목적 판매(제11조 제2항, 62.2%), 배포(제11조 제3항, 61.7%)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비율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처음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는 제작 범죄자의 6.7%, 배포 범죄자의 2.1%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중에서는 2.3%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명령 비율은 아주 조금 낮아졌다(3.0%→2.9%). 행위유형별로는 제작(제11조 제1항, 6.7%) 및 촬영(제14조 제1항, 5.1%) 범죄에 비해 유포(제11조 제3항 2.1%, 제14조 제2항 1.9%)나 판매(제11조 제2항 0%), 촬영물의 영리목적유포(제14조 제3항 0%)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5-7]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보안처분 부과비율 추이(2017년과 2021년)

(단위 : 명, %)

구분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2021		2017		2021	
			N	부과율	N	부과율	N	부과율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404	55.2	35	3.0	34	2.9
	죄명	촬영	352	56.4	33	3.0	32	5.1
		반포	49	47.6	2	3.1	2	1.9
		영리목적유포	3	60.0	-	-	-	-

구분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2021		2017		2021	
			N	부과율	N	부과율	N	부과율
	피해자 연령	성인	229	49.7	21	3.0	18	3.9
		아동·청소년	46	73.0	9	7.1	6	9.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328	49.5	–	–	15	2.3
	제작		180	86.5	–	–	14	6.7
	영리목적판매		23	62.2	–	–	–	–
	반포		29	61.7	–	–	1	2.1
	소지		96	25.9	–	–	–	–

* 2017년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았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널리 사용되는 보안처분이다. 벌금형을 주로 받는 디지털성범죄자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성범죄자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었다. 접촉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비율은 2013년에 60%를 넘었지만(김지선 외, 2020), 2014년에는 26.5%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4.5%로 2014년 대비 약 1/6 수준으로 더 줄어들었다(김지선 외, 202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명령의 증가 추세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접촉 성폭력범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보안처분임을 고려하면, 디지털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이 연구는 2021년 1월에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가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디지털성범죄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했다.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앞부분 숫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접수된 연도를 나타내므로, 연구 초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판결문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반기에 선고된 사건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누적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5월이나 6월에 선고된 사건 중 양형기준 미적용 사유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다수 포함되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법관이 양형기준 미적용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판결문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건이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양형기준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첫 기일까지 대략 23개월, 첫 기일 후 선고까지 약 34주가 소요되는 점과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경우 장기 재판이 필요함에도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판결문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6개월 후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사건으로 조정했다.

판결문 수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L업체의 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판결문 검색은 판결문 첫 페이지에 있는 사건번호 다음에 나오는 디지털성범죄 죄명을 키워드로 설정했으며, 어떠한 죄명에라도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된 경우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판결문의 내용 분석 과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공소기각 사건을 제외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된 판결문은 총 1,210건이었다.

1.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 비율과 사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의 실제 적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인 디지털성범죄 판결문 중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가 있는 판결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는 대략적으로 10가지가 있다(양형위원회, 2022). ⅰ) 공소기각사건이나 무죄사건, ⅱ) 미수범사건,[183] ⅲ) 상상적 경합사건, ⅳ) 소년사건, ⅴ)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인정된

183) 미수범 사건은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살인범죄군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양형위원회, 2022).

죄명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 vi)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 vi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vii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ix)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나 그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x) 선고유예 사건 등이다.

일부 판결문에서는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를 상세히 밝혔지만,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양형기준 비적용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미수범 혹은 미수범 감경, 소년범 감경, 상상적 경합관계 등)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판결사건이 양형기준 비적용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기소일자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판결문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포함했으나, 판결문에 기소일자가 없는 한 해당 사건이 양형기준제 도입 전에 기소된 사건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분석 전에 무죄 및 공소기각 사건을 제외했기 때문에, 분석이 완료된 판결문 중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는 미수범, 상상적 경합사건, 선고유예 사건, 소년사건, 벌금형 선택사건, 정식재판 청구사건("고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양형기준 적용 이전 사건(2021년 이전 공소 제기된 사건), 기소죄명 변경사건, 방조사건 등 총 10가지에 해당한다.

[표 5-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 비적용 대상 여부

(단위 : 명, %)

범죄유형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여부		
			계	비적용	적용
디지털성범죄 전체			1,210 (100.0)	214 (17.7)	996 (82.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466	25.1	74.9
	1유형	제작, 수입, 수출	169	38.5	61.5
	2유형	영리목적판매, 배포 등	28	32.1	67.9
	3유형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등	29	41.4	58.6
	5유형	구입, 소지, 시청	240	12.9	87.1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566	14.0	86.0
	1유형	불법촬영	461	13.4	86.6
	2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반포, 판매 등	89	16.9	83.1
	3유형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3	33.3	66.7
	4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13	7.7	92.3

범죄유형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여부		
			계	비적용	적용
허위영상물 등 반포	전체		11	18.2	81.8
	1유형	허위영상물등편집등	2	0.0	100.0
	2유형	허위영상물등반포등	7	28.6	71.4
	3유형	영리목적의허위영상물반포 등	2	0.0	100.0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67	9.6	90.4
	1유형	촬영등이용협박	152	7.9	92.1
	2유형	촬영등이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15	26.7	73.3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1,210건의 판결문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은 214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양형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디지털성범죄 판결문에 대해 수행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59.0%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양형위원회, 2021). 이러한 차이는 본 보고서의 분석 자료가 피고인이 공개에 동의한 판결문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조사의 시간 프레임이 2021년 하반기인 점, 2021년에 법원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이후에 선고된 사건 중에 2021년 이전에 공소된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9]에 따르면,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 중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에 기소된 사건과 디지털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가 각각 2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소년범(18.7%), 벌금형 선택사건(13.6%), 미수범(11.2%), 방조범(8.4%)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는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제11조)에서 양형기준 비적용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3항) 및 영리목적판매(제2항)는 방조범, 제작(제1항)은 소년범과 상상적 경합이 주된 비적용 사유였다. 촬영등이용협박강요 범죄에서도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 중 37.5%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양형기준제에서 상상적 경합범죄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

(단위 : 명, %)

범죄유형			양형기준제 비적용 사유								
			계	기소 죄명 변경	미수	방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소년범	양형 기준 설정 이전 기소	형법 37조 후단 경합
디지털성범죄 전체			214	0.9	11.2	8.4	13.6	20.1	18.7	20.1	7.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117	1.7	1.7	13.7	2.6	18.8	29.1	30.8	1.7
	1유형	제작등	65	0.0	3.1	3.1	0.0	30.8	41.5	20.0	1.5
	2유형	영리목적판매등	9	0.0	0.0	55.6	0.0	11.1	11.1	22.2	0.0
	3유형	배포등	12	0.0	0.0	75.0	0.0	0.0	8.3	16.7	0.0
	5유형	구입, 소지, 시청	31	6.5	0.0	0.0	9.7	3.2	16.1	61.3	3.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전체		79	0.0	24.1	1.3	30.4	19.0	5.1	6.3	13.9
	1유형	촬영	62	0.0	29.0	1.6	29.0	17.7	3.2	6.5	12.9
	2유형	반포	15	0.0	6.7	0.0	40.0	26.7	13.3	6.7	6.7
	3유형	영리목적반포	1	0.0	0.0	0.0	0.0	0.0	0.0	0.0	100.0
	4유형	소지등	1	0.0	0.0	0.0	0.0	0.0	0.0	0.0	100.0
허위영상물 등 반포	전체		2	0.0	0.0	0.0	100.0	0.0	0.0	0.0	0.0
	2유형	반포등	2	0.0	0.0	0.0	100.0	0.0	0.0	0.0	0.0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6	0.0	18.8	6.3	0.0	37.5	12.5	12.5	12.5
	1유형	협박	12	0.0	16.7	8.3	0.0	33.3	16.7	8.3	16.7
	2유형	강요	4	0.0	25.0	0.0	0.0	50.0	0.0	25.0	0.0

2. 양형기준제 적용율 :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을 선고하는 법관에게는 권고적인 효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법관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해 양형 할 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양형기준제의 도입 취지는 양형의 균등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립과 양형인자 설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이 표출한 다양한 입장과 관심은 잘못된 디지털성범죄 양형 관행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실제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형기준제가 적용되었거나 준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전년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

준 준수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양형위원회의 공식적인 집계 방식이 있기는 하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공식적 집계 방식은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선고되었으면, 양형기준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이 모수가 되고, 이 중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선고된 사건 비율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1.6%(1,029건 중 840건)이다(양형위원회, 2022). 2021년까지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44개 범죄의 평균 준수율인 92.2%보다는 낮지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도입된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계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법관이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평가원칙을 따라 해당 범죄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도출 과정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양형위원회의 양형분석관이 판결문에 기술된 범죄사실, 법령 적용, 양형이유 등을 분석하여 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를 추출한 뒤, 법관의 선고형량이 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양형위원회, 2022). 이 과정에서 법관이 아닌 양형분석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판결문만으로는 양형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양형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양형기준제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양형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양형기준의 준수율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이재일, 2015; 이재방, 2015; 김혜정·기광도, 2016).

이러한 양형위원회의 집계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구형량과 구형요인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해 법원의 양형실태를 분석하는 대검찰청이나 관련 연구자들은 '양형기준의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 경우만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인 양형기준의 '적용'과 실질적인 '준수'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검찰청(2013)은 양형이유를 양형이유 설시 예[184]에 따라 설시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84) 양형기준 설시 예란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2021고합252의정부지방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내에서 선고형을 내린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양형이유 설시 예를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양형이유를 서술식으로 기재하더라도 권고형량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를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김혜정·기광도, 2016).

본 연구는 후자의 방식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 1심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통적 방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기재하면서 권고형량의 범위를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양형이유 설시 예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부터 선고형이 결정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한 판결문은 거의 대부분이 양형이유에 ⅰ) 처단형의 범위, ⅱ) 양형기준에 따른 범죄유형, ⅲ) 양형인자, ⅳ)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ⅴ) 경합범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ⅵ) 권고형의 형량범위가 처단형을 벗어나는 경우의 조정[185]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자세히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성범죄 판결문이지만, 미수범이나 소년범 등의 사유로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판결문을 제외한 996건의 판결문 중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 판결문은 557건으로, 양형기준 적용률은 55.9%였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에 제시된 대상범죄 및 형종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률을 분석한 결과, 최고 95.7%에서 최저 20.0%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 참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185)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라야 한다. 즉,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그와 달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 또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제시되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집).

[표 5-10]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율

(단위 : 명, %)

범죄유형			양형기준 적용 여부		
			계(N)	미적용	적용
디지털성범죄 전체			996	44.1	55.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349	41.0	59.0
	1유형	제작, 수입, 수출	104	7.7	92.3
	2유형	영리목적판매, 배포 등	19	63.2	36.8
	3유형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등	17	41.2	58.8
	5유형	구입, 소지, 시청	209	55.5	44.5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487	58.1	41.9
	1유형	불법촬영	399	58.6	41.4
	2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반포, 판매 등	74	55.4	44.6
	3유형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2	50.0	50.0
	4유형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12	58.3	41.7
허위영상물 등 반포	전체		9	66.7	33.3
	1유형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2	50.0	50.0
	2유형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5	80.0	20.0
	3유형	영리목적의허위영상물반포 등	2	50.0	50.0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51	4.6	95.4
	1유형	촬영등이용협박	140	4.3	95.7
	2유형	촬영등이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11	9.1	90.9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률이 각 95.7%, 90.0%로 거의 모든 사건의 양형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에는 제작(제11조 제1항)은 양형기준 적용률이 92.3%로 높았으나, 영리목적판매(제11조 제2항)나 반포(제11조 제3항)는 각 36.8%와 58.8%로 제작(제11조 제1항) 범죄와의 격차가 컸다. 한편, 허위영상물반포등(제14조의2)은 4가지 범죄유형 중 양형기준 적용률이 가장 낮았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률은 재판부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독재판부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률은 24.6%인 반면에, 합의재판부는 92.6%로 3배 이상 높았다. 59개 법원별로는 편차가 컸으나, 법원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만큼 전체 사례 수가 크지 않아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59개 법원을 지방법원과 지원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제 적용율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법원 및 재판부 유형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	양형기준제 적용	
			비해당	해당
전체		996	44.1	55.9
법원유형	법원	453	44.4	55.6
	지원	543	43.8	56.2
재판부유형	단독	537	75.4	24.6
	합의	459	7.4	92.6

3. 특별양형인자 확정 및 권고영역 결정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양형기준에 따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판결이 양형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해설집에는 양형기준제도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양형을 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기준제의 도입 취지인 양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양형 과정의 일관성에 의한 결과물(이재방, 2015)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형위원회가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선고가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한균(2014)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이탈은 1) 권고형량 이탈, 2) 양형인자 평가 또는 평가원칙 위반, 3)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 또는 평가원칙 위반으로 나눌 수 있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선고된 경우는 형식적 이탈인 '진정이탈'로, 권고형량 범위 내이나 양형기준의 감경 및 가중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 또는 참작사유 평가원칙에 반해 선고된 경우는 '부진정이탈'로 분류한다. '부진정이탈'은 양형기준의 실질적인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양형인자의 평가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고형량 이탈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권고형량 범위는 권고영역에 따라 달라지며,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고형량 이탈뿐만 아니라, 권고영역이

특별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는지와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평가하려 한다. 또한, 이전 디지털성범죄 양형에서 높은 집행유예 비율이 문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에 따라 선고형량을 결정한 후 3년 미만의 형인 경우에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 특별양형인자의 확정과 내용

특별양형인자는 권고영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고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5-12]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된 4가지 대유형의 특별양형인자는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에서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만이 포함되며, 다른 3가지 대유형에는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설정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3가지 대유형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외 3가지 대유형에는 각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감경인자에 행위인자가 하나씩 추가되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은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허위영상물등반포(제14조의2)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촬영물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는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수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서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이들의 수가 같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양형인자 평가 원칙상 피고인 자신에 관련되는 요소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요소인 행위자/기타인자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되는 행위인자는 가중인자의 수가 감경인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4가지 대유형에 공통적이다.

[표 5-12]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범죄유형	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디지털 성범죄 공통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성착취물	특별	행위자/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카메라등 이용 촬영	특별	행위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일반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	
허위 영상물	특별	행위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범죄유형	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일반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특별	행위	• 협박, 강요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일반	행위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회복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특별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일반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회복	

* 자료출처 : 양형위원회(202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표 5-13]을 보면,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문 중 특별양형인자가 '없음'으로 기재된 경우가 53.3%(29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이 1개(37.9%)였고, 2개와 3개가 기재된 판결은 각 7.9%와 0.9%로 매우 낮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와 소지(제11조 제5항)는 거의 모든 판결문에서 고려된 특별양형인자가 거의 없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제14조) 중 촬영(제14조 제1항, 14.5%), 반포(제14조 제2항, 18.2%), 소지(제14조 제4항, 20.0%)에서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특별양형인자가 두 개 이상 고려된 사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확정 개수

(단위 : 개, %)

대상범죄			N	특별양형인자수			특별가중인자수			특별감경인자수		
				없음	1개	2개 이상	없음	1개	2개	없음	1개	2개
디지털성범죄			557	53.3	37.9	8.8	76.7	19.7	3.6	72.7	25.1	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206	76.7	19.4	3.9	87.9	8.7	3.4	88.3	11.7	0.0
	1유형	제작	96	62.5	30.2	7.3	82.3	11.5	6.3	79.2	20.8	0.0
	2유형	영리목적판매	7	28.6	57.1	14.3	42.9	42.9	14.3	85.7	14.3	0.0
	3유형	배포	10	90.0	10.0	0.0	90.0	10.0	0.0	100.0	0.0	0.0
	5유형	구입, 소지, 시청	93	93.5	6.5	0.0	96.8	3.2	0.0	96.8	3.2	0.0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전체		204	34.3	48.0	17.7	56.4	37.3	6.4	70.1	24.0	5.9
	1유형	촬영	165	33.9	48.5	17.6	57.0	36.4	6.7	69.7	23.6	6.7
	2유형	반포	33	39.4	42.4	18.2	60.6	33.3	6.1	69.7	27.3	3.0

대상범죄			N	특별양형인자수			특별가중인자수			특별감경인자수		
				없음	1개	2개 이상	없음	1개	2개	없음	1개	2개
	3유형	영리목적반포	1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4유형	소지	5	0.0	80.0	20.0	0.0	100.0	0.0	80.0	20.0	0.0
허위 영상물 등 반포	전체		3	0.0	100.0	0.0	33.3	66.7	0.0	66.7	33.3	0.0
	1유형	편집	1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0.0
	2유형	반포	1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0.0
	3유형	영리목적반포	1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0.0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44	47.9	48.6	3.5	90.3	9.7	0.0	54.2	45.8	0.0
	1유형	협박	134	49.3	47.0	3.7	89.6	10.4	0.0	56.0	44.0	0.0
	2유형	강요	10	30.0	70.0	0.0	100.0	0.0	0.0	30.0	70.0	0.0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구분할 때, 특별감경인자(27.3%)가 특별가중인자(23.3%)보다 더 자주 고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의 경우, 감경인자가 가중인자보다 더 많이 고려되었으며, 영리목적 판매(제11조 제2항)에서는 가중인자가 더 크게 고려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특별양형인자의 적용 비율이 높았으며, 감경인자보다 가중인자가 더 자주 고려되었다.

양형 과정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고려되는 비율은 낮았으며, 범죄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양형 과정에서 어떠한 특별양형요인도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기본 영역이 결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선고 형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판결 간 편차가 줄어들게 되어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양형의 일관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양형의 일관성은 양형기준제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 50%의 판결에서 특별양형요인을 확정하지 않는 현상과 범죄유형 간 큰 편차는, 양형기준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특별양형요인의 적용 기준이 엄격하거나 해석상의 여지가 적어서 법관이 특별양형요인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11조 제5항), 촬영물소지(제14조 제4항), 반포(제11조 제3항) 등 특정 범죄유형에서 특별양형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사실은 개별 범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특별양형인자가 양형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디지털성범죄 범죄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특별양형인자는 범죄유형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셋째,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요청으로 특별양형요인의 적용 기준은 엄격해졌으나, 가용한 정보나 증거를 충분히 조사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시간의 제약으로 특별양형요인을 면밀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떠한 사유이든 특별양형요인이 양형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양형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디지털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된 특별양형인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5-14]와 같다. 8.8%의 판결에서 2개 이상의 특별양형인자가 기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총 260개의 판결에서 314개의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디지털성범죄 판결 중 특별양형인자로 가장 많이 고려된 것은 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314개의 특별양형인자 중 34.4%를 차지하였고, 260개 중 41.5%의 판결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되었다. 즉 양형기준이 적용된 디지털성범죄 판결 10개 중 4개 이상에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했다는 의미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인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범죄유형에서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인자인 '불특정 혹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범행'이 전체 특별양형인자의 19.4%, 판결문의 23.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체 특별양형인자의 13.1%, 판결문의 15.8%로 언급되었다.

주요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유형(1유형)에서는 특별감경인자 중 행위인자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40.8%로 가장 높은 비율로 고려되었다. 그다음은 특별가중인자 중 행위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18.4%),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2.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2.2%)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유형)은 특별가중인자 중 행위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32.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특별감경인자 중 행위자/기타인자인 '처벌불원'(24.8%)과 행위인자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13.1%)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처벌불원'이 78.1%로 다른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1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단위 : 건, %)

디지털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기준	전체 디지털 성범죄	범죄유형			
					성착취물 제작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배포	촬영물 이용협박
전체			응답수	314	43	143	26	73
			사례수	260	36	109	20	68
감경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응답%	0.3	0.0	0.0	0.0	0.0
			사례%	0.4	0.0	0.0	0.0	0.0
	행위자/기타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응답%	1.0	0.0	0.0	7.7	1.4
			사례%	1.2	0.0	0.0	10.0	1.5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응답%	13.1	46.5	12.6	0.0	0.0
			사례%	15.8	55.6	16.5	0.0	0.0
		처벌불원*	응답%	34.4	-	23.8	34.6	78.1
			사례%	41.5	-	31.2	45.0	83.8
가중	행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응답%	6.1	14.0	4.9	3.8	0.0
			사례%	7.3	16.7	6.4	5.0	0.0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응답%	5.1	4.7	2.8	11.5	9.6
			사례%	23.5	5.6	3.7	15.0	10.3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혹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응답%	19.4	9.3	35.0	3.8	0.0
			사례%	23.5	11.1	45.9	5.0	0.0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응답%	9.2	7.0	6.3	34.6	5.5
			사례%	11.2	8.3	8.3	45.0	5.9
	행위자/기타	동종누범 (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응답%	4.1	4.7	7.0	0.0	1.4
			사례%	5.0	5.6	9.2	0.0	1.5

* 처벌불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의 경우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함.
** 응답수가 10건 이상인 범죄유형만 제시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의 설계 과정에서, 형량 결정의 범위와 더불어 어떤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통제하고 부당한 양형 관행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의 문제점과 디지털성범죄 판결문 분석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양형인자 및 조건에 부합할 때만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양형인자는 '처벌불원' 혹은 '합의'(백소윤, 2020; 유승희, 2020; 이현숙, 2020; 김영미, 2019;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 2020. 2. 25.; 김한균, 2021), '형사처벌전력 없음'(백소윤, 2020; 유승희, 2020), '진지한 반성'(김혜정, 2020; 유승희, 2020; 신성연이, 2020),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유승희, 2020, 신성연이, 2020; 김혜정, 2020; 김한균, 2021)와 같은 감경인자들이다. 특히, '처벌불원' 또는 '합의'와 같은 양형인자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양형인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처벌불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제외한 다른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주로 고려된 108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처벌불원'이 어떤 맥락과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요인으로 고려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또는 지인 관계였으며, 주로 단일 피해자의 경우였다. 그러나 일부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근거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채택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처벌불원', '피해자의 합의', '상당한 피해회복' 등의 요인들은 일반양형인자로도 널리 인용되었다. 2021년 하반기 1,210건의 판결문 중 388건(32.1%)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언급되었으며, 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557건에서는 12건(2.2%)이었다. 일반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될 때보다 덜 엄격한 기준으로 감경인자로 적용되었다.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로 고려된 388건 중 87건(22.4%)은 다수 피해자 중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형에서 중요하고 자주 인용되는 양형인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 특별양형인자 평가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권고형량의 범위가 결정된다. 디지털성범죄 유별 권고영역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표 5-15]와 같다.

[표 5-15]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범위

대상범죄	형종	조항	법정형	양형기준 형량 범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유형	제작 등	무기징역, 5년↑ 징역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2유형	영리목적판매 등	5년↑ 징역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3유형	배포 등	3년↑ 징역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유형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징역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5유형	구입 등	1년↑ 징역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카메라등 이용촬영	1유형	촬영	7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4월~10월	8월~2년	1년~3년
	2유형	반포 등	7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3유형	영리목적반포 등	3년↑ 징역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유형	소지 등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8월	6월~1년	10월~2년
허위 영상물 등 반포	1유형	편집 등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유형	반포 등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3유형	영리목적반포 등	7년↓ 징역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1유형	협박	1년↑ 징역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2유형	강요	3년↑ 징역	1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 자료출처 : 양형위원회(202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주 : 1)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자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권고영역 결정 시, 양형인자 평가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 차이를 고려하며,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인자는 행위자/기타 인자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처벌불원'이 다른 행위인자의 특별감경요소와 같은 수일 때는 기본영역으로 결정된다.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라 결정된 권고영역의 분포는 [표 5-16]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전체의 56.4%가 기본영역으로 설정되었고, 감경영역은 22.8%, 가중영역은 1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원칙에 따라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7개 판결(1.3%)이 특별감경영역으로, 20개 판결(3.6%)이 특별가중영역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영역의 높은 비율은 양형기준이 적용된 대다수의 판결문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후 양형인자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자/기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다른 행위인자의 가중요소가 함께 있을 때,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원칙도 기본영역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반포(제11조 제3항)와 소지(제11조 제5항)는 그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1유형(촬영)과 2유형(반포등)은 기본영역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37.6%와 48.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신 가중영역의 비율이 각 29.7%와 24.2%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다.

범죄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와 소지(제11조 제5항)의 경우 그 비율이 90% 이상으로 눈에 띄게 높았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1유형(촬영)과 2유형(반포등)의 경우 기본영역 비율이 각각 37.6%와 48.5%로 상대적으로 낮고, 가중영역의 비율이 각각 29.7%와 24.2%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영역 분포

(단위 : 건, %)

범죄유형			권고영역					
			계(N)	특별감경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디지털성범죄 전체			557	1.3	22.8	56.4	16.0	3.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206	0.0	11.2	76.7	8.7	3.4
	1유형	제작	96	0.0	19.8	62.5	11.5	6.3
	2유형	영리목적판매	7	0.0	14.3	28.6	42.9	14.3
	3유형	배포	10	0.0	0.0	90.0	10.0	0.0
	5유형	소지	93	0.0	3.2	93.5	3.2	-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204	3.4	21.1	39.2	29.9	6.4
	1유형	촬영	165	3.6	22.4	37.6	29.7	6.7
	2유형	반포	33	3.0	18.2	48.5	24.2	6.1
	3유형	영리목적유포	1	0.0	0.0	100.0	0.0	0.0
	4유형	소지	5	0.0	0.0	20.0	80.0	0.0
허위영상물 등 반포	전체		3	0.0	33.3	0.0	66.7	0.0
	1유형	편집	1	0.0	100.0	0.0	0.0	0.0
	2유형	반포	1	0.0	0.0	0.0	100.0	0.0
	3유형	영리목적반포	1	0.0	0.0	0.0	100.0	0.0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44	0.0	41.7	52.8	5.6	0.0
	1유형	협박	134	0.0	39.6	54.5	6.0	0.0
	2유형	강요	10	0.0	70.0	30.0	0.0	0.0

4.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과 선고형량의 결정

가. 권고형량 범위 조정과정에서 원칙 준수

특별양형인자 확정 이후,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따라 권고영역이 결정되며, 양형기준에 미리 설정된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경합범의 경우 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법률상의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양형위원회(2022)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결정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양형기준이 적용된 557개 판결문 중 77.4%인 481개에서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이 있었다. 권고형량 조정의 59.2%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이었고, 나머지 40.8%는 처단형과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었다.

[표 5-17] 권고형량의 범위의 조정

(단위 : 명, %)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		전체	기본범죄의 권고영역				
			특별감경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조정 여부	N	557	7	127	314	89	20
	조정하지 않음	22.6	42.9	23.6	21.3	25.8	15.0
	조정	77.4	57.1	72.4	78.7	74.2	85.0
조정 사유	N	431	4	97	247	66	17
	다수범죄 처리	59.2	75.0	51.5	56.3	72.7	88.2
	처단형과 불일치	40.8	25.0	48.5	43.7	27.3	11.8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처단형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처단형의 하한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정숙희, 2013). 이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양형 관행의 문제점인 관대한 양형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조정은 형량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대상 판결문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557개의 판결문 중 권고형량 하한이 처단형보다 높은 경우 처단형에 맞게 조정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었다.

나. 권고형량 이탈율과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 여부

양형기준제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선고형량이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라, 단일범죄에 대해서는 권고된 형량범위 내에서, 경합범죄에 대해서는 단일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산출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결정된다. 최종 선고형을 결정할 때, 일반양형인자뿐만 아니라 특별양형인자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최종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모든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이탈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탈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단,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선고 시 양형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성범죄 판결문에서, 2021년 권고형량 준수율은 81.6%로 나타났다.(양형위원회, 2022) 즉, 10개의 판결 중 8개의 판결은 디지털성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양형기준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례(557건)를 대상으로, 전체 권고형량 준수율과 대상범죄 및 세부유형별 권고형량 준수율, 그리고 형량 이탈 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형량 이탈 사례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을 준수하여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가 기재되었는지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557건의 판결 중,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95건(17.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권고형량 준수율은 82.9%로 조사되었다([표 5-18]). 이 결과는 양형기준의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디지털성범죄 판결문에 대해 양형위원회가 집계한 권고형량 준수율과 유사하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의 첫 해 적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고형량 준수율은 높게 평가될 수 있다.[186]

[표 5-1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형량 준수여부

(단위 : 명, %)

대상 범죄	세부 범죄유형		권고형량 준수여부		
			계(N)	미준수	준수
전체 디지털성범죄			557	17.1	82.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206	34.5	65.5
	1유형	제작	96	45.8	54.2
	2유형	영리목적판매	7	57.1	42.9
	3유형	배포	10	80.0	20.0
	5유형	소지	93	16.1	83.9

186) 권고형량 준수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양형기준제의 체계가 이전의 양형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를 기초로 해 동일한 권고영역에 속하는 범죄들의 70~80% 양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존의 양형실무관행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권고영역 간 형량범위가 중첩되어 있고, 권고형량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준수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비판도 있다(김한균, 2014).

대상 범죄	세부 범죄유형		권고형량 준수여부		
			계(N)	미준수	준수
카메라등 이용촬영	전체		204	7.8	92.2
	1유형	촬영	165	5.5	94.5
	2유형	반포	33	18.2	81.8
	3유형	영리목적유포	1	100.0	0.0
	4유형	소지	5	0.0	100.0
허위영상물 등 반포	전체		3	0.0	100.0
	1유형	편집	1	0.0	100.0
	2유형	반포	1	0.0	100.0
	3유형	영리목적반포	1	0.0	100.0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전체		144	5.6	94.4
	1유형	협박	134	6.0	94.0
	2유형	강요	10	0.0	100.0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세부 유형별 권고형량범위 이탈률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제11조)의 이탈률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이탈률은 7.8%, 촬영물등이용강요협박 범죄의 이탈률은 5.6%로 조사되었다.

판결 수가 10건 이상인 세부 범죄유형을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가 10건 중 8건(8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영리목적 판매(제11조 제2항, 57.1%), 제작(제11조 제1항, 45.8%), 불법촬영물 반포(제14조 제2항, 18.2%), 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1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의 세부 유형 중 권고형량 이탈률이 특히 높았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유포행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반포)에서 권고형량 이탈률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범죄유형 간 권고형량 이탈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권고형량 범위 이탈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는 하향 이탈로 나타났다. 권고형량 범위를 초과한 95건 중 상한을 넘어선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권고영역별로는 기본영역에서 하한 이탈률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감경영역에서의 이탈률이 20.0%로 높게 나타났다. 분충분한 분석 사례가 확보된 아동·청

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과 소지(제11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 촬영(제14조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의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이탈률을 분석했을 때도, 대부분 기본영역에서 권고형량 범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촬영물등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은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범위 이탈률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보다는 법원이 단독재판부보다는 합의재판부의 판결에서 권고형량 범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9] 법원 및 재판부 유형과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준수율

(단위 : 명, %)

구분		권고형량 준수여부		
		계	미준수	준수
전체		557	17.1	82.9
권고영역별	특별감경	3	0.0	100.0
	감경	30	20.0	80.0
	기본	67	37.3	62.7
	가중	23	8.7	91.3
	특별가중	3	0.0	100.0
법원유형	법원	252	21.0	79.0
	지원	305	13.8	86.2
재판부유형	단독	132	9.1	90.9
	합의	425	19.5	80.5

본 연구에서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향 이탈이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향 이탈한 판결 중에서 권고형량의 하한이 집행유예 결정이 불가능한 3년 이상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량이 3년 미만으로 조정된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권고형량 범위 하향이탈 판결 94건 중 51건[187]이 권고형량 하한이 집행유예 결정에 적합하지 않은 3년 이상이었으며, 이 중 20건에서 권고형량을 벗어나 선고형량이 3년 이하로 조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이탈 비율 21.3%). 추가적으로, 3건의 판결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분석은 권고형량 범위의 이탈이 선고형량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가능하게

187) 51건 모두 권고형량 하한이 4년 이상이었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양형기준제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양형 연구자들에 따르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문제점, 특히 양형기준에 포함된 양형인자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김혜정, 2016; 김한균, 2017).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권고형량 하향 이탈 사례 93건 모두에서 양형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최근 거의 모든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서술적으로 기재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일 뿐, 권고형량 이탈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향 이탈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 제시 방식은 권고형량 하한 이탈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힌 후 그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과, 권고형량 하한 이탈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유만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 첫 번째 판결문이 첫 번째 방식의 예시이며, 권고형량 이탈 판결문의 66.7%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33.3%의 판결문은 두 번째 예시 판결문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5-20] 권고형량의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2021고합1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자신

의 노예라 칭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포즈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성적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향후 겪을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실제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표 5-21]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2021고합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각주4〉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권고형량 이탈에 대해 두 가지 양형이유 기재방식이 있지만, 권고형량을 이탈하였다는 명시적인 기재여부의 차이 이외에는 모두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나 일반감경인자(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유포하지 않음 등)를 제시하고 있어, 양형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도출되었을 것인데, 왜 선고형량이 그 범위를 이탈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 권고형량 범위 내 선고형량의 분포 실태

위에서는 17.1%의 판결이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했으며, 대부분 하향 이탈임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권고형량을 준수한 판결의 분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통계 분석을 위해 선택된 4가지 세부 범죄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권고영역 하한형량과 선고형량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선고형량이 권고영역 하한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감경, 기본, 가중 영역에서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영역의 61.1%, 기본 영역의 47.6%가 권고형량 하한과 동일했다. 성착취물소지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 73.6%, 가중 영역에서는 100%가 선고형량이 권고형량의 하한과 일치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는 기본 영역의 46.3%, 가중 영역의 39.6%에서 선고형량이 권고형량의 하한과 같았다. 촬영물이용협박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 34.6%, 기본 영역에서 39.7%, 가중 영역에서 33.3%가 선고형량과 권고형량 하한이 일치했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이용협박 범죄에 비해 선고형량이 권고형량 하한과 일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설정 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처벌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양형 관행을 지속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론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일부 수정했지만, 권고형량의 범위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다. 선고형량이 비판적인 시각 하에 제정된 디지털성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관대한 양형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해당 양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 5-22] 권고형량 하한과 선고형량의 편차

(단위 : 명, %)

범죄유형	법정형	권고형량범위	권고형량 하한과 선고형량의 편차						전체
			하한과 동일	3개월 이내 차이	4~6 개월 차이	7~12 개월 차이	2년 이내 차이	2년 이상 차이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감경영역 (2년6월~6년)	11 (61.1)	0 (0.0)	4 (22.2)	1 (5.6)	2 (11.1)	0 (0.0)	18 (100.0)
		기본영역 (5년~9년)	10 (47.6)	0 (0.0)	1 (4.8)	3 (14.3)	3 (14.3)	4 (19.0)	21 (100.0)
		가중영역 (7년~13년)	2 (22.2)	0 (0.0)	0 (0.0)	4 (44.4)	0 (0.0)	3 (33.3)	9 (100.0)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감경영역 (6월~1년 4월)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3 (100.0)
		기본영역 (10월~2년)	53 (73.6)	5 (6.9)	7 (9.7)	4 (5.6)	2 (2.8)	1 (1.4)	72 (100.0)
		가중영역 (1년 6월~3년)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카메라등 이용촬영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1 (16.7)	1 (16.7)	2 (33.3)	2 (33.3)	0 (0.0)	0 (0.0)	6 (100.0)
		감경영역 (4월~10월)	4 (11.1)	6 (16.7)	14 (38.9)	9 (25.0)	1 (2.8)	2 (5.6)	36 (100.0)
		기본영역 (8월~2년)	25 (46.3)	6 (11.1)	10 (18.5)	8 (14.8)	3 (5.6)	2 (3.7)	54 (100.0)
		가중영역 (1년~3년)	21 (39.6)	2 (3.8)	15 (28.3)	5 (9.4)	5 (9.4)	5 (9.4)	53 (100.0)
촬영물 이용협박	징역 1년 이상	감경영역 (9월~1년6월)	16 (34.0)	15 (31.9)	12 (25.5)	4 (8.5)	0 (0.0)	0 (0.0)	47 (100.0)
		기본영역 (1년~3년)	29 (39.7)	2 (2.7)	20 (27.4)	15 (20.5)	5 (6.8)	2 (2.7)	73 (100.0)
		가중영역 (2년~4년)	2 (33.3)	0 (0.0)	1 (16.7)	2 (33.3)	1 (16.7)	0 (0.0)	6 (100.0)

*특별가중영역은 가중영역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과 동일하므로 가중영역에 합쳐서 제시함.

제3절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1. 선고형량의 차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법원에서 디지털성범죄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선고형량 분포는 평균 24.3개월이었으나, 중위수는 12개월로 훨씬 낮았고, 왜도와 첨도가 높아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현상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죄 간 법정형과 권고형량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Kolmogorov-Smirnov 검정(0.267, $p < .001$)과 Shapiro-Wilk 검정(0.505, $p < .001$) 결과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유형별 선고형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범죄유형의 중위수를 비교하는 비모수 검증 방법인 Kruskal-Wallis 검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표 5-23] 참조)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검정=304.894, $p < .001$).

[표 5-2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차이

(단위 : 건, 개월)

범죄유형	N	평균 순위
성착취물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	104	775.4
영리목적촬영물유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3항)	2	722.5
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3 제1항)	13	624.9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아청법 제11조 제2항)	19	557.8
성착취물반포(아청법 제11조 제3항)	17	499.1
촬영물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2항)	67	433.2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351	412.3
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3항)	4	330.3
성착취물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	161	248.4
허위영상물편집(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1항)	9	238.7
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2항)	2	117.5

* Kruskal-Wallis test=304.894. $p < .001$

10건 미만의 사건 수를 가진 범죄유형을 제외한 분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의 선고형량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 순으로 높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의 선고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포 범죄가 제작이나 촬영 범죄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지 여부는 관련 범죄의 판결 수가 적어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유형 간의 구체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 검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선고형량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는 대부분의 다른 범죄유형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반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간에 선고형량의 중앙값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선고형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고형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1심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선고형량 차이를 검토하였다([표 5-24] 참조). 디지털성범죄 유형별로 선고형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디지털성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큰 범주의 범죄유형별로 선고형량을 살펴보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매우 커 아래에서는 되도록 세부 범죄유형별로 선고형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범죄유형별 선고형량 분포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와 유사하게 평균이 중위수보다 상당히 높으며, 왜도와 첨도가 높아 비대칭적이고 뾰족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 적용 여부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 독립표본 차이 검증 방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례 수가 매우 적은 촬영물의 영리목적유포(제14조 제3항), 허위영상물(제14조의2)(제1항)에서 제3항(영리목적유포)은 Mann-Whitney U 검증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양형기준이 90% 이상의 판결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과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2항)[188]의

분석결과는 제시하였으나, 결과 해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선고형량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성착취물판매(제11조 제2항)는 U 통계치가 0.0으로 분석대상이 된 사건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된 경우 더 낮은 선고형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 U=11.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U=881.5),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U=10361.0), 촬영물반포(U=385.0)는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선고형량이 달라졌으며, 그 영향의 방향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집단이 미적용 집단에 비해 선고형량이 높았으며, 제14조 제1항은 양형기준 적용 집단이 미적용 집단에 비해 선고형량이 낮았다.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미적용 집단 간의 효과 크기[189]를 검증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은 효과크기의 값이 0.6 이상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꽤 크고, 실제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효과크기가 0.3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범죄유형에 따라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이 모든 범죄유형에서 일관되게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유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선고형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벌 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88)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제11조 제1항)와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2항)의 양형기준 적용율은 각 92.3%와 95.7%로 매우 높았다.

189) Mann-Whitney U 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 크기의 척도 중 하나는 'rank-biserial correlation'이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효과 크기가 작음을 의미한다. 값이 1인 것은 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항상 높은 순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 크기(effect size)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커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0.3이상 이면,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5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본다.

[표 5-2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선고형량의 차이

(단위 : 개월)

범죄유형	평균 순위		U Statistic	P-value	효과크기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적용			
성착취물제작	4.5	48.5	478.5	.243	-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6.5	4	0.0	.000	1.0
성착취물배포	4	5.5	11.0	.015	0.7
성착취물소지	35.5	46	881.5	.000	0.7
촬영	93.5	83	10361.0	.000	0.3
촬영물반포	17.5	17	385.0	.026	0.3
촬영물이용협박	3.5	67	509.0	.244	-

2021년 하반기에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1심 판결 중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고형량, 즉 종속변수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고 양의 정수 형태의 계수자료(count data)이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 선형 모델(GLM) 중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합 여부, 피해자의 연령(아동·청소년 대 성인), 범행의 심각성과 관련된 변인은 판결문에 명시된 양형 이유에 나열된 양형인자들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행위 관련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소로는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다수 또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를 통해 다액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촬영물 등의 내용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양형기준의 영향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례 수가 있는 제11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각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여부와 범죄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모델에 포함시켰다.

[표 5-25]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선고형량의 차이

변수		계수	S.E.	z	P>|z|
양형기준 적용		0.412	0.174	2.363	0.018
범죄심각성 관련 요인	경합범	1.391	0.071	19.612	0.000
	피해자연령(성인)	0.803	0.111	7.225	0.000
	범행수법 불량	-0.139	0.244	-0.568	0.57
	불특정 다수 또는 장기간 반복적 범행	0.307	0.084	3.658	0.000
	동종전과	0.161	0.228	0.707	0.479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0.244	0.08	3.056	0.002
범죄유형	영리목적의성착취물판매	-0.397	0.364	-1.09	0.276
	성착취물배포	-0.150	0.431	-0.348	0.728
	성착취물소지	-1.159	0.257	-4.508	0.000
	촬영	-0.957	0.236	-4.049	0.000
	촬영물반포	-0.886	0.289	-3.066	0.002
	영리목적의유포	0.173	0.743	0.233	0.816
	허위영상물편집	-1.375	0.394	-3.486	0.000
	허위영상물반포	-1.528	0.793	-1.927	0.054
	영리목적의허위영상물유포	-0.715	0.558	-1.281	0.200
	촬영물이용강요	-1.052	0.322	-3.269	0.001
	촬영물이용협박	-1.095	0.172	-6.36	0.000
범죄유형과 양형기준 적용의 상호작용항	양형기준 적용 *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0.557	0.519	1.073	0.283
	양형기준 적용*성착취물배포	-0.199	0.532	-0.373	0.709
	양형기준 적용*성착취물소지	0.147	0.244	0.604	0.546
	양형기준 적용*촬영	-0.154	0.204	-0.758	0.448
	양형기준 적용*촬영물반포	-0.220	0.308	-0.715	0.475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디지털성범죄의 선고형량이 약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양형기준 적용 여부 외에도 경합범, 피해자 연령,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과 같은 통제 변수들이 모두 선고형량에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합범의 경우 단독범에 비해 선고형량이 3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형이 가장 높고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에서 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디지털성

범죄 유형이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준변수로 설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을 제외한 11개 세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 '허위영상물편집'(제14조의2 제1항),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이용강요'(제14조의3 제2항) 등은 기준변수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에 비해 선고형량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편집'(제14조의2 제1항)의 경우, 기준변수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에 비해 선고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한편, 양형기준 적용 여부와 선고형량 간의 영향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이 해당 범죄의 선고형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고형량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다. 선고형량이 3년 이내인 경우, 법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집행유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도입되었으나(이현정, 2014), 양형의 불공정성과 특정 범죄에 대한 법관의 관대한 양형 태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은 집행유예를 그 도입 취지와 달리 법관의 은혜로운 조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단순히 선고형량의 증가가 아니라, 최종 결정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줄이고 실형 중 징역형량을 늘리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적용이 디지털성범죄의 세부 유형별 전체 집행유예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형기준의 절차상 선고형량을 정한 후 선고형량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형량이 3년 이내인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26]은 디지털성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양형기준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된 범죄유형과 사례 수가 10건 내외로 적은 범죄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2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단위 : %)

범죄유형			양형기준 적용여부	집행유예 비율	x^2
디지털성범죄 전체			미적용	73.4	30.71***
			적 용	54.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유형	영리목적판매	미적용	100.0	15.03***
			적 용	14.3	
	3유형	배포	미적용	85.7	N.S.
			적 용	90.0	
	5유형	소지	미적용	94.3	N.S.
			적 용	89.0	
카메라등 이용촬영	1유형	촬영	미적용	68.3	11.16***
			적 용	50.3	
	2유형	반포	미적용	67.6	4.31*
			적 용	42.4	

교차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판매(제11조 제2항)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모든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적용된 경우에는 14.3%만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는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제11조 제3항) 및 소지(제11조 제5항)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은 68.3%에 비해 적용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50.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도 67.6% 대 42.4%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선고형량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고형량이 3년 이내인 판결 중 양형기준 적용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11조)에 포함된 세부 범죄유형인 반포(제3항)와 소지(제5항)에서 양형기준 적용 여부는 집행유예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과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일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의 엄격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7]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단위 : %)

범죄유형			양형기준 적용여부	집행유예 비율	*x*2
디지털성범죄 전체			미적용	78.8	16.33***
			적 용	65.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유형	배포	미적용	85.7	N.S.
			적 용	100.0	
	5유형	소지	미적용	94.3	N.S.
			적 용	90.0	
카메라등 이용촬영	1유형	촬영	미적용	73.4	7.42**
			적 용	58.9	
	2유형	반포	미적용	71.9	4.09*
			적 용	46.7	

양형기준제 도입이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집행유예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양형기준 적용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명시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긍정적인 참작사유와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구분되며, 이는 판결문에 기술된 양형이유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출되었다. 추가적으로, 범죄유형, 일반 양형 과정에서의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 방식으로 고려되는 '경합범 여부' 및 '피해자 연령'도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인 집행유예 여부는 이분형 명목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해당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log likelihood의 p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ox와 Snell의 R2은 0.351, Nagelkerke R2은 0.477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중간 정도로 설명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류 정확도는 전체적으로 78.7%였으며, 이는 징역형의 65.6%에 비해 집행유예의 경우 78.7%로 더 높았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양형기준 적용 여부(B = -0.60, p 〈 .01)는 집행유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범죄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을 기준 변수로 설정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제14조의2 제1항),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

통제변인으로 적용된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회 이상의 전과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감소시켰으며, 긍정적 참작요인으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관계의 분명함은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나, 이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합범 여부라는 중요한 통제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28]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율 차이

변수		B	S.E.	Wald	df	유의확률	Exp(B)
양형기준 적용		-0.60	0.21	8.07	1	.005	0.55
디지털 성범죄 유형	촬영물이용협박	-	-	31.51	11	.001	-
	성착취물제작	0.59	0.67	0.77	1	.380	1.80
	영리목적의성착취물판매	1.55	0.84	3.38	1	.066	4.72
	성착취물배포	2.07	0.48	18.36	1	.000	7.93
	성착취물소지	0.92	0.39	5.51	1	.019	2.52
	촬영	0.51	0.48	1.13	1	.287	1.66
	촬영물반포	1.87	1.84	1.03	1	.309	6.49
	영리목적의유포	2.31	0.95	5.88	1	.015	10.12
	허위영상물편집	-0.85	2.06	0.17	1	.678	0.43

변수		B	S.E.	Wald	df	유의확률	Exp(B)
	허위영상물반포	0.21	1.32	0.03	1	.874	1.23
	영리목적의허위영상물유포	−0.65	0.78	0.69	1	.407	0.52
	촬영물이용강요	0.98	0.43	5.23	1	.022	2.65
경합범		−1.71	0.19	76.80	1	.000	0.18
피해자 연령(성인)		−0.08	0.31	0.07	1	.797	0.92
부정적 참작 사유	범행수법 불량	−0.04	0.62	0.00	1	.949	0.96
	불특정 다수 또는 장기간 반복적 범행	−0.65	0.22	8.94	1	.003	0.52
	동종전과	−0.30	0.56	0.27	1	.601	0.74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0.93	0.20	22.16	1	.000	0.39
	2회 이상 전과	−2.95	0.52	32.10	1	.000	0.05
	진지한 반성 없음	0.49	0.59	0.70	1	.404	1.64
긍정적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0.59	0.19	10.03	1	.002	1.81
	자수, 내부고발 등	0.22	0.28	0.60	1	.438	1.24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9.49	15026.70	0.00	1	.999	290912445.18
	진지한 반성	0.31	0.19	2.52	1	.112	1.36
	처벌불원	1.57	0.23	47.78	1	.000	4.8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0.58	1.49	0.15	1	.697	0.56
	부양가족 있음	−0.19	0.86	0.05	1	.828	0.83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0.76	1.25	0.37	1	.544	0.47
상수항		0.83	0.37	5.14	1	.023	2.30

이 결과는 양형기준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감소함을 나타내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도의 시행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범죄 억제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징역형량 및 편차의 차이

이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유형별로 징역형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형기준 적용 여부가 징역형량 및 징역형량의 편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을 제외한 전체 디지털성범죄 징역형량의 분포는 선고형량

분포와 유사하게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형태를 보여준다. 전체 디지털성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34.8개월로, 중위 징역형량인 18개월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데이터의 왜도가 양의 큰 값으로 나타나,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값보다 큰 값들이 분포에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첨도 값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나, 정규분포에 비해 분포가 더욱 뾰족하고 꼬리가 두터워, 높은 징역형량의 값들이 존재함을 나타낸다.[190]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성범죄 세부유형별 징역형량을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고형량과 마찬가지로 평균순위 비교 방식을 채택하였다([표 5-29] 참조).

분석대상이 된 디지털성범죄 중 사례 수가 10건 이상인 범죄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소지(제11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촬영물등 반포(제14조 제2항), 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이었다. 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의 징역형량(평균순위 = 247.6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촬영물등 이용 협박(제14조의3 제1항), 카메라등이용 촬영(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에서는 촬영(제14조 제1항) 행위가 유포(제14조 제2항) 행위에 비해 더 높은 징역형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표 5-2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의 차이

(단위 : 개월)

범죄유형	N	평균 순위	Kruskal-Wallis 검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70	247.64	82.9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11조 제5항)	14	123.71	
카메라등이용 촬영(제14조 제1항)	141	136.82	
촬영물등 반포(제14조 제2항)	30	123.50	
촬영등 이용 협박(제14조의3 제1항)	63	137.42	

190) Shapiro-Wilk 검정: 통계량: 0.6311 p-value: 2.09×10−262.09×10 −26 D'Agostino's K-squared 정:통계량: 267.92p-value: 6.65×10−596.65×10 −59. 두 검정 모두 매우 낮은 p-value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종속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가 징역형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대상 888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340건(38.3%)이며, 이 중 73.8%(251건)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복잡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징역형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사례 수가 충분한 범죄[191]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미적용 집단 간 징역형량의 기술 통계치를 비교하여 양형기준이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엄격성 및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양형의 엄격성과 일관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통계치는 중심경향성(평균과 중위수), 변동성(평균의 신뢰구간, 분산, 표준편차) 및 분포(왜도, 첨도)에 대한 통계치로 분류된다. 평균과 중위수는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기술 통계치이다. 중위수는 평균에 비해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위수가 평균보다 낮을 경우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의 신뢰구간, 분산, 표준편차는 변동성을 나타낸다.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평균에서 더 넓게 분포한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동일 단위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왜도와 첨도는 데이터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술 통계치이다. 양의 왜도 값을 가진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음의 왜도 값을 가진 데이터는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왜도가 0에 가까울 경우, 데이터는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첨도는 데이터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며, 높은 첨도는 중앙에 데이터가 집중된 분포를, 낮은 첨도는 데이터가 평평하게 분포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통계치를 양형기준제 시행의 효과와 연관하여 해석할 때, 양형기준 미적용 집단에 비해 적용 집단의 평균과 중위수가 높다면 이는 보다 엄격한 양형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신뢰구간이 미적용 집단보다 좁다면, 이는 양형기준이 법원의 재량을 줄이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일관된 범위의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191) [표 5-29]에서 살펴본 5가지 범죄유형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과 촬영물 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대다수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편차와 분산의 해석도 이와 유사하다.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표준편차와 분산이 미적용 집단보다 작다면, 이는 양형기준이 징역형량의 변동성을 줄이고, 징역형량 결정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형기준 미적용 집단보다 적용 집단의 왜도가 적다면, 이는 양형기준이 징역형량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극단적인 이상치가 적음을 의미한다. 양형기준 미적용 집단보다 적용 집단의 첨도가 적다면, 이는 선고형량의 분포가 대칭적이고 중앙값 주변에 더 집중되어 있어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촬영물반포를 제외한 전체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평균 징역형량이 미적용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이 범죄유형들에서의 징역형량 중위수 역시 양형기준 적용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 판결이 미적용 판결에 비해 더 엄격한 양형을 부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징역형량의 평균과 중위수를 비교했을 때, 전체 디지털성범죄 및 세 가지 범죄유형 모두에서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중위수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전체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촬영물등반포에서는 중위수와 평균의 차이가 양형기준 적용 판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처벌이 일부 사례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세 가지 범죄유형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징역형량의 비대칭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평균의 95% 신뢰구간의 범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양형기준 적용 집단이 미적용 집단보다 좁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전체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촬영물등반포범죄의 징역형량 결정에 법관의 재량을 줄이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일관된 범위의 형량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낸다.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는 범죄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간에는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집단에서 분산과 표준편차가 더 컸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특히 두드러졌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 시 징역형량 결정의 일관성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왜도와 첨도에 있어서는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5-30] 디지털성범죄의 징역형량 분포에 관한 기술통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 (제11조 제5항)		카메라등 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촬영물등반포 (제14조 제2항)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평균		34.8	43.9	14.5	25.8	29.8	42.0	26.2	25.1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24.8	38.1	2.5	18.2	19.3	29.9	13.8	15.5
	상한	44.7	49.8	26.5	33.4	40.2	54.1	38.6	34.7
중위수		18.0	30.0	14.0	21.0	14.0	24.0	24.0	18.0
분산		2,245.1	2,212.9	57.0	112.4	1,609.8	3,032.4	339.6	397.1
표준편차		47.4	47.0	7.6	10.6	40.1	55.1	18.4	19.9
최소값		4.0	6.0	6.0	18.0	4.0	6.0	4.0	6.0
최대값		300.0	360.0	24.0	48.0	240.0	360.0	60.0	84.0
왜도		3.5	3.4	0.4	1.2	3.5	3.8	0.5	1.8
첨도		14.5	14.4	0.3	0.6	14.0	16.5	-0.8	3.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11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의 영향을 요약하자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도입으로 인해 징역형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형량의 일관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이 법적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나타낸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은 징역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판결의 일관성과 균등성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양형기준제의 목적이 판결 간 편차를 줄이고 양형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양형기준 적용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설정, 각 권고영역 간의 권고형량 범위와 중첩성의 정도 등 양형기준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촬영물반포(제14조 제2항)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이 징역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변동성은 증가하여 양형의 엄격성 증대나 판결 간 차이 감소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양형기준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양형기준 적용 사건과 미적용 사건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범죄유형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는 비모수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양형기준의 적용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즉 징역형량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양형기준 적용이 판결 간 편차를 줄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동성(분산)의 차이를 검증하는 Levene test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5-31]에 따르면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전체 디지털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평균 및 중위 징역형량이 미적용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형기준이 적용된 집단의 평균 순위(N=251, 평균 순위=183.3)가 미적용 집단(N=69, 평균 순위=134.2)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디지털성범죄 세부 유형별로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미적용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촬영물등반포에서 양형기준 적용이 징역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평균 순위가 미적용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의 수가 적어 검정력 부족이 원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디지털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미적용 집단 간의 징역형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 디지털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r 값[192]은 각각 −0.221과 −0.240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양형기준 적용이 전체 디지털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선고형량에 중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의 시행이 법원의 징역형량을 증가

192) 이 값은 상관계수와 유사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r 값이 0에 가깝다면 효과가 없음을, +1 또는 -1에 가깝다면 강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r 값이 0.1 이하면 작은 효과, 0.3 정도면 중간 정도의 효과, 0.5 이상이면 큰 효과로 해석된다.

시키는 방향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징역형량의 차이

(단위 : 개월)

범죄유형	평균 순위		Mann-Whitney U 값	P-value	효과크기
	미적용	적용			
디지털성범죄 전체	134.2	183.3	7,942.0	0.00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4.0	8.9	6.0	n.s.	-
카메라등이용촬영	59.4	79.3	1,736.0	0.01	-
촬영물반포	16.0	15.2	99.5	n.s.	-

본 연구에서는 또한 양형기준 적용이 판결 간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균등성 및 일관성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evene 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양형기준 적용 및 미적용 판결 간의 선고형량 편차에서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디지털성범죄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징역형량 표준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집단의 징역형량 편차가 더 커졌으나,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형기준제 시행이 판결 간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편차의 차이

(단위 : 개월)

범죄유형	표준편차		편차의 차이	Levene 값	p value
	미적용	적용			
전체 디지털성범죄	47.38	47.04	0.34	0.00	0.9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7.55	10.60	3.05	0.93	0.35
카메라등이용촬영	40.12	55.07	14.94	0.83	0.37
촬영물반포	18.43	19.93	1.50	0.10	0.75

이러한 결과는 양형기준제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판결의 엄격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일부 효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모든 범죄 유형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범죄 유형에서는 양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량의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적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양형기준제 도입의 목적이 판결 간 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양형기준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 시행은 징역형량의 증가 및 판결의 일관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영향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예상과 달리 판결 간 편차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양형기준제의 효과적인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양형기준제의 목표 중 하나가 판결 간의 편차를 줄여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산이나 표준편차의 차이가 없다는 위의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로, 양형기준제가 법관의 판결 간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양형기준 적용과 미적용 판결 간의 일관성에 변화가 없다면, 양형기준제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법관들이 상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형기준제는 이러한 일관성을 공식화하거나 명시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로 판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기존의 판례와 통계분석에 기반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이미 일관된 관행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준 도입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법관들이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암묵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기준제의 도입 이후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적용된 판결과 적용되지 않은 판결 간에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판결문이 전체 판결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중 대다수가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점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넷째, 분석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분산이나 표준편차만으로 양형기준제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판사의 개별적 판단 기준,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석대상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던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제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다음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고려되는 참작사유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 검토하는 부분이다. 먼저, 4가지 주요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에서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된 참작사유의 빈도와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는 양형기준제 설정 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양형인자들이 집행유예 결정, 특히 일반인에게 관대한 양형으로 여겨지는 집행유예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다.

4개의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을 구분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참작사유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표 5-33]에 요약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참작사유만을 제시하였다. 오즈 비율을 기준으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각 분석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인은 집행유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려된 요인들은 긍정적 참작사유로 나타났다. 이는 선고형량이 3년 이내로 결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 권고형량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량을 3년 이내로 조정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유형별로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작사유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19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양형기준 적용 사건은 '진정한 반성'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했으나,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영향력이 인정되는 가운데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고려되었고, '불특정 다수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는 부정적 참작사유로 작용했다. 촬영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 대비 양형기준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참작사유가 고려되었다. 양형기준 적용 사건에서 '처벌불원'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진정한 반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한 긍정적 참작사유였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 없음'은 부정적 참작사유로서 유일하게 고려되었다.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긍정적 참작사유로서 중요했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작았고, '자수', '진지한 반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외에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부양해야 할 가족' 등도 고려되었다. 촬영물 반포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사건에서 '처벌불원'이 가장 중요한 긍정적 참작사유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에서는 '자수 등'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었다.

셋째로, '처벌불원'은 다양한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긍정적 참작사유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서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앞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에서는 '자수 등', '진정한 반성'과 같은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및 중요도 차이

범죄유형	양형기준 적용			양형기준 미적용		
	유의미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계수	odds ratio	유의미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계수	odds ratio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처벌불원	1,179	3.25	형사처벌전력 없음	0.643	1.90
	형사처벌전력 없음	0.676	1.97	처벌불원		1.46
				진지한 반성없음		0.79
아동·	진지한 반성	0.639	1.89	진지한 반성	0.632	1.98

19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집단의 판결수가 매우 적어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유형	양형기준 적용			양형기준 미적용		
	유의미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계수	odds ratio	유의미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계수	odds ratio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형사처벌전력 없음	0.474	1.61
				불특정 다수 또는 장기간 범행	0.409	1.51
카메라등 이용촬영	처벌불원	1.401	4.06	자수, 내부고발 등	0.953	2.59
	진지한 반성	0.636	1.89	진지한 반성	0.807	2.24
	진지한 반성없음	0.551	1.74	처벌불원	0.652	1.92
	자수, 내부고발 등	0.488	1.63	형사처벌전력 없음	0.507	1.66
	형사처벌전력 없음	0.457	1.58	부양해야 할 가족	0.423	1.53
촬영물 반포	처벌불원	0.962	2.62	자수, 내부고발 등	0.721	2.06
	상당한 피해의 회복	0.511	1.67			

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

홍 세 은

제6장

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

제1절 |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운영 현황

1. 지원 체계 및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와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을 비롯하여 경찰, 방심위 등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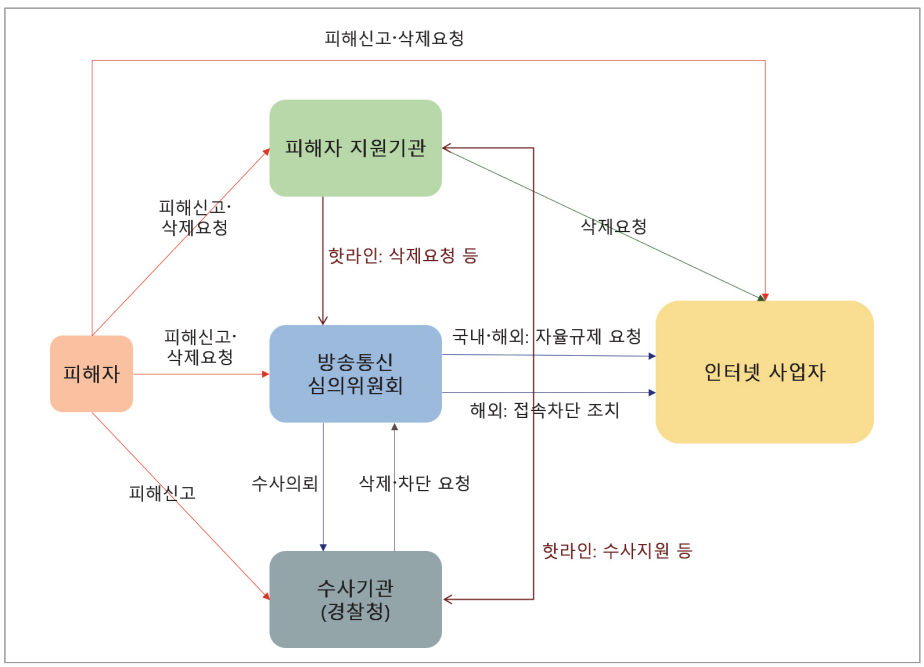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이트 내 또는 연락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기관과 방심위에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즉 삭제요청을 인터넷 사업자 등에 전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194]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을 받아 상담과 삭제지원 등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삭제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중, 중앙정부 즉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2023년 현재 14개 지역 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194) 피해자 지원기관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센터)와 14개 지역 내에서 선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역 특화상담소,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기관(지자체 지원 기관)이 포함된다.

하고 있는 '지역특화상담소'로 구분된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195]

[그림 6-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는 2017년 9월 26일 마련된「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30일, 피해자 지원 기관 중 가장 먼저 개소하였다. 중앙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유포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계지원을 통해 수사·법률·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및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b, 2023:19).

195)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중앙센터의 5개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1〉과 같으며, 2022년의 피해자 수와 지원 건수 모두 2018년에 비해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a, 2023: 37).

[표 6-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년 운영실적(2018~2022년)

기간	피해자 수 (명)	지원 건수(건, 비율)				
		합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8년	1,315	33,921 (100%)	28,879 (85.1%)	4,787 (14.1%)	203 (0.6%)	52 (0.2%)
2019년	2,087	101,378 (100%)	95,083 (93.8%)	5,735 (5.7%)	500 (0.5%)	60 (0.1%)
2020년	4,973	170,697 (100%)	158,760 (93.0%)	11,452 (6.7%)	445 (0.3%)	40 (0.02%)
2021년	6,952	188,083 (100%)	169,820 (90.3%)	17,456 (9.3%)	708 (0.4%)	99 (0.1%)
2022년	7,979	234,560 (100%)	213,602 (91.1%)	19,259 (8.2%)	1,525 (0.6%)	174 (0.1%)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37.

다만 중앙센터에서는 대면 상담을 비롯한 직접적인 밀착 지원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에 퍼져있는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정·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2021년 7개소로 출발한 지역특화상담소는 2022년 1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14개소가 운영되었다.[196] 각 지역특화상담소에는 2명의 상담사가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 서비스 또는 의료지원 연계 등을 수행하고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삭제를 지원하고 중앙센터와 연계하여 유포 모니터링 등 전문적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13,577건(22.10.31. 기준)이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지역특화상담소 10개소의 운영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22: 3).

196) 지역특화상담소가 개소된 14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세종·울산·전남·충남 4개소가 23년에 신설되었다.

[표 6-2] 지역특화상담소 2022년 운영실적

(10월 말 기준, 명·건수)

지원 피해자 수	총 지원건수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수사·법률 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건수	명수		
901	14,331	7,961	3,289	754	85	1,824	503

※ 출처: 여성가족부, 2022. 12. 05. 보도자료, 「2023년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의 역할을 통합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자체 거주 주민 등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센터와 같이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특화상담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상담·수사동행·재판 모니터링·법률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197] 즉 지자체 센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삭제지원과 밀착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의 형태나 수준은 지역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방심위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피해자 지원기관, 경찰로부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방심위에서는 채증을 한 뒤 사이트 운영자 또는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요청을 보낸다.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198] 그런 뒤에 인터넷 사업체, 즉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물로 인지된 영상의 DNA를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DB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축적된 DB는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필터처럼 작동하여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릴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197) 각 지자체 센터의 운영실적의 경우, 각 기관마다 산출기준이 달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취합하지 않았다.

198)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자심의 방식으로 상시 개최된다. 심의위원들은 전자심의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입력하고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을 때 의결이 완료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 127).

2021년을 기준으로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신고는 11,562건으로 2020년에 접수된 6,313건과 대비하여 83.1%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한 피해신고 건수 또한 15,481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센터)와의 업무공조시스템을 통한 신고 또한 2022년 7,178건으로 2021년(3,117건) 및 2020년(2,625건)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1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144).

또한 방심위는 24시간 피해접수 및 상담 창구를 활성화해두고 있으며 피해접수 이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1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144).[199]

[표 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피해접수	자체처리	심의진행
신고(홈페이지, 전화 등)	2022년	15,481	2,909	12,572
	2021년	11,562	3,797	7,765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1 방송통신심의 연감」, p. 1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방송통신심의 연감」, p. 13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대다수가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132-1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145-146).

199) 2021년 위촉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제4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6개월 만에 위촉되었다. 이와 같이 위원 추천이 미루어져 제5기 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021년의 심의진행 건수는 다른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났다.

[표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기간	심의(건)	시정요구(건, 비율)			
		합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20년	35,603	35,550 (100%)	22 (0.1%)	2 (0.0%)	35,550 (99.9%)
2021년	26,000	25,879 (100%)	32 (0.1%)	0 (0.0%)	25,847 (99.9%)
2022년	55,287	54,994 (100%)	440 (0.8%)	1 (0.0%)	54,553 (99.2%)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1 방송통신심의 연감」, p. 1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방송통신심의 연감」, p. 133.

위와 같은 기관별 피해자 지원 노력에 더해, 피해자 지원기관과 방심위, 경찰은 서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시스템 또한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 사이트 관련 수사를 의뢰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기도 하며, 피해자 지원기관 내에 경찰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며 상담 이후 바로 수사 의뢰나 고소장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기도 한다. 또한 이 외에도 해바라기센터나 긴급전화 1366을 비롯한 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

> 저희도 경찰이랑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부에 이제 심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공문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url 그리고 캡처 자료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자주 신고도 하시고 우리와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스템을 연결시켰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 전화 접수를 통해 사례가 접수되면 저희 통합지원센터에 경위님이 계셔 가지고 이분이 당장 수사가 필요하거나 고소장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해서 먼저 사건 경위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만일 바로 고소장 작성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위님이 동석하셔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고소장을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이제 그 관할지역으로 이제 해서 이송 처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서 상담을 받고 따로 경찰서 안 가도 되게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 11)

> 성인 사이트의 경우,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불응 사이트들이나 이런 곳에는 공문의 형태

등으로 계속 제재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 사이트 수사 의뢰도 삭제지원의 일환으로 같이 해요. (피해자지원 9)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N번방 방지법 이후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에는 피해 영상물이 거의 업로드되지 않고 업로드되는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삭제되는 등, 입법이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이후 '피해자 지원의 한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의 유포를 법적·기술적으로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입법의 효과는 있죠. 국내 서버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사안은 이제 되게 드물어요.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들이 신고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나요?) 국내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불법 촬영물 여부 심의를 요청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 결정을 해서 가고 있고요. 만약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월 1회 정도의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유를 들어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없겠네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대한민국 내에 예를 들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면 이제 **라든가 **같은 그런 SNS, 포스팅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국내 사이트에 게시되는 피해 촬영물들은 여러 차례 부처가 협력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내는 사실 이제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해외인 거예요. … 해외 성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법 적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사실 무용지물이죠. (피해자지원 9)

사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서비스에서는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돼서 워낙 법이 엄격히 지금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올라오면 올라오더라도 운영자가 그걸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간혹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워져 있다 보면 없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그런 경우가 문제인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2.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 공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지원 기관 간, 그리고 지원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사이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사례마다 일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유관기관 담당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먼저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은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다양한 상호 교류를 통해 업무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종사자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전국 단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100% 다 오셨어요. 와서 서로 종사자들끼리 서로 사례 나눔도 하고 이러면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는 거죠.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서로 통화하고 시스템 연계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같은 업무를 하니까 라포가 형성이 되죠. 한 번만 만나보면 저희 차원에서는 일단 이게 뭐 (개최한) 주체가 누구든 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입장 안에서는 서로가 어쨌든 공감대가 있으니까. (피해자지원 9)

방심위는 삭제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일부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경찰과 시스템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심위 같은 경우는 저희 삭제지원 시스템하고 방심위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정보 값 넣고 채증처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넣으면 영상 자체가 방심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 피해 촬영물의 해시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돼요. 그렇게 차단 요청을 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죠. (피해자지원 9)

> 저희도 공조 시스템이 경찰이랑 돼 있어 가지고 경찰에 시스템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문 없이 번거로움을 행정 절차를 없앤 거죠. 공문 없이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URL 쓰고 입력하고 캡처 자료 넣으면 그냥 쭉 전송하는 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은 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경찰과도 협업하고 있다. 특히 경찰 및 방심위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협업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둔 것으로 보인다.

> 방심위든 경찰청이든 과기부든 저희가 이제 다 협업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사이트 수사 의뢰는 계속하고 있어요. 방심위도 넣고 있고 그래서 (협업 관계는)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소통 핫라인 창구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라인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업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지원 9)

> 사실 부처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너무 세팅이 잘 되고 있어요. 연락 체계는 너무 잘 돼 있고 지금도 뭐 일이 터졌다. 그럼 바로바로 경찰과 실시간으로 통화해요. 그리고 방심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우리가 보낸 거 왜 각하시켰어요, 이런 거 얘기하고, 오히려 거기서는 이번 주에는 좀 건수가 줄었네요,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피해자지원 9)

> (지방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협력 회의를 하면서 상호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44곳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센터 배너가 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서로 협업, 즉 저희도 수사 협조 의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을 요청을 하십니다.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사이버 수사과 그리고 여청과 이렇게 다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 2)

> 경찰서도 저희는 협조가 좀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관할서의 경우에는 경찰관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잘해주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해주세요. 케이스별로 달라서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막 자기네들이 명함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 피해 지원에 필요하다. 자기 피해자들이 막 저희 쪽에 연계해주세요. (피해자지원 10)

다만 경찰과의 협업에 있어서는 수사관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협조가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지원 기관과 시스템 측면에서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지원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센터는 지역 내에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된 건이 해당 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은 모르는 거는 여전하고요. 특성상 이제 경찰들이 보직이 바뀌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청법 개정된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찰도 많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경찰들의 인식도 아직까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4)

> (경찰과의 시스템 연동은) 아직 여가부랑 중앙디성만 되어 있고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경찰과 연동하는 지점은 저희한테 신고된 피해자의 영상물이 경찰청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필요한 건 피해자가 여러 지원 기관과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 경찰청에 신고된 리스트하고 각 지역에서 채증된 자료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이관시킬 수가 없어요. 피해지원이 경찰이랑 협업해야 될 때는 피해 지원 시스템도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연동됨에 따른 통계 추출도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는 **시의 예산대로, 각 시도는 각 시도의 예산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피해자지원 1)

> 다만 이제 관내 서에는 수사팀에서 맡는데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수사팀이 경제사범 이런 걸 주로 하셔서 디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디성의 이해도가 없고 국선 선임해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화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래도 협조는 되게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지원 10)

> 저희 센터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있으면 저희 쪽으로 바로 삭제 지원을 요청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서울로 바로 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경찰청에서 피해가 접수되면 그걸 중앙디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속상할 때도 있어요. (피해자지원 11)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관 간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많은 피해가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졌다.

> 국내에서 서로 협업해서 되는 건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그 협업을 통해서 해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도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삭제 지원 쪽에서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 그 창구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해외에 있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창구를 통해서 삭제요청이 되면 바로 제재되고 삭제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공신력이 있는) 경찰청과의 협업이 제일 필요하죠. (피해자지원 9)

>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공문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만 저희가 공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고, 케이스 넘버가 무엇인지 적고, 우리 센터는 어떤 센터라는 것과 국내법에 이제 우리 설치 근거 이런 거를 넣어서 보내요. 근데 봐도 이건 그냥 센터 설치 근거고 이건 너희 법이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사 중인 건이고 너희가 정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 강제 조치를 하겠다. 일부러 그렇게 세게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에 8천여 건을 일괄 삭제했어요. 되게 문제적인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코리안 카테고리 자체가 그냥 날아갔어요. (피해자지원 9)

한편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해 스스로 국제적 공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직접 특정 해외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했는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속한 국가의 피해자 지원 단체와 공조하여 삭제를 촉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에 대해서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그런 성인 피해 촬영물들을 지원해주는 컨택해서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또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냐, 우리는 지금 성인 피해 촬영물이 굉장히 문제다. 아청은 그나마 이렇게 해서 되는데 성인 피해는 좀 어렵다. 미국에 호스팅이 있는 사업자인데 당신들을 통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해서 성인 사이트한테 이거 없애라 제재를 가하는데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만 되는 거예요. (피해자지원 9)

제2절 | 피해자 지원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과 운영체계 상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피해자 지원 기관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약사항

가. 기술적 한계점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은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피해자를 대변하여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고 2020년 초까지는 지원 기관의 실무 경험이 축적되며 삭제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수사를 통해 사이트 전체가 폐쇄되는 등 다각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강화된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웹하드, 소라넷과 같은 국내 사이트들이 아닌 해외 성인 사이트나 폐쇄적인 SNS 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삭제지원 업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먼저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SNS 채팅방의 경우 피해자나 지원 기관이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 텔레그램 단톡방 내에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A 여성의 촬영물이 그 방 안에서 유포가 되고 있다. 근데 자기는 거기 그 방에서 이미 나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에 돌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피해 여성은 자신의 어떤 촬영물이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 텔레그램방 링크를 줘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이제 (가해자들도) 국내에서 만약에 잘못 올렸다가는 지금 시청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성인 사이트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트위터나 이런 거로 하더라도 삭제만 용이한 거지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러는 거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피해자지원 8)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도 피해 촬영물이 있어야 지원을 해요. 촬영물이 있어야 DNA값이든 hash값이든 돌려서 인터넷상에 유포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영상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확보하지 못하게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영상을 자체적으로 녹화해가지고 또 업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은 자기 영상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피해자지원 8)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영상물을 통한 금전적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촬영된 피해 촬영물임을 밝힌 경우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전에는 업로드를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올렸다고 하면 20년부터는 이게 싹 바뀌기 시작해요.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자가 이 영상들을 다 받고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거기에 가담하고 그 올리는 사람들의 아이피라든지 이런 거를 추적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추적을 할 수가 없게끔 돼요. (피해자지원 8)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저희가 접속차단 조치 전에 자율규제 요청을 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이걸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해주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아예 한글로 제공되면서 국내 영상이 되게 많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자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너희가 호스팅하는 이 사이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삭제를 해달라고 그쪽에 전달해 달라 하면 거기서 전달을 했대요. 근데 당연히 저런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해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보내게 된다. 이런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자율규제, 즉 시정 요구를 하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속차단이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일단 저희 쪽에서 빨리 긴급하게 삭제 요청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불응 사이트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성인 해외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위주로 일단 방심위에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라도 보이지 않게 차단을 해놓고. 물론 VPN으로 다 우회 접속은 돼요. 방심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은 국내에서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뜨는 것보다는 일단은 방심위 블루스크린이 뜨도록 하는 거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는데 긴급 삭제를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넘기는 그런 프로세스에요. (방심위한테 요청을 하면 금방 차단은 되나요?) 거기도 이제 24시간 내에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4시간 내에 심의결과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차단 여부는 그 이후의 기술적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자들이 다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삭제가 됐는지 여부 차단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요. (피해자지원 9)

> 저희가 심의하는 건 이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버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 정지, 이용 해지를 하게 되고요, 서버가 해외인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해서 국내에서 접속을 막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 정보가 없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접속차단은 대한민국 내 IP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 불가하도록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을 차단하여 시청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관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즉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IP 주소의 위치가 대한민국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최근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즉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접속차단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이 가능해지는 기술적 맹점이 발생한다.

긴급하게 차단해야 되는 경우들은 방심위로 저희가 차단 요청을 하고요. 대체로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지원 요청합니다. 그런데 차단을 하는 경우에도 반영 기간이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VPN 우회 기능을 사용하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이 별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지원 2)

(방심위에서 접속차단을 한다고) 그 정보가 아예 없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흔하긴 근데 요즘에 쉽게 앱 하나 깔면 VPN으로 들어가면 보여지기도 하고 차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번 새로고침하거나 접속 환경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해서 좀 완전치는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국내에서 접속하는 거 차단을 방심위가 해요. 한국 IP 내에서 보이지 않게 약간 가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VPN을 써 가지고 (접속)하죠.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보안 기술도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단하는 기술 자체는 답보상태인 거죠. 24시간 내에 심의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 차단이 안 되면 24시간 내에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죠. (피해자지원 8)

어려운 점은 계속해서 불법 성인사이트들이 도메인을 변경해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고 단속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삭제지원 요청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조금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피해자지원 2)

한편 이러한 기술적 한계 외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행동도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먼저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접속차단 되는 경우 URL의 일부(숫자 등)를 변경하여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서버만 해외에 두고 실제 사이트 운영은 국내에서 하는 운영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서버뿐만 아니라 운영자까지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법 적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이 협력하여 경찰의 수사와 동시에 삭제요청의 압박 수위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의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일 힘든 점은 유포 URL이 계속 변하는 게 그렇죠. 삭제 요청을 해도 계속 URL 변하니까 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이트 요청 같은 경우에는 불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삭제 창구를 찾는 게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메일이 계속 반송되거나 메일 주소도 없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삭제지원을 요청한 창구를 찾는 게,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지원 2)

예전에는 운영자는 국내에 있지만 서버는 해외를 위장 이전하는 방식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해자가 검거되어서 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경찰에게 정보를 받아보니 가해자가 아예 이민자인 거예요.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건 정말 되게 이게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피해자지원 8)

경찰도 작년에 제2의 n번방 가해자를 잡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빨리 검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건이 제2의 n번방이다 이러니까 경찰이 호주에 있던 가해자도 어떻게든 진짜 잡아내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마다 다 그렇게 30명을 투입해가지고 할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올해는 디지털성범죄가 더 이슈화가 된다, 하면 더 몰아서 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하다, 그럼 좀 덜할 거고. 이렇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경찰이 빨리 수사를 안 하면 아동청소년은 또 어떻게 방치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피해자지원 8)

사이트 수사 의뢰도 하지만 사이트 수사는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이지 저희처럼 아니면 방심위처럼 이거를 차단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이트 수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주요 기능이 이거고 우리는 이거다 보니까 사이트 수사 의뢰를 해도 거기는 이제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사이트 수사 의뢰해서 갑자기 이게 막 팡 터져 가지고 피해 촬영물이 다 삭제되고 이런 성과를 단기에 피해자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피해자지원 9)

이런 불법 성인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IP 추적도 안 돼요. 저희가

이걸 방심위에 요청해서 차단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URL 링크만 바꾸거나 해서 또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퍼다가 그대로 주소만 조금 바꿔서 그러면 저희는 그거 계속 추적해서 삭제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피해자지원 10)

시너지가 나서 뭔가 해외 성인 사이트를 웹하드에 했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수사를 해서 막 제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건은 지금 수사 중이니 삭제해. 곧 가해자가 검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우리가 해 가면서 같이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9)

나. 공신력 부족과 국제 협조 요청의 어려움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 측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 공신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즉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기관의 삭제요청 권한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협조가 잘 진행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기관 공신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확인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표성과 권한이 부족하여 실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저희가 삭제요청을 할 때도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센터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랑 강제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중국에 유포되어서 중국 쪽에 메일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말하지 말고 한국 경찰이 연락하게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계속 저희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지원 8)

우리가 피해자 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줬다고 해도 네가 그런 건 알겠는데 그 당사자가 직접 이게 피해 촬영물이라는 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업로더를 제재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네 회원이잖아요. 이 회원이 올린 것에 대해서 내리라고 운영자가 얘기하면 돈줄이 날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명확하게 피해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2년이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심해진

> 거예요.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지원 9)

> 국내에서도 조금 더 (삭제지원) 영역이 공신력 있게 안착이 되어야 해요. 이를테면 방심위는 별도의 설치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설치법 내에 삭제지원이 업무 영역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 센터의 권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할 때 그런 법을 번역해서 보내요. 근데 그거를 보는 해외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 뭐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아니구만. 바로 아는 거죠. (피해자지원 9)

> 이미 자기들끼리 올렸다가 사라지는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거를 사용해서 몇 월 몇 시에 게시를 몇 시간 할 테니 그때 받아라. 그리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라온다는 것이 포착이 됐을 때 공신력 있는 공문을 날려주면. (제재에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법상에 저희 센터의 권한이 부족해요. (피해자지원 9)

이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 시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물이 아닌 성인 대상의 불법촬영물인 경우 해외에서는 삭제에 대한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견 없이 삭제를 진행하지만 분명하게 아동·청소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 촬영물임을 입증해야만 삭제에 협조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 정말 외국은 영국, 미국 등 보더라도 아동청소년 위주예요. 이게 아동청소년인지 연령을 측정해서 자기네한테 보내라는 방식인 거예요. … 미국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성인의 경우에는) 한국만큼 이렇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 되게 큰일이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는 않는 그런 문화다. 중범죄라고 보지도 않고 경범죄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모든 걸 다 삭제하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 안에 피해자 지원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위주인 거예요. 아동 청소년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외에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점점 삭제율이 떨어져요. (피해자지원 8)

> 피해자의 촬영물 키워드를 치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측에다가도 나오지 않게끔 키워드에 대한 거를 삭제요청을 하는데 구글도 미국이 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워야 되냐. 본인이 자발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볼 권리와 자유의 침해다, 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런 이미지를 채증해서 보내면 삭제는 해주겠다고 한 상태에요. (피해자지원 8)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SNS 회사와 MOU 등을 통해 협력하고 빠르게 삭제요청과 조치를 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협조를 통해 삭제까지만 가능할 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포자를 찾는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 저희도 해외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 **나 ***, ***라는 이런 것들은 전에는 저희가 차단 조치를 해도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규모 있는 플랫폼들하고는 국제 공조 MOU를 체결해서 우리 위원회 전용 창구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차단이라는 조치 내역을 그쪽에 보내면 거기서 삭제를 해줘요. 아니면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심의 상정하기 전에 자율규제 요청을 보내면 그 사이에 삭제하거나 하는 것도 해주고 있고요. 이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공조 쪽으로 좀 많이 역량을 지금 투여하고 있어요. 확산방지팀에서 합법적인 규모 있는 사업자들과 협업 관계를 맺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 국내에서 만약에 잘못 올렸다가는 지금 시청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성인 사이트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나 이런 곳(SNS)과 협력하더라도 삭제만 용이한 거지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러는 거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사에는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죠. (피해자지원 8)

다. 기타 지원 상의 어려움

지원 기관 담당자들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 촬영물이 주기적으로 재유포되고 있어 피해자를 완전히 만족시

키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한 지원자는 5년 전 처음 접수되어 삭제지원을 제공했던 피해 촬영물이 최근에 재유포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완벽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며 피해자들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지원자들도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피해자에게 고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재유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충격이 느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 (피해자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봤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공감도 가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상담을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삭제하는 건 어렵다, 그런 설명을 해주시나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유포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길에 우리도 함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건 되게 길게 가야 된다. 근데 피해자분이 끝까지 이거를 잘 견뎌내겠다는 약속을 우리랑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해요. (피해자지원 8)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기소율 자체가 낮으며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즉 부족한 처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 구속도 거의 안 되고 거의 뭐 불구속 수사하고 그래요. 그냥 일반 성폭력 피해도 되게 위중하지만 디지털 피해는 되게 더 위중한 게 뭐냐 하면 유포가 일단 되고 가해자가 촬영물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5년 있다가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유포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유포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강간 피해자들만큼 위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도 재판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처벌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양형 기준도 올려야 되고 그 재판부 인식 개선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10)

심지어 공탁 제도 등을 통해서 형이 감경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는 점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N번방 방지 관련 입법 이후)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기소가 더 많이 되거나 처벌 수위가 더 높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정도네 이러고 공탁을 걸면 공탁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그런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 미국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가지고 공탁은 형의 양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늘 양형을 줄여주는 거예요. 초범이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지원 8)

> 법은 더 보강되어야 해요. 문제는 아청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판부에서 의식적으로 세게 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인 유포는 무조건 집유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인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도 (가해자가) 구속이 안 돼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공탁을 얼마 걸었으며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얼마, 몇 명하고 했으며 이런 걸로 다 해 가지고 집유를 때리는 거예요. (피해자지원 10)

> 지금 디지털성범죄는 재판에서 1심, 2심으로 가다 보면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재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욕하고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할머니랑 살고 있고 가장이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반성문을 썼다는 걸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어요. (피해자지원 11)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200]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2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중앙센터와 일부 지자체 지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때 애로사항은 특정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관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애매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수사관, 아동·청소년 전문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인 게 명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면 각 플랫폼들도 바로 지워줘요. 아동청소년인 게 너무 명확하고 아동청소년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다 삭제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얘네들이 아동청소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기준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계속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판정위원회라는 거를 열고 있어요. 사례판정위원회는 이제 변호사도 들어오고 수사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때로는 아동 청소년 전문 기관들이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은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도 있고 장애 여성 관련된 장애여성 공감이라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기준을 다시 또 변경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1)

한편 피해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실망을 안길까봐 등의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않고 피해 영상물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몇 년이 지나 부모가 이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될 때까지 피해 인지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된다.

>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사진을 올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아니

위의 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삭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법에서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자료 보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자에 따르면 선제적 삭제지원 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곳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면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알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사춘기 청소년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말 걸고 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에 사진 같은 것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나에게 실망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모님이 아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이런 거를 꺼려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7)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지금 아동청소년 비율은 작년까지 하면 38% 정도에요. 근데 올해 통계 내면 반(5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그루밍하고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DM이나 오픈채팅방에서 피해를 입어요. 일대일 대화로 사진 같은 걸 주고받다가 협박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피해자지원 10)

아동청소년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가 발생해도 도움 요청을 안 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거를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핸드폰을 뺏기거나 할 가능성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계속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아니면 부모님도 힘들까 봐, 그리고 이미 협박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누구 죽일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협박받았을 때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몸 찍는 거 별거 아닌데 그냥 찍어가지고 보내버려. 그러다 보니까 보내버리고 내 핸드폰에서만 삭제했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피해자지원 8)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유포까지 드러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유포 피해보다는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의 경우에는 온라인 유포보다는 친구나 지인 간에서 일어나는 피해 영상물 유포가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은 실제로 유포된 경우보다는 협박이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유포가 돼서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조금 극히 드문 것 같고요. 유포될까 봐 염려가 돼서 선제적인 삭제나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7)

> 학교 폭력과 연관이 돼서 센터에 내방하는 사례를 보면 지인이나 친구들에 의한 유포 사례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피해 자체를 친구가 유포받은 것을 알려줘서 인지했다든지 아니면 데이트 성폭력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런 사진들을 유출했다든지 등의 사례가 있어요.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여는 사례들 중에서 학교 내에 유포되는 사례들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 중에서 한 30~40%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5)

한편 이러한 현상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발적인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범죄 신고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최희경 외, 2021: 125-126).

> 성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의 촬영된 게 불법 유포된 부분과 몰카나 이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아동청소년들은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유포가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 그런데 사실 유포가 아동 청소년이 체감상으로는 적지 않아요. 근데 신고하기 꺼려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결국은 검찰로 가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 재판까지 가고 난 이후의 결과조차도 그렇게 피해자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다 노출하고 보호자의 신분을 다 노출하고 그 과정을 감행하기로 결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1)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첩된 피해를 경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그루밍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일부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양육자의 무관심,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이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사실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학대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정서적으로 차갑거나 아니면 굉장히 바쁘시거나 또는 이주 배경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된다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든지. …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이 떨어지거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상대방이 채팅하거나 이래도 되게 멀쩡하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로 보였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일상 기능들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아이가 취약성이 있다고 뭔가 증명하고 입증해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피해자지원 5)

일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지원자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접수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중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통해 가해 행위가 밝혀지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증가는 현재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식 개선 및 디지털 문화 교육, 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귀었던 친구하고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일 수 있는데 친구가 그거 팔면 돈이 되니까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 영상을 주면 친구는 그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돌려서 보여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돈 받으려고 영상을 준 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이 친구에게 다 성폭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 받으려고 영상 준 게 되어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피·가해가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피해자지원 6)

최근에 청소년 내담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온전히 피해자인가라는 게 고민이에요. 최근에 유포 불안이나 유포 협박으로 저희 쪽으로 왔는데 그전에는 이 친구가 온라인 안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래서 주인과 노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시청 소지를 한 가해자였던 거예요. … 사회에 나왔을 때 문제시될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든지 약간 좀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케어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상담을 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피해자지원 11)

>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싫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은 항상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합성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성 의뢰된 걸 가지고 거의 이 사람은 되게 성적 문란한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 청소년들이 이런 (합성 의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제작을 의뢰한 학생한테 그 사람이 역으로 너 이거 불법인데 그러면서 촬영물을 보내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지원 8)

> 아이들이 (자신이 올린 사진의) 활용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20대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경계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이 원하니까 그냥 응했다가 나중에 동의 촬영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문제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동의했지만 계속 평소에 갖고 있기를 원치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도 알고 있어야겠죠. 최근에는 성폭력 예방교육할 때 디지털성범죄를 조금 더 많이 교육을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지원 8)

> 그래서 지금 폭력 대응 지원 사업팀에서 콘텐츠도 만들고 배포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초등학생하고 양육자예요. 초등학교 입학 전, 입학 후 이때 핸드폰 사용량이 급증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들이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전혀 모르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피해자지원 1)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자, 양육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필요한 것이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에 조금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들이나 보호자, 양육자들이 빠르게 알아차려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관리자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서는 전체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 그런데 청소년들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매년 똑같은 교육만 한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안내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 강사들이 쓸 수 있는 강의 콘텐츠 개발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 2)

2. 운영체계 상의 어려움

가. 지휘 체계의 부재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4개의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2023년 현재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지자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여가부 등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센터나 지역특화상담소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과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쉬움을 느끼는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역할과 업무의 중복이다. 현재 여가부 산하에 있는 중앙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는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중앙센터에서는 삭제지원에 특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면 상담이나 밀착지원은 지역특화상담소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201] 한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일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삭제지원과 상담, 의료, 수사 동행, 법률 자문 등 모든 유형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접수나 삭제지원 서비스가 중앙센터와 중복되어, 여타 밀착지원 업무는 지역특화상담소와 중복되어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중앙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

201) 지역특화상담소의 역할 내에 긴급 삭제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2명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삭제지원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삭제지원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 센터에 추가로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지원이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저희도 웬만하면 진흥원에서 받으시면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중복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저희 측에서는 다른 지원만 받으셔도 된다고 안내를 해드려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불안이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다 받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피해자지원 10)

> 저희는 만약에 피해자가 저는 **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종결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인력 측면에서도 피해자를 봐서라도 우리가 갖고만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말 여력이 되는 곳으로 하면 좋은데 저는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여가부 산하에 모든 게 설립이 다 됐었으면 중앙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집약이 돼서 이렇게 다 분할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겠죠. (피해자지원 8)

다만 일부 지원 기관 종사자는 다수의 기관에서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요청을 받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압박을 느끼도록 하여 삭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저는 삭제 지원을 그나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기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불만을 얘기해서 지워주는 거랑 5개 기관에서 요청했을 때랑은 갖는 위협의 정도가 다르겠죠. 이미 여러 기관들로부터 이 영상물에 대한 압박을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워줘 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멀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의 에너지와 열의를 가지고 이 영상물을 삭제 지원을 요청하느냐가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개의 영상이라도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다의 분들이 최단기간에 많은 요청을 했을 때의 효과가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지원 1)

한편 피해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은 중앙센터와 각 지자체 센터가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에는 기관 간 통일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업무 배분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수준의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지자체 센터가 4곳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선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 중앙센터나 다른 지자체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되면 피해자 지원 업무의 중복성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타워가 정해져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개선하거나,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차라리 여가부 산하에 디성 센터를 1번, 2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립했었으면 업무 분산도 되고 그랬을 텐데 지자체 센터로 생겨버리다 보니까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어쨌든 저희가 제일 오래 일을 했고 제일 자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라 같은 거에 있어서는 역할 세팅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지원 8)

> 부처 협력 그렇게 17년에 그렇게 발표되고 나서 어쨌든 부처에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종합 근절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부처 협력회의, 협력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세팅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뭔가 진짜 공략해야 되는 곳에 어떻게 힘을 같이 쏟을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거의 부재하다고 봐요. 지금 해외 서버 사이트가 가장 문제인데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략을 할 때 누가 추동해서 회의하고 이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공략을 함에 있어서 같이 공신력을 보태줄 부처나 보태줄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절실한 거예요. 저희 삭제지원 쪽은 그렇죠. (피해자지원 9)

>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필요해서 만들 거면 차라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전국

> 에 다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통제도 하고 실적 취합도 빠르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에 기관을 전국적으로 한 군데씩 만들고 특화상담소 같은 경우는 기존 성폭력 상담소처럼 운영을 하게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만 있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끌고 가려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잘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지원 10)

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일단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특정 역량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관련 업무에 관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지원자 중에 적절한 인력이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초기 직무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지원 기관에서는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기존 직원을 통한 상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직무교육을 진행한 이후에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일단은 최근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교육도 하지만 교육을 정말 한 일주일 정도는 해요. 엄청 오래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저희 선생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나가버리고 하시니까. (피해자지원 8)

> (밀착지원과 사업 등 업무를)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피해자 지원을 하는데 오롯이 집중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치고. 저희끼리는 중간에 사례 회의도 있을 거고 다른 기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담당자가 물론 자기 역량이 있고 자기 일도 하는 것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좀 빨리 지치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약간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피해자지원 11)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원, 특히 삭제지원은 유포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사이트의 목록이나 각 사이트의 특성, 주효한 접근 방식 등이 노하우로 축적되는 업무이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장기근속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험 축적의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1년 수행된 한 직무분석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정규직의 업무실적은 기간제 직원 대비 약 2~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업무실적이 2~3배 증가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숙련도 증가로 정규직 직원 1인이 단기 계약직 직원 2인의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

실제로 피해자 지원 기관 담당자들도 비정규직 채용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의 경우에는 관련 역량과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채용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거쳐야 하며 이 때문에 계약 만료와 채용이 이루어지는 연말과 연초에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건이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되어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담당자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다시 의논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정규직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너무 이게 일이 너무 고된 거죠. 그래서 많이 나가세요.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명이 9시 6시 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이 교대 근무자인데 그 6명을 가지고 하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뭐 명절이 있거나 누가 휴가 가고. 이분들이 또 이브닝 근무를 시간 외로 하거나 휴일 대체 근무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간제는 어디나 금방 빠지고 이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도 상담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상담자가 바뀌면 내 촬영물을 더 이상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해야 하는 게 어렵죠. 이런 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지원 8)

> 사업 자체가 1년 단위였기 때문에, 올해 기간제 분들은 12월 말 되면 또 싹 나가요.

202) 해당 부분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무분석 연구 보고서(비공개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공유받아 작성하였다.

그럼 저희는 업무가 마비돼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2~3개월 동안 거의 여기는 장례식장 분위기예요. 기존 정규직 선생님들이 내담자를 다시 다 떠안아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3월이 되면 기간제가 또 와요. 그럼 거의 3~4개월이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인력이 들어오잖아요. 삭제지원 인력이 교육도 해야 해요. A부터 Z까지. 노하우가 단절이 되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기존의 노하우 있는 직원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지원 9)

직원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인원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제 두 분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고 맡고 있는 피해자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려고 했는데 정부 기조가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을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 우리는 더 문제가 뭐냐면 직접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케이스 사례 관리를 계속 했는데 이분이 계약만료로 안 나와버리면 다음 이제 상담사가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피해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불안하죠. (피해자지원 10)

일단은 지금 특화상담소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1년씩 계약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이 돼요. 상반기에 중간에 인사 채용이 있으면 거의 2~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요. 또 1년 하고 나서 이분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두게 하고 내년에 또다시 지원해야 돼서 고용안정이 안 되는 게거의 가장 먼저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늘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지원 11)

한편 한 지자체 센터의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3년 단위 공기관 위탁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일부 확보하였으며 위탁이 연장되는 경우 채용 인원의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하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공기관 위탁 3년 계약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연말에 직원 이직이 좀 많은 상황이지만 저희는 너무 단기간에 일을 계약하고 하다 보면 업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할 때 공기관 위탁을 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3년 기간 동안에 고용 안정성을 유지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 이 공기관 위탁이 연장되면 이 채용되신 분들도 다 자동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몇 가지의 협의 사항을 토대로 지금 저희 디성센터 직원들은 재단 직원하고 동일한 급여 체제와 성과급 체제와 복무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피해자지원 1)

이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비 예산 내에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석사급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심리나 범죄학, 경찰행정학, 여성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기관 내에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여가부의 특화상담소가 사실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폭력 상담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사실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서 전문 인력에 합당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작 2명 주잖아요. 고작 2명 주면서 이 모든 사업 홍보, 기획, 상담, 행정, 회계 이거를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말이 되냐는 거죠. 또 문제는 이게 1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약직이죠. 그러면 돈도 많지 않은데 누가 계약직을 지원하겠어요. 진짜 의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담소에 얹어놓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센터로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되려면 그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주셔야 돼요. (피해자지원 6)

> 저희는 이분들 (현재 함께 일하는 특화상담소 인원)이 계속 필요해요. 이렇게 고급 인력을 뽑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분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 특화상담소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사용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최소 비용이고 그런데 그런 인건비로 해가지고 석박사 졸업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써요. 이런 고급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지원 10)

> 인건비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업무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면 인건비가 일단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을 인정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고급

> 인력이 오죠. 지금 수준으로는 절대 안 오죠.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인건비를 늘려주셔서 지역의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확충해 주셔야 돼요. (피해자지원 10)

다.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외에 다양한 관련 사업을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현재 지자체 센터들은 대부분 원스톱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부터 수사 동행, 재판 모니터링, 법률 자문 연계,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밀착지원에 대해 센터 종사자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의 지원이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운영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인력도 적은데 사업을 계속 늘려요.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시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보충 없이 그냥 하도록 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이라 정신이 없어요. 맨날 직원들만 죽어나고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어요. 물론 시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는 것은 이런 보여주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그냥 대충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스트레스 받죠. (피해자지원 10)

> 저희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팀의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조금씩 사업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지금 다 저희 쪽으로 사업을 맡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스토킹 사업도 들어와 있고 계속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지원 11)

이 외에도 새로 시작된 지자체 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소진에 대비한 예산이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관련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폭력의 한 형태이며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종사자 또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김민아 외, 2022:15-21).

이에 따라 중앙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종사자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기관 자체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정기적인 외부 상담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 소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일부 지역의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거의 한 달에 두 번씩은 갈 수 있게 해요. 근데 이제 예산 사용이나 업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상담을 하던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거나 하면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이제 그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또 유족이랑 상담을 했을 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촉발되는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면 긴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지원 8)

>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피해 상담하고 초기 접수하고 사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21년 개소 때부터 저희가 개별 소진 방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큰 예산을 책정해서 1년에 9회 정도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분도 슈퍼바이저급 상담사로 개별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년째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올해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도 지금 2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지원 2)

> 저희도 연간 월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 개별적으로 전문 심리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2시간씩 다 휴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업무의 지속성에서 오는 소진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한국 트라우마 센터인가에 디성 피해 지원관들의 소진 방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은 기관에 배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피해자지원 1)

분야별로 전문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삭제지원이나 유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피해 촬영물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진 방지를 굉장히 세게 돌리고 있어요. 그게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충해서 무조건 많이 해라, 상담도 받고 치유도 해라, 해가지고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세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 상담도 받고 있거나 집단 상담도 하고 있어요. (피해자지원 10)

(종사자분들의 소진을 막기 위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도 하루 종일 삭제지원을 하다 보면 정신이 황폐화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보게 되고. 그런데 저희는 따로 이제 지금 피해자 지원하는 담당자에게는 아직 그런 게(종사자 소진에 대한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 복지는 담당자들끼리 서로 고충을 아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 편인데, 아직은 센터 내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소진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지원 1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김 지 선

제7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제1절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1.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N번방 사건이 계기가 되어 디지털성범죄물의 인터넷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의 증가에 기인한다. N번방 방지대책 이전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가 신설되었다.[203] 이 조항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여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유통 방지 조치의무대상 디지털성범죄물이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신고 및 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한정적으로 명시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수단에 실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204] 이와

---

203)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4) 이전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에서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

같이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 및 삭제요청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라고 칭하며, 이 조치는 이용자, 피해자, 관련 기관 단체의 신고나 삭제요청을 통해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인식한 이후에 취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사후적 조치'로 분류된다. 2020년 12월 개정 시 조치의무사업자가 사후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및 벌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동시행령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제1의2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명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디지털성범죄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요청된 디지털성범죄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하여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 후 정보의 게재를 제한한다.
4)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성범죄물이 재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적 조치'로 분류된다. 또한, 신고·삭제요청 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지만,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즉 평균

체를 한정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디지털성범죄물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통 사정 신고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수단에 실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사정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삭제 접속 차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이종관 외, 2021).

매출액이 10억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일반부가통신사업자와 모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전조치의무대상자'라고 명명한다. 사전조치의무대상자이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의2(벌칙) 제1의3호).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동시행령은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와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는 신고·삭제요청 된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담당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자사의 임원이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한 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유통 방지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의 교육을 매년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5조의2).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4호의4).

2.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의

투명성 보고서의 본래 의미는 조직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활동, 정책, 특정 주제에 관한 처리 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업보고서의 한 형식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해당 조직이나 기업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인 Google, Twitter, Facebook 등은 2010년대 초부터 자발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각 사업자가 보고 방법, 공개할 정보, 시기, 형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왔다(Harling et al., 2023).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투명성 보고서가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Dwivedi, 2022)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어

야 할 최소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체계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라고 불리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플랫폼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불법유해콘텐츠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적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첫 번째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 독일네트워크집행법(NetzDG)이며,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 미국의 소셜미디어 공개 및 광고 투명성 등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Dwivedi, 2022).[205]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는 사업자에게 매년 한 차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 결과 및 처리결과
3) 관련 절차의 마련 및 운영
4)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와 내부 교육

또한, 2021년 12월 고시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치 기준"은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함께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무 이행 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N번방 방지대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로서, 2021년과 2022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투명성 보고서는 법 시행 직후 한 달 간의 사업자 활동을 담고 있었으나, 많은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처리 실적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채은

205) 프랑스에서도 아비아법이 만들어졌으나, 2021년 6월 18일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임효준(2023)을 참조.

외, 2023). 두 번째로 2022년 6월에 공개된 투명성 보고서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사업자들의 노력을 담고 있었지만, 이 기간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유예 기간으로, 그 효과를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노력과 그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023년 1월에 제출된 2022년 투명성 보고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021년의 투명성 보고서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시스템 구축, 사전 경고 조치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방문하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2022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웹하드, P2P 사업자 등이며, 이들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범주에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21년과 2022년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수는 총 90개로, 2021년 대비 3개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상 사업자 중 15개 사업자는 2022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대신 18개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7-1]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사업 및 서비스 유형별 분포

(단위: 개(%))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		87(100.0)	90(100.0)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검색엔진	5(5.7)	5(5.6)
	소셜미디어	5(5.7)	6(6.7)
	스트리밍	10(11.5)	10(11.1)
	게임아이템거래	2(2.3)	0(0.0)
	웹툰/웹소설	2(2.3)	0(0.0)
	채팅앱	12(13.8)	13(14.4)
	커뮤니티	17(19.5)	23(25.6)
	소계	53(60.9)	57(63.3)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34(39.1)	33(36.7)

*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월 평균이용자가 많은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체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39.1%는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60.8%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해보면,[206]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가 25.6%(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채팅앱(14.4%, 13개), 스트리밍(11.1%,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웹툰, 웹소설 사업자가 제외되었고, 커뮤니티 서비스 및 채팅앱 사업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특수 부가통신사업자 수는 34개에서 33개로 감소하였다.

사전조치의무대상자의 주된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한 직전 3개월의 일평균 이용자 수와 연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표 7-2]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전조치의무대상자가 되는 반면, 특수 부가통신사업자는 웹하드 등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사전조치의무대상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22년 사전조치의무대상사업자 중, 월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 7개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챗, 무빈텍 등 3개

206)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구분은 선행연구인 천혜선 외(2022)와 고채은 외(2023)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Goggle LLC와 같이 검색엔진인 구글과 스트리밍 서비스인 You Tube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 평균이용자수가 많은 서비스를 대표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요건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을 기재했다. 그러나 미상을 제외하고, 53.2%의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하드 업체 중 75.7%가 10만 명 미만의 이용자 수를 보였으며, 7개 사업자는 5,000명 미만의 매우 낮은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연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43.3%(39개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1개 사업자만이 10억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 투명성 보고서에 연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0억 원 미만이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색엔진을 제외한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채팅앱 사업자 간의 연평균 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2022년 사전조치의무대상사업자로 분류된 33개 웹하드 사업자는 모두 연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웹하드 업체의 회사 공시정보를 통한 현황 파악도 어려웠으며, 이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영세사업자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7-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 유형별 일평균 이용자수와 연평균 매출액

(단위: 개(%))

구분		서비스유형						전체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채팅앱	커뮤니티	웹하드	
전체사업자		5 (100.0)	6 (100.0)	10 (100.0)	13 (100.0)	23 (100.0)	33 (100.0)	90 (100.0)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미상	1 (20.0)	3 (50.0)	1 (10.0)	0 (0.0)	0 (0.0)	2 (6.1)	7 (7.8)
	5천명 미만	0 (0.0)	0 (0.0)	1 (10.0)	2 (15.4)	3 (13.0)	7 (21.2)	13 (14.4)
	만명 미만	0 (0.0)	0 (0.0)	3 (30.0)	1 (7.7)	0 (0.0)	0 (0.0)	4 (4.4)
	십만명 미만	0 (0.0)	0 (0.0)	2 (20.0)	6 (46.2)	5 (21.7)	18 (54.5)	31 (34.4)
	백만명 미만	1 (20.0)	2 (33.3)	2 (20.0)	4 (30.8)	10 (43.5)	6 (18.2)	25 (27.8)
	천만명 이상	3 (60.0)	1 (16.7)	1 (10.0)	0 (0.0)	5 (21.7)	0 (0.0)	10 (11.1)
연 평균 매출액**	미상	1 (20.0)	3 (50.0)	0 (0.0)	1 (7.7)	1 (4.3)	33 (100.0)	39 (43.3)
	10억 미만	0 (0.0)	0 (0.0)	0 (0.0)	0 (0.0)	3 (13.0)	0 (0.0)	3 (3.3)
	100억 미만	1 (20.0)	2 (33.3)	5 (50.0)	6 (46.2)	10 (43.5)	0 (0.0)	24 (26.7)

구분		서비스유형						전체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채팅앱	커뮤니티	웹하드	
	1000억 미만	1 (20.0)	0 (0.0)	4 (40.0)	6 (46.2)	7 (30.4)	0 (0.0)	18 (20.0)
	1000억이상	2 (40.0)	1 (16.7)	1 (10.0)	0 (0.0)	2 (8.7)	0 (0.0)	6 (6.7)

* 일일평균 이상자수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준인 십만 명 이상으로 기입한 경우 십만 명 이상~백만 명 미만에 포함시켰음

** 연 평균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준인 십억 원 미만으로 기입한 경우 10억 미만에 포함시켰음

방송통신위원회(2021)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 및 '성능평가 기준'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보통신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이다. 이에 기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년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에서 영세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정적·관리적 부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천혜선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사전조치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적 애로사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사업자의 약 42%가 신고 처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6%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천혜선 외, 2022).

본 연구에서 분석한 90개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Google, Meta Platform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Pinterest, TikTok, Twitch, Twitter, 위챗 인터내셔널 유한회사 등 8개는 해외 기반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이들 해외 사업자는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관련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며, 이 조항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식별 및 게재제

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종관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외국의 관련 법률은 한국 영토 내에서의 법 집행이나 적용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 사업자는 외국법을 이유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인 Telegram은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갖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조영기, 2023).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조치의무대상자가 될 수 있다. Telegram이 제외된 이유는 사전조치의무대상자의 기준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정보가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적 대화방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이종관 외, 2021). 그러나 폐쇄형 서비스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종관 외, 2021).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Daum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비공개임에도 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되어 필터링 조치를 취한 반면, 네이버 비공개 카페나 폐쇄형 SNS인 Band는 초기에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22년 투명성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와 밴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조치의무대상자의 범위에 해외 사업자의 포함 여부와 폐쇄형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었지만, 사전조치의무대상자가 주로 대규모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플랫폼과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사이트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규제 대상이 아닌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불법 사이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1.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접수 및 처리와 관련 내부 지침 및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또는 삭제요청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연간 얼마나 많은 디지털성범죄물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모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에 한정하여, 이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디지털성범죄물 신고를 접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가.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 접수 현황

2022년 동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신고된 디지털성범죄물 건수는 총 281,931건으로, [표 7-3]에 총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75.2%는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신고한 것이며, 나머지 24.8%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207]에 의한 삭제 요청이었다. 2022년의 신고·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14,939건에 비해 1,365.5%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인한 플랫폼의 신고 기능 구축 완료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207) 여기서 기관·단체는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의미한다.

[표 7-3]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신고·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단위 : 건(%))

구분		신고/삭제요청 건수			신고사유별 신고/삭제요청 건수			
		계	피해자 등	기관/단체	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사업자		218,931 (100.0)	164,576 (75.2)	54,355 (24.8)	219,763 (100.0)	136,651 (62.2)	20,002 (9.1)	63,110 (28.7)
서비스 유형	검색	47,531 (100.0)	4,734 (10.0)	42,797 (90.0)	47,535 (100.0)	34,181 (71.9)	2,286 (4.8)	11,068 (23.3)
	소셜 미디어	170,543 (100.0)	159,378 (93.5)	11,165 (6.5)	171,361 (100.0)	102,041 (59.5)	17,532 (10.2)	51,788 (30.2)
	스트리밍	17 (100.0)	15 (88.2)	2 (11.8)	17 (100.0)	2 (11.8)	0 (0.0)	15 (88.2)
	웹하드	20 (100.0)	19 (95.0)	1 (5.0)	21 (100.0)	4 (19.0)	2 (9.5)	15 (71.4)
	채팅앱	249 (100.0)	249 (100.0)	0 (0.0)	249 (100.0)	140 (56.2)	59 (23.7)	50 (20.1)
	커뮤니티	571 (100.0)	181 (31.7)	390 (68.3)	580 (100.0)	283 (48.8)	123 (21.2)	174 (30.0)
국내/국외	국내	981 (100.0)	514 (52.4)	467 (47.6)	995 (100.0)	553 (55.6)	189 (19.0)	253 (25.4)
	국외	217,950 (100.0)	164,062 (75.3)	53,888 (24.7)	218,768 (100.0)	136,098 (62.2)	19,813 (9.1)	62,857 (28.7)

[표 7-3]에 따른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 신고 및 삭제요청 현황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신고 및 삭제요청건수가 발생했으며, 검색엔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신고건수가 현저히 낮았다. 특히, 웹하드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후 신고건수에서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검색엔진과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삭제요청건수가 높은 반면, 소셜미디어와 채팅앱은 이용자나 피해자의 신고건수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90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2021년에는 59개(67.8%), 2022년에는 62개(71.3%)의 사업자가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신고건수 중 10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9.9%에서 2022년 98.1%로 나타났다.

[표 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건 이상의 신고건수를 보고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간에는 신고건수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월평균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글로벌 해외 사업자들의 신고건수를 비교해보았다. 해당 해외 사업자들은 2년 연속 신고건수 상위 10위에 포함된 사업자들이다. 2022년 신고건수 기준으로, Facebook은 1,844건, Google은 47,162건, Twitter는 121,573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격차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시스템에서의 차이가 신고건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표 7-4] 주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단위: 건(%))

구분	신고·삭제요청 건수			신고사유별 신고·삭제요청 건수			
	계	피해자등	기관/단체	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 사업자	218,931 (100.0)	164,576 (75.2)	54,355 (24.8)	219,763 (100.0)	136,651 (62.2)	20,002 (9.1)	63,110 (28.7)
Twitter. Inc.	121,573 (100.0)	110,872 (91.2)	10,701 (8.8)	121,573 (100.0)	63,880 (52.5)	13,698 (11.3)	43,995 (36.2)
Google LLC	47,162 (100.0)	4,664 (9.9)	42,498 (90.1)	47,162 (100.0)	33,870 (71.8)	2,281 (4.8)	11,011 (23.3)
Meta Platforms, Inc	1,844 (100.0)	1,787 (96.9)	57 (3.1)	1,893 (100.0)	110 (5.8)	39 (2.1)	1,744 (92.1)
Bing	231 (100.0)	6 (2.6)	225 (97.4)	231 (100.0)	188 (81.4)	0 (0.0)	43 (18.6)
다음(카카오)	75 (100.0)	27 (36.0)	48 (64.0)	75 (100.0)	75 (100.0)	0 (0.0)	0 (0.0)
네이버	56 (100.0)	37 (66.1)	19 (33.9)	60 (100.0)	41 (68.3)	5 (8.3)	14 (23.3)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간에 나타난 신고건수의 극명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의 신고 및 조치 현황표에서 집계 기준의 일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 신고건수 집계 시 사용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55개(61.1%)는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된 경우만을 집계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약 40%의 사업자가 자체 신고기능을 통한 접수된 신고건수를 포함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 간 집계 기준의 차이가 신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표 7-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0. 12. 8.〉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삭제 요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역	[ ] 유통 신고 [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신고·삭제 요청 사유*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불법촬영물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삭제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삭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삭제요청인(대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간 신고건수의 집계에 일관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해 신고건수가 실제보다 과소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된 경우만을 집계했다고 밝힌 55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38개 사업자가 지난 1년간 신고건수를 0건으로 보고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표 7-5]에 따르면, 신고건수가 적은 해외 사업자인 Meta Platforms Inc와 Bing, 그리고 연간 100건 미만의 신고를 접수한 국내 사업자인 다음(카카오)과 네이버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서식이나 서식 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근거한 신고만을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도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한 신고만을 신고건수로 집계하여 보고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은 별지 서식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나 앱의 신고기능이 전기통신사업법의 별지서식 양식에 따르지 않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이용자 신고는 신고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신고 접수 및 집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과 신고건수 과소 보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신고·삭제요청의 서식을 규정한 것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이종관(2021)에 따르면, 신고·삭제요청의 형식과 절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형화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신고·삭제요청의 양식 통일성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법의 취지와 시행령에서 양식을 통일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체 신고기능과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을 기반으로 한 신고기능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 접수된 전건에 대해 신고사유별 건수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시스템 구축 시 자체 신고기능에 시행령 별지 서식의 신고서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신고건수 집계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체

신고기능을 통한 신고건수와 그 처리 현황의 투명한 보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신고건수 집계방식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로 신고 사유를 분류하는 방식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2021년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일부 해외 사업자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예: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고 사유를 분류하였으나, 2022년에는 모든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현황표의 형식적인 체계성은 갖추어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자체 신고기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분류된 신고 사유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의된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처리 현황

[표 7-6]에 따른 2022년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처리건수 관련 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총 218,931건의 신고·삭제요청을 받았고, 이 중 153,770건을 처리하였다. 처리된 건수 중 99.8%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경우이며, 나머지 0.2%(279건)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였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삭제 및 차단보다는 각하 등의 다른 처리 방식이 더 많았다. 이를 통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대부분을 자체적인 지침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연도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1년, 2022년)

(단위: 건(%))

구분	신고 삭제요청 건수	처리건수						삭제 /차단율
		계	삭제/ 접속차단	방통심의위 심의 요청			기타	
				소계	삭제/ 접속차단	각하 등		
2021	14,939 (100.0)	29,628 (100.0)	27,648 (93.3)	24 (0.1)	-	-	1,956 (6.6)	81.5
2022	218,931 (100.0)	153,770 (100.0)	153,491 (99.8)	279 (0.2)	119 (0.1)	160 (0.1)	-	70.2
증감율	1,365.5	455.7	455.2	1,062.5	-	-	-	-11.3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는 자체적인 삭제 및 접속차단 비율이 78.8%로, 다른 서비스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처리 건수 중 24.3%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반면, 해외 사업자는 0.1%만 심의를 요청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건수 대비 삭제건수로 집계한 삭제 차단율은 2021년 대비 감소한 70.2%로 나타났다. 이러한 삭제 차단율의 감소가 보고양식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실제 삭제 차단율이 낮아진 것인지 현재 자료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투명성 보고서에 제시된 신고·삭제요청건수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구축한 모든 신고기능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모든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건수를 기반으로 한 삭제 차단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표 7-7]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2년)

(단위: 개(%))

구분		계	자체 삭제·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삭제·차단율
				소계	삭제·접속차단	각하 등	
전체 사업자(계)		153,770(100.0)	153,491(99.8)	279(0.2)	119(0.1)	160(0.1)	70.2
서비스 유형별	검색엔진	39,277(100.0)	39,190(99.8)	87(0.2)	8(0.0)	79(0.2)	82.6
	소셜미디어	113,900(100.0)	113,827(99.9)	72(0.1)	0(0.0)	72(0.1)	66.8
	스트리밍	17(100.0)	17(100.0)	0(0.0)	0(0.0)	0(0.0)	100.0
	웹하드	20(100.0)	19(95.0)	1(5.0)	1(5.0)	0(0.0)	100.0
	채팅앱	0(0.0)	0(0.0)	0(0.0)	0(0.0)	0(0.0)	0.0
	커뮤니티	556(100.0)	438(78.8)	118(21.2)	110(19.8)	8(1.4)	97.4
국내/국외	국내	717(100.0)	543(75.7)	174(24.3)	119(16.6)	55(7.7)	73.1
	국외	153,053(100.0)	152,948(99.9)	105(0.1)	0(0.0)	105(0.1)	70.2

[표 7-7]에 따르면,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건수 보고양식은 처리 현황을 '자체 삭제 및 접속차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 '기타'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 보고양식이 변경되어 '기타' 항목이 제외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 항목이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접속차단'과 '각하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처리결과를 신고 사유, 즉 디지털성범죄물의 세부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2022년에는 신고사유별 처리결과 항목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021년 처리결과 중 6.6%를 차지하였던 '기타' 항목이 2022년에는 보고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양식에서 '기타' 항목이 제외된 배경은 2021년 6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후 한 신문사의 심층 보도에서 제기된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기타' 항목의 비율이 높고, 그 처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2022년 보고양식에서 '기타' 항목이 제외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에 접수된 모든 신고를 그 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사법통계는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를 구분하며, 처리 건수에는 당해 연도에 접수된 건 중 처리된 건에 대한 세부 현황을 제시한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처리 과정에서도 신고된 콘텐츠가 디지털성범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게시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항목을 제외한 것은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투명성 보고양식에서 '기타'의 의미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22년 신고사유별 삭제건수를 보고양식에서 제외한 것도 투명성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기준과 처리절차

이전의 분석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보고한 신고·삭제요청된 건수와 처리 현황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신고·삭제요청 된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기준과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신고·삭제요청 된 게시물의 처리 과정, 이용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 차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내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투명성 보고서에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 7-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고 된 디지털성범죄 대부분은 자체 판단을 통해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사업자가 신고 된 콘텐츠를 처리할 때 어떤 판단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의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제1항 2호는, 투명성 보고서가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의 판단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처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처리 현황은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삭제 및 차단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구분만을 제공하며,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되었을 때 취해진 게시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된 통계치를 제시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오직 일부 사업자만이 게시자에 대한 제재 방식에 대한 내부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은 다양하다. 경고 쪽지 발송, 공지 게시판에 아이디 일부 가림 표시를 통한 공개, 사이트 접근·이용 차단, 계정 영구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네이버는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한 게시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신고 접수된 경우 즉시 이용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을 밝히고 있으며, 카카오는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즉시 영구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제재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를 감안할 때, 투명성 보고서에 요구되는 '처리결과'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시자에 대한 제재 결과도 최소 보고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조사 결과, 90개의 사업자 중 오직 10개의 사업자만이 투명성 보고서에 해당 절차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물로 잘못 판단된 경우에 대한 게시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로, 이의제기 절차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채은 외, 2023)

라.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및 처리결과 통보의 신속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는 모두 '지체없이', '신속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 처리 시간에 대한 정보는 투명성 보고서의 최소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고 처리에 관여하는 인원 수, 24시간 대응 체계의 유무, 디지털성범죄물의 판단에 AI 등 기술적 도움의 사용 여부 등이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고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제5조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처리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신고 및 삭제 요청된 사건을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한 경우의 수, 통보 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수 및 그 사유에 대해 보고한 사업자는 없었다.

2022년 12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응답자 11명 중 모두가 삭제 요청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 생존자 중 일부는 신고 접수 확인 메일을 1년 후에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피해 생존자와 활동가들이 구글 신고 시스템에서 경험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14일 이내의 처리결과 통보는 신속한 처리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 보고서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가.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1호에 따르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 및 삭제 요청 기능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시 제4조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를 원하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 일환으로 신고 시스템 구축이 고시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이트 방문을 통해 신고 방식,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로, 신고서 작성 방식, 신고서 내용 등을 검토했다.[208]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92.2%)는 두 가지 이상의 신고 접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방식을 살펴보면, 약 80%의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앱에 자체 신고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체 신고 기능을 마련한 비율이 각각 60%와 75.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상 신고 기능을 게시물 주변에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체 신고 기능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 중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불법촬영물 신고 센터 기능을 마련했다. 그러나 1개의 사업자는 오직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다른 1개 사업자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제공하고 있다.

총 49개의 사업자가 게시물 근처와 고객센터에 모두 신고 기능을 구축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사유 분류체계를 두 위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다. 반면, 일부 해외 사업자는 게시물 근처에 있는 신고 기능에는 자체 커뮤니티 지침에 따른 신고 사유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접근성이 낮은 고객센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사유 분류체계를 적용하거나 웹폼 형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8) 2023년 10월 본 연구에서 각 사업자가 작성해서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10월 기준으로 5개의 사업자는 서비스 종료, 1개 사업자는 웹페이지 접속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209]

Facebook을 운영하는 Meta Platform Inc을 포함한 몇몇 해외 사업자들은 이원적인 신고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Facebook의 게시물 옆에 마련된 신고 기능을 클릭하면 다양한 신고 사유가 제시되지만, 여기에 디지털성범죄물이나 관련 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신고사유로는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가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나체 이미지 및 음란물', '성적 학대 또는 성매매 알선', '개인적인 사진 유포', '어린이가 관련됨' 등의 사유가 제시된다. 반면, 고객센터의 신고 기능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사유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 혹은 청소년 관련 성적행위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의 사유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체계와 관련된 Facebook의 또 다른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반영해 운영되는 고객센터의 신고기능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객센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반영한 별도의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배너나 팝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로 이동하더라도, 메뉴 → 도움말 및 지원 → 정책 및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 신고양식 등 몇 단계를 거쳐야 신고양식에 도달하는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고객센터의 신고체계는 구축의 의미가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210]

Facebook의 이원화된 신고체계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만을 보고하는 방식이 결합되어, Meta Platforms Inc의 신고건수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체계를 통합하여 수정한 Twitter[211]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높은 신고건수를

---

209) 국내 사업자와 해외 일부 사업자 중에는 게시물 근처에 있는 신고기능에는 전기사업법의 신고사유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고객센터의 신고기능에는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한 사업자도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게시판 근처의 신고기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210)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시행 이후 Facebook의 신고시스템의 문제점을 연구한 Wagner 외(2020)는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이 구현된 Facebook과 Twitter의 신고 체계를 통해 신고절차를 완료하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acebook은 더 많은 선택지와 가독성이 낮은 텍스트로 구성된 긴 신고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신고절차에 접근하는데 25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신고를 완료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11) Twitter는 자체 신고기능을 클릭한 후 제시되는 신고사유 항목에 '성적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였고, 이 중 한 항목을 클릭하면서 전기통사업법 시행령 상 별지서식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웹 폼(web form)으로 구현해 제공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시스템 운영 방식의 차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신고건수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Facebook의 신고체계 및 신고건수의 과소보고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시행 과정에서 Facebook의 신고체계가 문제가 되어, 이는 2020년 법 개정을 유발했다. Facebook이 자체 커뮤니티 표준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적용한 결과,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른 신고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콘텐츠에 대한 검토 과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Holt, 2019). 2019년 7월, 독일 연방 법무부는 Facebook이 2018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서 네트워크집행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은 Facebook 사태를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삭제한 콘텐츠 중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2)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신고자와 피해자가 신고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Dwivedi, 2022).

독일은 Facebook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삭제한 콘텐츠 중 범죄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경찰에 신고할 의무와 신고자 및 피해자가 플랫폼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Dwivedi, 2022).

한편, 게시물 주변에 신고 기능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구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웹하드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고객센터에서 별도의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센터가 홈페이지나 앱의 첫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19개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신고를 위한 배너나 팝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자들은 이미 게시물 근처에서 신고 기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사업자였다.

고객센터에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기능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객센터에 접근한 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신고가 가능하거나,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복잡한 신고 경로는 일반 이용자들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단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과소보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2022년 12월에 Google의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신고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신고 시스템이 온라인 상의 성착취 영상 확산에 기여한다고 지적하며, 2022년 12월 8일부터 구글에 대한 신고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탄원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나. 검색어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1) 검색 및 연관 검색어 제한 기능 구축

전기통신사업 제22조의5 제2항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하나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디지털성범죄물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디지털성범죄물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고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시스템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디지털성범죄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지 여부를 식별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이외에도 그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투명성 보고서 최소보고요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제1항 1호), 고시에 추가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무 중 계획에 제목, 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서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성범죄물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설정과 식별, 검색 결과를 제한

하는 내부 기준 및 방법 등이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검색 제한 기능 및 연관 검색어 표시 방지 기능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90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나머지 77개 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검색 제한어를 시스템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개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에 검색 제한어 목록을 공개하였고, 4개 사업자는 검색 제한어 DB에서 관리하는 검색 제한어의 구체적인 개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검색 제한어는 '몰카', '누드사진', '무료 야동사이트', '버닝썬'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과 같은 단어도 검색 제한어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색 제한어가 최신의 디지털성범죄물이나 관련 링크를 찾으려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법에 따라 검색 제한 및 연관 검색어 표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검색 시도 횟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검색 제한 및 연관 검색어 제한 조치가 신고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확산에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한 천혜선 외(202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가지 유형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필터링 기술 적용 및 게재제한조치'(55%)와는 응답률 격차가 상당히 있지만, '검색어 식별 및 검색제한조치'는 의무 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 중 2순위(38%)를 차지하였다. 검색어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중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검색 제한 관련 유해단어의 기준 및 범위 수립의 어려움'('매우 있음' 14%, '약간 있음' 14%)이었다. 개방형 질문에서도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검색 제한어 관련 유해단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천혜선 외, 2022).

2)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 메시지

이용자가 검색 제한어를 검색할 때 송출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송출하는지 조사하였다. 검색 기능을 포함한 77개 사업자 중 60개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송출 메시지를 분류한 결과, '검색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을 제시한 경우가 19.7%였으며, 검색 제한어임을 공지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34.8%였다. 반면, 검색 제한어임과 동시에 그 제한 사유를 공지한 경우는 66.0%에 달했다. 이러한 다양한 메시지 유형은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물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데 다르게 기여할 수 있다.

검색 제한어와 검색 제한 사유를 모두 공지한 경우, 세부 내용은 사업자마다 다양했다. 9개 사업자는 자체 제재방침이나 형사처벌 내용을 함께 공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검색 제한 사유의 제시 방식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디지털성범죄물의 사유를 제시한 송출 메시지는 많았으나,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검색 제한 사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성인영상물'이 허용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표 7-8]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단위: 개(%))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빈도	
'검색결과 없음'만 제시		13	19.7
검색 제한어라는 점을 공지하였으나, 검색제한 사유는 공지하지 않음		23	34.8
검색 제한어라는 점을 공지하였으나, 검색제한 사유는 공지하지 않고 제재 만 공지		1	1.5
검색 제한어라는 점과 검색제한 사유 함께 공지	불법촬영물 등	7	10.6
	불법촬영물 등 + 제재 및 처벌 안내	7	10.6
	누드	1	1.5
	불법성	1	1.5
	불법성인영상	1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게재제한 및 처벌 안내	2	3.0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빈도	
	아동성범죄	1	1.5
	유해성단어	6	7.5
	저작권/청소년보호	1	1.5
	청소년보호	3	4.5
계		66	100.0

다. 게시물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1) 필터링 기술의 적용

게시물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사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 제2항 3호). 이 조치는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 전후로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적 검열에 대한 법적 책임, 재정적 및 관리적 부담이 큰 의무로 여겨진다(조영기, 2023; 천혜선 외, 2022). 실제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후, 필터링 기술 적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전면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게시물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부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볼 수 있다.[212]

중소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 식별을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터링 기술의 호환성이나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 기술이나 상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성능평가를 거친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고시 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의 필터링 기술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하였다. 2022년 투명성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필

212) 2022년 투명성 보고서에는 3개 업체가 기존에 제공하던 업로드 기능을 제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터링 기술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업자가 정부가 개발한 공용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으며, 나머지 39개 사업자는 자체개발기술이나 상용기술을 사용하여 필터링 조치를 하였다. 특히, 해외 사업자와 국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용기술을 적용한 사업자는 주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였다..

2) 로그기록의 보관

필터링 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서비스 속도 저하 및 장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천혜선 외, 2022).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 운영의 불법촬영물 DB에 축적되는 정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부하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증가한 시스템 부하량 때문에 필터링 기술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상시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로그기록의 상세한 보관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 법과 고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로그기록은 게시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의 실효성과 필터링의 상시적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시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관해야 할 로그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게시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 보호에 핵심적인 조치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이 조치의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2년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주)스마트크루(특수부가통신사업자)만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취한 게재 제한 조치 건수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게재 제한 조치의 건수를 투명성 보고

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최소보고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조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취하는 필터링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나 기술적 개선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이용자 대상 사전적 경고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유통 방지 조치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치는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사전경고조치 문구(예시)]

>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사전경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한 사업자는 업로드 기능이 없어 사전경고 조치의 필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사전경고 문구의 위치와 가시성 분석을 위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게시판 상단, 홈페이지 하단, 게시글 작성 창 등에 경고 문구를 노출하거나, 팝업창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캠페인과 함께 사전경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Meta Platforms, Inc., Twitch, 주식회사 바비톡, Twitter, Inc., Teamblind Inc., 주식회사 유뷰소프트 등 6개 사업자는 사전경고 문구를 이용자 접근성이 낮은 페이지에 배치하여 가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고객센터, 이용 방법, 공지 사항 페이지 또는 디지털성범죄물 신고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에서 사전경고 문구를 포함시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요약 및 정책제언

김 지 선 · 김 민 지 · 홍 세 은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1. N번방 방지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

가. N번방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전 대책과의 차이점

1.1. 2017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의 탐지 및 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 변형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의 전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는〈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1.2. 2019년에는 불법음란물 유통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 카르텔을 해체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불법음란물 유통을 통한 부당 이익을 얻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N번방 사건 이후인 2020년 4월, 정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새로운 범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 전략에는 ‘디지털성범

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로서의 사회적 인식 확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17개의 중과제와 41개의 세부 과제가 마련되었다.

나. N번방 방지법과 후속 개정법률안의 쟁점

2.1. N번방 방지대책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온라인 그루밍, 촬영물 소지·구매·시청,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신설 및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2.2. 전방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 제고,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의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각 개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N번방 방지법의 법제화 추진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목적과 함께, 일부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법제화 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가. 디지털성범죄 입건건수

1.1.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건수는 2012년 4,772건에서 2021년 13,03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의 입건 증가율은 64.3%로, 이는 N번방 방지대책 발표 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256.8% 증가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2.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는 신설된 법 조항으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와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에 운영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중 구매 및 소지 피의자가 66.0%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 비율이 전체의 49.5%에 이르렀다. 이는 구매 및 소지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를 시사한다.

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2.1.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여성 범죄자 비율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미성년자 가해자의 비율도 높다. 허위영상물등편집·반포 범죄에서 미성년자 비율은 62.3%로 가장 높았고,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연령은 20세 이하가 많으며, 특히 10대 피해자 비율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일시적 관계나 낯선 사람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이 관찰된다.

다. 피해특성

3.1.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편집·합성,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유포불안, 기타가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유포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촬영물 유포 플랫폼으로는 소셜 미디어, 성인 사이트, 검색 엔진 등이 있으며, 웹하드에서의 유포는 줄고 성인 사이트에서의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웹하드 등록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 비율은 2022년에 증가했으며, 특히 연령 정보의 유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가.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및 운영

1.1. 2021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와 외국과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1,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 수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 기법이나 경험의 공유가 어렵고,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디지털성범죄에 중점을 둔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1.3. 관련 수사 절차 규정 및 지침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2.1. 2021년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점검, 인적 및 물적 자원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2.2.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승인 및 허가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지연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수사 실무자들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의 적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3.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 거래 및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장 신분 설정 및 어떤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2.4. 현재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해, 성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당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지,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공조수사

3.1.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국제 수사 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국제 공조,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3.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2022년 10월 11일, 우리나라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위해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 입법 필요성 검토 및 국내 절차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이다.

3.3. 수사 실무자들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1년 채택·승인된 제2 추가의정서와 2019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진행 중인 새로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이행 법률 정비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가. 2021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현황

1.1.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없음')와 수사중지(피의자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후, 나머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결정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처분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2. 2021년,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자 중 14.9%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8.7%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는 '혐의없음'으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접촉 성폭력범죄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불송치 비율은 낮았지만, 수사 중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1.3. 디지털성범죄 중 허위영상물편집·반포는 검찰 송치 비율이 56.8%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수사중지' 비율이 28.8%로 다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1.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주로 '혐의없음'으로 인해 내려진 점과, 접촉 성폭력 범죄에 비해 '수사중지' 비율이 더 높은 점(특히 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서 약 3건 중 1건)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특히 익명성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2021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2.1. 2021년 검찰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사건 중 31.4%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공판 청구 결정이 전체 처분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약식재판 청구 비율인 10.5%보다 높았다. 접촉 성폭력 범죄에 비해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약식재판 청구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2.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는 상습촬영물반포가 기소율이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촬영물이용협박과 촬영물이용강요의 기소율이 각각 52.3%와 46.7%로 나타났다. 반면, 촬영물소지 범죄는 16.3%의 기소율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기소율은 30%대에 머물렀으며, 상습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38.5%와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타관송치와 소년부송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기소율이 높은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은 약식재판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율과 구공판 비율이 동일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에서는 약식재판 청구 비율이 매우 낮았다. 촬영물 소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서는 기소율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었다.

다. 방지대책 이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의 변화 양상

3.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검찰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소지 등의 범죄에도 적용되며, 특히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기소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작·배포 범죄의 경우 '기소중지' 비율이 높았고, 소지 등의 범죄는 '혐의없음'과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3.2.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2018년과 2020년에 검찰의 강화된 사건처리 지침 발표·시행으로 주요 정책 대상이 되었지만,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높았으며, 지난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범죄의 불기소 사유 중 '혐의없음'의 비율이 높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신설된 촬영물소지 범죄의 경우 기소율보다 불기소율이 더 높았으나, 2021년에는 불기소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비율은 변화가 없고, 경찰의 보완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기소율 감소의 의미를 상쇄할 수 있다.

5.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가.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추이

1.1.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신상정보등록 센터의 자료와 2021년 판결문 전수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 내린 선고 유형, 징역형량, 보안처분 판결 추이를 분석했다.

1.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3년에는 벌금형 비율이 75.0%였으나 2021년에는 19.1%로 감소했고,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16.6%에서 2021년 50.3%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16년까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지만, 2017년부터 벌금형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N번방 대책 이후에는 집행유예(50.0%)가 징역형(48.3%)보다 약간 높았다.

1.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법정형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징역형량은 2017년 32.6개월에서 2021년 32.2개월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38.7개월에서 2021년 60.7개월로 상승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N번방 대책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1.4. 2020년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 비율이 2018년 6.3%에서 2021년 79.5%로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비율도 2018년 10.8%에서 2021년 55.2%로 크게 증가했다.

1.5.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증가했으며(2019년 3.6%에서 2021년 4.6%),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2019년 3.9%에서 2021년 9.5%).

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2.1.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성범죄 1심 선고사건의 판결문 전수 조사 결과,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은 전체의 17.7%였으며, 주된 사유는 양형기준제 실시 전 기소된 사건과 상상적 경합사건 등이었다.

2.2. 양형위원회는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이 명시적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고형량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경우 양형기준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양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양형기준제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률은 55.9%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 따라 적용률의 편차가 컸으며, 단독 재판부에서의 적용률은 24.6%인 반면 합의 재판부에서는 92.6%로 3배 이상 높았다.

2.3.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를 하나 이상 확정한 경우는 전체의 46.7%였다. 특별양형인자 확정 시, 가중인자보다 감경인자를 고려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대부분 한 개의 특별양형인자만 고려되었다. 가장 많이 고려된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전체 특별양형인자 중 34.6%를 차지하였고, 판결문의 41.8%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었다. 촬영물이용협박의 경우 83.8%, 촬영물반포의 경우 45.0%에서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었다.

2.4. 특별양형인자를 하나 이상 확정한 판결문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점과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평가원칙에서 행위자/기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다른 행위인자의 감경요소와 함께 있을 때,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평가원칙 등이 56.4%의 판결문에서 권고영역이 '기본영역'으로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 양형기준 이탈률은 약 17%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형량이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반포 범죄의 하향 이탈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판매 범죄의 하향 이탈률도 57.1%로 높았다.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권고형량 하향이탈 판결문의 약 21%를 차지했다.

2.6. 권고형량을 벗어난 경우, 모든 판결문은 이탈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권고형량 이탈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은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방식과 권고형량 이탈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유만을 기재하는 방식이 있었다. 전자는 양형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후자는 권고형량 범위 이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이미 권고형량 범위 결정 시 고려된 특별양형인자를 이탈 사유로 재차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중평가의 우려가 있었다.

2.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범죄유형과 권고영역에 관계없이 상당수 판결문의 선고형량이 권고형량의 하한 부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3.1.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경우 선고형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의 심각성과 같은 영향 요인을 통제했을 때도 양형기준의 적용은 선고형량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징역형량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양형기준 적용된 판결이 미적용 판결보다 징역형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양형기준 적용 여부는 징역형량의 편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양형기준제가 판결 간 형량 편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고 대부분 양형기준이 적용된 경우라 분석사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결과는 추후 더 많은 사례를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3.3. 양형기준 적용이 집행유예 선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3.4.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분석 결과,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에서는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

다. 반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등', '부양해야 할 가족'과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 피해자 의사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 N번방 방지대책의 효과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1.1. 지원기관 종사자와 방심위 실무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 측면에서는 N번방 방지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1.2. 최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 중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 등에서 유포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취하는 접속차단 조치 또한 VPN 등의 사용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및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나. 피해자 지원체계

2.1.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 센터의 업무 중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은 중앙센터와, 밀착지원 업무는 지역특화상담소와 중복되어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그러나 지금은 기관 간 통일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업무 배분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3.1. 삭제지원이나 유포 모니터링 등 장기근속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음에도, 많은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연말과 연초에 심한 업무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비정규 지원 인력의 잦은 이직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새로운 담당자와 다시 상담하고 의논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비 내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4.1.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유포까지 이어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고, 유포 피해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와 피해 대처방안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2.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문화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가. 투명성 보고서의 의의

1.1.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은 기존의 사후적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전적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2. 투명성 보고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하는 문서로,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를 자발적으로 작성·공개해왔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의 한계와 불법유해정보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법적 강제를 통한 투명성 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3.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사전조치의무 대상자가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투명성 보고서에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신고·삭제 요청 횟수 및 처리결과, 유통 방지 절차, 책임자 배치, 내부 교육 실시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제출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을 평가하였다.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실제 플랫폼 방문을 통한 검증 작업도 병행하였다.

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현황과 특성

2.1. 2022년의 전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90개로, 2021년에 비해 3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고,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웹툰/웹소설 사업자는 없었다.

2.2.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매출액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에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에 있어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국 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업자도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인 Telegram은 사적 대화방의 특성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반면,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이버 비공개카페, 밴드와 같이 폐쇄형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었다.

2.4. 국내에 등록된 대규모 일반부가통신사업자만 사전조치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플랫폼과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로 인한 풍선효과의 우려가 있다.

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 접수 및 처리

3.1. 2022년 한 해 동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접수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은 총 281,931건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이용자 및 피해자에 의한 신고였다. 2022년의 신고·삭제요청건수는 2021년 대비 1,365.5%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플랫폼의 신고기능 구축 완료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2. 서비스 유형별로는 소셜미디어가 신고·삭제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검색서비스가 많았다. 웹하드의 ·삭제요청 건수는 특별 관리대상 지정 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3.3. 접수된 신고·삭제요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사업자의 비율은 2021년 67.8%에서 2022년 71.3%로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삭제요청건수의 대부분은 상위 10개 사업자가 차지했다.

3.4. 신고·삭제요청건수가 많은 상위 그룹에는 주로 국제적인 해외 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사업자 간의 신고·삭제요청건수의 격차는 매우 컸다. 이는

신고시스템 구축 방식과 신고건수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3.4.1.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발효 이전부터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 신고 및 삭제시스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시행된 국내법에 대한 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대응은 1) 국내법이 요구하는 신고시스템을 기존의 자체 신고시스템에 통합하고, 고객센터 등에도 별도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와 2) 기존의 자체 신고시스템과 내부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법 요구에 맞춰 별도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체 신고 및 삭제시스템을 우선하며, 별도의 신고시스템을 고객센터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은 위치에 배치해 국내법을 회피하고, 신고건수를 과소 보고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사업자가 정형화된 서식을 통해 신고삭제요청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에서 규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대부분 2개 이상의 신고기능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모든 신고기능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을 웹폼 등으로 구현하지 않은 경우, 전체 신고건수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서식을 통해 신고 된 건수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에 신고건수를 공개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신고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조사결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중 61.1%가 전기통신사업법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한 경우만 집계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집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3.5. 2022년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은 접수된 신고 접수건 중 70.2%를 처리하였고, 이 중 대다수인 99.8%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삭제 또는 접속차단되었다. 신고 및 삭제요청 된 대부분의 게시물이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당해 연도에 신고 및 삭제요청 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건수와 그 사유, 2) 신고사유(디지털

성범죄물 유형)별 처리결과, 3) 사업자가 게시물을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하는 기준과 처리절차, 4) 신고 및 삭제요청 된 게시물 처리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5) 14일 이내 신고자 등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건수 및 기한 초과 사유, 6) 신고 및 삭제요청 된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시자에 대한 제재유형별 건수, 7) 게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제공 여부 및 이의제기건수 등. 현재 대부분의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세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4.1. [신고기능 구축 및 운영] 모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24시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접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고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식은 사업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4.1.1. 국내 사업자 간의 차이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신고시스템 구축 방식(예: 게시물 기능이 없는 웹하드 사업자)과 신고서 작성 방식(웹폼 형식 또는 이메일 제출) 등에서 나타났다.

4.1.2.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자는 게시물 근처와 고객센터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국내법에 맞게 통합하였는지, 여러 신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 중 어디에 국내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신고건수에서 차이를 초래하였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외 사업자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자체 정책을 우선시하여 신고건수가 적었다.

4.1.3. 국내외 사업자 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의 차이는 이용자의 신고 접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신고시스템이 복잡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면 이용자들이 신고를 완료하기 어려워 과소 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검색어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은 검색어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를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검색과 유포를 방지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일관되게 검색 제한 기능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색 제한어 목록을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4.2.1.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해 설정된 검색 제한어에는 '몰카', '누드사진', 그리고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검색 제한어가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물의 검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4.2.2. 검색 제한 시 표시되는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검색 결과 없음'을 공지하는 것부터, 검색 제한 사유와 관련된 사업자의 자체 제재 방침이나 형사 처벌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제한어를 검색한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검색 제한 사유로 사용하는 용어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는 용어(예: 청소년보호, 저작권 보호)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용어(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3. [게시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를 분석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여부를 식별하고 이의 게재를 제한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4.3.1. 일부 사업자는 필터링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재정적 및 관리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제거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정부는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자체 개발 또는 상용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필터링 기술 적용에 따른 서비스 속도 저하나 장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3. 필터링 기술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그기록의 상세한 보관이 요구된다. 현재 로그기록에 대한 규정은 간단하여, 보관해야 할 로그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4.3.4.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게시물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의 건수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이용자 대상 사전 경고조치] 업로드 기능을 갖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게시판 상단, 홈페이지, 또는 게시글 작성 창 등에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경고 문구를 노출함으로써, 그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들이 경고 문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 정책제언

1. 디지털성범죄 수사

가.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

1) 신분비공개수사에서 사후승인제도 도입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착수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예외적 사후 허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반해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신분

위장수사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사후승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법 당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은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이 경찰청 내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로 도입된 본 수사기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쉽게 승인할 수는 없으며,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신분비공개수사에 즉시 착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승인 이후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없거나 사전 승인 절차 동안 수사 단서를 놓치고 대응조차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애초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이 도입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적어도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도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사후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213] 즉, 신분비공개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단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한 후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일정 시간 내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에 대한 규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를 참고하여 제25조의4에 함께 규정하거나 별도 개별 조문 신설을 통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제1항으로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와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

213)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6면; 추효정, 2022,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10면 등 참고.

2) 수사특례규정 적용범위 확대

청소년성보호법은 2021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대상으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수사 특례 조항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통계[214]('22. 3. 1. ~ 10. 31.)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20살 이상의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고,[215] 실제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는 결국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고, 다만 법제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내지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단점, 추가 대상 범죄의 특성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발의안[216]만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형사소송법에 수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제안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국제공조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로 국내 등록된 사업자들의 서비스플랫폼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는 많이 감소했으나, 유포 범죄가 해외에 서버를

214)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694명 검거 (구속 99명)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경찰청 보도자료, 2022.11.16.).

215)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678명 중 20대 이상은 420명(61.9%) [10대 258명(38.1%), 20대 251명(37%), 30대 129명(19%), 40대 이상 40명(5.9%)]으로 확인되었다.

216)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1인), 제안일자 2021.11.18.

둔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부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지만, 여전히 등록된 플랫폼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불법사이트나 다크넷으로 유인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217](오선희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여전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경찰의 위장수사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이후 디지털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수사로 입건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 중 상당부분을 '혐의없음'이 차지하고 있고,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비율도 높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중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비율도 높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격차도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은 사례가 많은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서류를 입수해 분석한 김소라(2022)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찰의 수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운영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피의자의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이 많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국제협약에 기반하지 않은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공조요청은 강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건은 협약에 기반한 국제공조수사임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의 수사 공조를 위해 학계 및 실무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가입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물론 현재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개별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비롯하여

---

217) 오선희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2021. 12. 13.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국제 공조,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의 공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국가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설령,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 협조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비추어 대응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신속하게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가입한 국가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2021년 채택·승인된 제2 추가의정서를 비롯하여 2019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등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되,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의견 정리를 통해 국내 이행 법제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 채택·승인된 제2 추가의정서의 및 2019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이를 국내 법제 정비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의 별도 양자 협정 체결 및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별 국제 공조 체계의 확립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 미성년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진행 상황 통지 절차 마련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체계는 형사 절차상 알 권리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하고, 나아가 개별 사안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 등 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체계는 ⅰ) 수사진행상황의 알 권리의 주체가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그 통지가 행해지도록 하되, 충분한 알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알 권리를 대신 실현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대상자로 추가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게 약 2~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의 특성 및 수사진행상황이 적시에, 주기적으로 통지될 필요가 있다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ⅰ) 미성년자 본인 외 추가 통지대상권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ⅱ) 통지대상권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불명확한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ⅲ)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추가 통지는 부차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보호 의무를 촉구하고, 이후 추가적인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ⅳ) 한편으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워질수록 수사진행상황의 알 권리 주체로서 온전히 그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218]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의사, 당사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수사 실무를 반영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의 통지 여부를 달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와 일정 범위에 있는 자 및 신뢰관계있는 자를 통지대상권자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라 생각되고,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되,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통지대상권자를 결정하는 것이다.[219] 신뢰 관계 있는 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상정해 볼 때, 통지의 목적인 미성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거나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대상권자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는 대개 아동의 이익 및 의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받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대신하는 자로서 적절한 판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인지 별도의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개별 사안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220] 미성년자 본인 외 통지대상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

218) 유사한 의견으로 김민지, 2023,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 방향”, 한국피해자학회 제31권제1호, 127~129면 참고.
219) 김민지, 2023,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 방향”, 한국피해자학회 제31권제1호, 129면.
220) 김민지, 2023,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 방향”,

단순히 미성년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추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나아가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처분의 재설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이 N번방 대책 이후 변화되었다. 기존에 벌금형이 주를 이루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집행유예로, 그리고 집행유예가 주를 이루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징역형으로 주된 선고유형이 변화했다. 눈에 띄는 다른 변화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오프라인에서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로 접촉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 수단의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즉 이름, 주소, 사진 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 예방에 유용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거주지 여부와 등록 정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프라인 중심의 범죄예방 접근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를 디지털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인터넷 사용 제한,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검사 응할 것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은 국립과학수사원의 협조를 받아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221] 또한, 미국에

한국피해자학회 제31권제1호, 129면 참고.

221) 이와 같은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내부자료에서 발췌함.

서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에 따라, 범죄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사용된 경우, 법원은 인터넷 사용 제한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집행된다(박미랑·이형섭, 2023).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소유하거나 소지한 디지털 기기 관련 정보(예: 디지털 기기의 종류, 온라인상의 사용자 계정 정보 등)를 신상정보등록대상 정보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확대 등록은 정기적인 점검 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하여 등록사항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이나 채팅 앱 및 온라인 플랫폼 가입 및 활동 제한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디지털성범죄자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개선

1)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방식 표준화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즉 양형기준 이탈률이 약 17%에 달한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양형 이유를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권고형량 이탈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양형 이유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권고형량 이탈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렵고, 향후 양형기준의 개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 이탈 사유가 이미 권고형량 범위 결정에 사용된 양형인자인 경우 중복 평가의 우려도 있다.

양형기준의 이탈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이유의 이탈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 '처벌불원'의 기준 명확화

양형과정에서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뿐만 아니라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로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을 고려할 경우, 이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인 관계이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지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 수가 적으며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서술식 양형 이유에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기재된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정된 피해자 중 한 명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다른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더라도 이를 고려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감경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처벌불원'이 양형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양형결정에 미치는 그 영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낸다.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피해자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을 때의 상황, 확인되지 않은 설명 불상의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절차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형사합의서가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형사합의 시 체크리스트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비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영미(2022)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형사합의 시 체크리스트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치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양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범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양형인자 개발을 통한 양형의 적정성 확보

양형과정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중 약 47%에서만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되었으며, 범죄유형별로 이들 인자의 고려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된 경우, 주로 '처벌 불원'과 같은 감경요인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범행'과 같은 가중요인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세부 범죄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제외한 현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디지털성범죄를 4개 대유형 및 15개 소유형으로 구분하지만,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은 대체로 유사하며 성폭력범죄 양형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촬영물소지, 촬영물반포 등 특정 범죄유형에서는 특별양형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90%를 넘어,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양형인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양형기준 제정 과정과 비교하여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특별양형요인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법관이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조사할 여건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특별양형요인을 면밀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피해자 지원

가.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즉 여성가족부 사업을 통한 지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의 역할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지원이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는 삭제지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효율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전체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지자체 센터들과 여성가족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는 서로 다른 규정 및 체계, 매뉴얼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지자체 센터가 4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중앙센터나 다른 지자체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운영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지원 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통일된 기준과 규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컨트롤 타워는 피해자 지원 체계 전반을 통솔하고,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유관기관들과 시스템을 연동하여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또는 법무부 등 중앙 부처가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통솔하거나, 피해자 지원기관 중 한 곳을 중앙 기관으로 지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체계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범정부를 아우르는 업무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최희경 외, 2021: 246-247). 컨트롤 타워가 정해진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모든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국제 공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후에는 연동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피해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 인적자원 관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 중 하나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의 부족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히 삭제지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관련된 경력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신입직원 교육 과정이 길고 소모적이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육 이후 이탈하는 신입직원이 있고 많은 정원이 기간제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나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오정용·박혜현, 2022:50). 기관마다 세부적인 계약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인원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말부터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는 연초 사이에 약 3개월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피해자들은 새로운 담당자에게 배정되어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을 일부 줄이더라도 정규직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배정된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유입이 저해되고 있음을 고려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의 폭력범죄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유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인재 유입과 동시에 기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종사자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세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력 및 수준별로 별도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등 보수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다.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인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으며(최희경 외, 2021:132; 김홍미리, 2021:84-86) 이러

한 현상은 아동·청소년들이 불법촬영과 유포 등의 디지털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홍미리, 2021:41-45). 따라서 지역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전반과 디지털성범죄 및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정도희, 2021:220; 최희경 외, 2021:241). 또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신고가 대부분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최희경 외, 2021:136) 보호자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최근 온라인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주혜선 외, 2022:1-2)[222] 현재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 폭력예방교육, 즉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최희경 외, 2021:249).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추가하거나 4대 폭력예방교육 내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문화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처방안을 교육하여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가. 신고 및 처리대상 불법콘텐츠의 범위 확대

1)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책임이 강화되었고, 제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지원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는 이러한 조치가 디지털성범죄물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불법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정책은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2018년 시행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규제정책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 전 의무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222) 권선미, 2023.10.16., "'n번방 방지법' 2년…디지털성범죄 더 늘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1053(최종검색: 2023.11.14.).

적용하도록 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유해콘텐츠의 범위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이 화상, 영상에 제한되어 있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포함되는 불법 정보에는 화상이나 영상 이외에도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포함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음란행위에 말, 음향, 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치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성 판단을 위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쟁점과 연결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성취물 제작의 대부분이 인터넷상의 성적 유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권인숙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해당 대화가 삭제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검색 제한과 필터링은 인간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기 위한 AI 필터링 기술 개발에 이르렀다(Anderson et al., 2019; Edwards et al.,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입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의 신상관련 정보

불법콘텐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항 중의 하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피해영상물이 신상정보 혹은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댓글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 강화된 법률에 의해 피해영상물은 삭제되지만, 신상정보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댓글은 그대로 남아 피해자가 완전히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추가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박성혜, 2023).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24조 제2항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 근거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정보를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최종선, 202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조치 대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정보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삭제된다면, 피해자의 잊혀 질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는 신고 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사전조치의무사업자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어,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건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며,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신고 및 삭제 요청 건수가 4.5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 중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의해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때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은 보관하지 않고, 신고 및 삭제 요청과 관련된 기록만 보관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고에 의한 디지털성범죄물은 경찰 수사에 단서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이미정 외, 2021), 디지털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면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천혜선 외, 2022).

이용자 등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물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CyberTipline에 신고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서는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국가범죄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Dwivedi, 2022).

이러한 외국의 입법 예를 참고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고 접수된 불법 촬영물을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고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또한, 단계적인 시행방식을 채택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외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의 신고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

투명성 보고서 분석 결과,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들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필터링 기술의 적용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장애 등의 위험으로 사업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은 이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필터링 기술이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 내에서 발견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을 신고하도록 하거나, 제한된 검색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게시물 게시 전의 사전경고 메시지 등은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과 이용자의 불법 행동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이행 여부보다는 이행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을 평가해,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및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기능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기능과의 통합 여부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근거해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개의 신고 기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접근성이 높고, 많은 이용자가 활용하는 신고 기능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전부터 자체적인 신고 기능과 게시물 처리 지침을 갖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자체 신고 기능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하는 신고 기능을 구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서비스 특성상 게시물이나 댓글 부근에 신고 기능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 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팝업이나 배너를 통해 공지하는 등 신고 경로를 단축하고 신고서 작성을 웹폼 형식으로 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구축은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신고 및 삭제 요청 건수를 집계할 때의 기준에 대해 점검하고, 명확한 집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고 기능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신고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신고된 건수의 일부만을 보고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집계 기준 설정 시 모든 신고건수를 집계하여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가 검색 제한어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교육적 효과 및 경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서 조사 결과, 일부 사례에서는 검색 제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Prichard 외(2021, 2022)의 연구에 따르면, 경고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제시하지 않을 때보다 효과가 있고, 메시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Prichard et al, 2021; Prichard et al, 2022).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메시지를 고안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항목들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및 감독이 요구된다.

라. 투명성 보고서의 최소보고요건 확대

투명성 보고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모든 대상 사업자가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내용으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효과가 부족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보고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은 신고 및 삭제 요청된 게시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이러한 '신속성'과 관련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피해자 및 신고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 및 신고자에게의 통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접수부터 불법콘텐츠가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별로 신고건수를 집계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신고 접수 후 삭제·차단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 된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물로 판단된 경우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한 게시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정보를 투명성 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처리결과'를 포함하는 문언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을 게시한 게시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부 지침을 투명성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으나, 제재 수위의 다양성과 상습성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집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통계와 조치 이행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규제 감독기관인 Ofcom이 연 1회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고채은 외, 2023; 천혜선 외, 2022),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나래. 2022,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36(4), 251-284.

강나래·이상진. 2022,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36(4).

강은영·김혜정·황태정. 20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희영.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과제”, 「이화젠더법학」 12(2), 45-93.

강희영·김여진·심자영.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시민인식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찰청·군산대학교. 2022,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위장신분 설정·구축에 대한 연구”.

고채은·박아란. 2023, “디지털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22(2), 69-113.

고채은·박아란. 2023, “디지털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비판적 고찰”, 언론과법, 22(2), 69-113.

구길모. 2022, “비동의 촬영· 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법학논총」, 46(3), 147-18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기광도·김혜정, “횡령배임죄에 있어 형의 가중·감경 현황과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3449-382.

김동준. 2022,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두상. 20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3), 23-44.

_____. 2021,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9(1), 57-74.

_____. 2022,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68, 153-184.

김민수. 2023,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1(64).

김민아·정서린·손제희·김혜경, 2022,「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민지. 2023, “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방향”, 한국피해자학회, 31(1).

김병수. 2012, “양형자료의 조사와 평가”, 「외법논집」, 36(1), 289-307.

김보라·임수진. 2022, “사이버성폭력수사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근거한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지식경영연구」, 23(4), 43-67.

김성천. 2022, “디지털성범죄 데이터 유통 억제”, 「중앙법학」, 24(3), 89-118.

김소라. 2021, “검찰의 디지털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4(1), 111-147.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윤정. 2018,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1), 41-66.

김안나. 2021,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김여진. 2020,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본 온라인 그루밍의 실태와 해결방향”, 「젠더법학」, 12(1), 63-70.

김영미, 2019, “디지털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양형연구회 제3차 심포지엄.

김은혜. 2021,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정책변화 연구-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한. 2021,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8, 439-464.

김재한. 2022, “불법촬영물의 제재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34(3), 163-190.

김정연. 2021,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33(2), 121-150.

김정혜. 2016, “입법적 변화가 법원 판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장애인 성폭력 처벌 법제의 개정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40(2), 429-454.

_____. 2020, “텔레그램 ‘n번방’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53, 1-9.

김종구. 2021,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8, 41-64.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2020,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지선·홍영오·김낭희. 2022, “여성폭력통계”, 여성가족부.

김택수. 2016,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4(1).

김학웅. 2019.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KISO 저널, 34, 45-48.

김한균. 2017,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

김현경. 2022,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적합 유형에 대한 검토”, 법조, 71(6), 358-385.

김혜정, 2018,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법조, 127-166.

김혜정, 2020,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김혜진. 2020, “해외 주요국 디지털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8), 85-95.

김홍미리. 2022,「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희정·박광민. 2020,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성균관법학」, 32(4), 237-276.

대검찰청, 2013, “양형백서-판결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류효재. 2023, “음란물 유포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명성준.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의 국가별 비교 연구: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5(4), 29-49.

박다온·이관희. 2020,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CSEM) 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5(3), 177-207.

박미랑 · 이형섭, 2023, 미국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활동 제한 법률과 그 함의‘, 교정연구, 33(1), 69-92.

박복순. 2022, “젠더폭력 실태와 양형기준 정비 방향: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13(2), 141-177.

박성혜. 2023.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현안 및 제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박상민. 2022,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법조」, 71(1), 310-355.

박웅신. 2019,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9(3), 51-83.

박재성. 2021,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5호.

박찬걸. 202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2021. 9. 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5(1), 87-113.

박찬미. 2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31-63.

박희영·최호진·최성진. 2015,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방송통신 심의동향, 제2019 2호.

_____. 2022, 「2021 방송통신심의 연감」.

_____. 2023, 「2022 방송통신심의 연감」.

_____. 202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배상균. 2019,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토-딥페이크 (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3(3), 169-187.

_____. 2021,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외법논집, 45(4), 81-99.

백소윤, 2020, “디지털성폭력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백창원·노승국. 2020, “성범죄 사건에 대한 포털 뉴스 기사 및 사용자 의견 데이터 분석: n 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3), 41-72.

법무부. 2022, “디지털성범죄등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법무행정자료.

법제처. 2023, 디지털성범죄.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59-95.

서승희·최진응·조주은. 2018,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1-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석희진. 2020, "디지털 기반으로 한 성착취 가해자 양상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손성경. 202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영지. 2021,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 채팅앱 내 성착취 가해자 대화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2: 391-427.

신상현. 2020,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고려법학」, 97, 157-192.

_____. 2021, “도촬행위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70, 80-117.

신용녀. 2023, “불법촬영물 검색 방지를 위한 시험 세트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3(3), 27-33.

신용우. 2020,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7호.

신원부·이원희. 2020, “아동음란물 전담조직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2(4), 263-286.

신지혜. 20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 다 271608 판결”, 법조, 68(4), 763-806.

신현주·김미선. 2021, “청소년의 성 의식과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연구-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4(1), 195-214.

신현주. 2019, “아동·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121-142.

_____. 2020,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광, 115, 83-111.

신혜진. 20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형사법의 신동향, 72, 187-225.

안갑철. 2021,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495, 85-102.

안성훈, 최지선, 장진환, 김병배, 조영오, 김혜경. 2022,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II)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재경·김세령·한민경.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2), 229-251.

안재열·이상진. 2022,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3), 85-107.

양형위원회. 2021, 연간보고서.

_____. 2022, 양형기준해설.

엄하나·유영미.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2(3), 2893-2906.

여인권·이경렬. 2014,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연구」, 25(3), 205-230.

오상지. 2022,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치안정책리뷰, 제76호.

오세연. 2022, “메타버스 기반 성범죄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O’Connell 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진행단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22, 78-79.

오세연·김학범. 2022,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융합과학회지」, 11(11), 203-215.

오승종. 2020,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1(2), 1-34.

오정용·박혜현.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원광법학」, 38(2), 31-58.

유승희, 2020,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언”:, 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유혜진· 박아현· 박윤지· 이지원· 주다빈· 최혜인, · 정두원. 2022,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RNN 기반 취약군 선별 체계 연구”,「Journal of Digital Forensics」, 3(16), 1.

윤지영. 2020,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형사정책」, 32(2), 41-73.

이건호. 2018, “디지털 영상이용 성폭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소위 ‘리벤지 포르노’ 논의의 성편향성과 형법”,「경찰법연구」, 16(2), 163-182.

이경렬·하건우. 2018,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19(4).

이명성·이상진. 2021, “ [성폭력처벌법] 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193-226.

이미정·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동제연·윤덕연·배수진. 2021,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여정. 2022,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성범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이완희·황성현. 2018,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범죄이론적 분석”,「한국경찰학회보」, 20(6), 249-270.

이원상. 2022, “온라인 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대상으로”,「비교형사법연구」, 24(2), 183-212.

이유민·이민규. 2021, “디지털성범죄사건보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2(8), 1337-1350.
이윤정. 2019,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성범죄", 「강원법학」, 56, 169-206.
이재영. 2022, "ICT 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1(11), 231-239.
이재영·김용근. 2019,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루밍 성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8(4), 241-249.
이재일. 2015,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ISO저널, 20, 23-28.
이재진. 2019,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 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민·김승원·김승혜·민지윤·배민경·이수정.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캐나다·호주의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법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1(2), 29-59.
이종관·박창준·이지은·정동주·최헌영. 2021,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방안", 법무법인(유) 세종, 방송통신위원회.
이종현·강동욱. 2021,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32(3), 47-74.
이준복. 2022,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2(1), 159-186.
이지우·이경렬. 2023,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CLOUD Act와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34(3).
이현정. 2014,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25(2), 267-335.
이형주. 2022,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쟁점과 과제 - 디지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성범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Digital Inclusion Report」, 4.
이혜정·김수아·박진아. 2022,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디지털 세계의 폭력적 젠더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한국여성학」, 38(3), 73-108.
이흔재. 2021, "디지털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3(3), 305-339.

임석순. 2020,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이른바 ‘n 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 (NetzDG) 의 비교를 중점으로”, 「고려법학」, 98, 97-132.

임효준. 2023,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표현규제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의 탐색-최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22(1), 251-296.

장근영.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대응”,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발표」, 2021(1), 37-49.

장근영·임지연.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다혜· 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윤정. 2019,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연구보고서, 제1559호.

_____. 2020,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161호.

_____. 2020,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연구보고서, 제1690호.

_____. 2020,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37호.

전현욱 외. 2015,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정도희. 2021, “아동·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소년보호연구」, 34(2), 207-227.

정숙희. 2019,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62, 69-104.

정연주. 2022,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113(2), 199-227.

정재준. 2013,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부다페스트(Budapest) 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 형사법의 신동향, 제39호.

정태진·이광민. 2019,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타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경찰학논총, 14(2).

조영기. 2023,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과제”, KISO JOURNAL, 50, 1-6.

조주은. 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25-42.

조주은·최진응. 2018,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7호.

조춘범·이현. 2020,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측요인 탐색”, 「인문사회 21」, 11(6), 3127-3141.

주지연·진의현·김기범. 2021,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5(2), 124-136.

주혜선·이나빈·김보경·박도담.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종사자 정신건강 진단·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유미. 2022, “미국에서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15(1), 173-210.

차진아. 2013,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

천혜선·윤금낭·노창희·이수연. 2022,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최대현·장응혁. 2022,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1(1).

최소윤·한민경. 2020, “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145-168.

최용성·곽대훈. 2020,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2), 221-248.

최이문·안재경. 2020, “조직적 디지털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3), 185-210.

최종선. 2022,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63, 193-222.

최준혁. 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

구」, 23(2), 177-208.

_____. 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3(2).

최진응. 2018,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11-24.

_____. 2020,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49호.

최호진. 2004, “인터넷상의 음란물유포에 대한 범죄가담형태”, 「비교형사법연구」, 6(1), 51-72.

최호진· 허정현. 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44(1), 239-268.

최희경·강정은·김구슬·김진·김희진·박숙란·조진경. 2021,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추효정. 2022,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제76호.

탁희성. 2010,「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V)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_____. 2022, 2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_____. 2023,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_____.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한숙희·정희진·조아미. 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62, 145-171.

허경미. 2021,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착취 처벌 관련 쟁점”, 「소년보호연구」, 34(2), 271-294.

허진성. 202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 차단의무에 대한 연구-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19(2), 43-76.

홍승표·이훈재. 2022,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포렌식 기술 현황”,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0(2), 267-268.

홍영선·권헌영. 2021,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35(2), 175-221.

황만성. 20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3(1), 107-129.

[국외문헌]

Anderson, P., Zuo, Z., Yang, Z, & Qu,Y, 2019. An Intelligent Online Grooming Detection System Using AI Technologies,Conference Paper.

Dwivedi, R. 2022, “WILL THE DSA FIX IT? A critical analysis of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Master's thesis).

Echikson, W.·Knodt, O. 2018, “Germany’s NetzDG: A key test for combatting online hate.”, CEPS Research Reports No. 2018/09, November 2018.

Edwards, G., Christensen, L. S:. Rayment-McHugh, S. and Jones, C. 2021. “Cyber stragies used to combat child sexual abuse material”, Trends & Issue.

Harling, A. S.·Henesy, D.·Simmance, E. 2023, “Transparency Reporting: The UK Regulatory Perspective.”, Journal of Online Trust and Safety, 1(5).

Heldt, A. P. 2019, “Reading between the lines and the numbers: an analysis of the first NetzDG reports.”, Internet Policy Review, 8(2).

Hemmert-Halswick, M. 2021, “Lessons learned from the first years with the NetzDG. In: Perspectives on Platform Regulation.”,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 Co. KG, 415-432.

Jiménez Durán, R.·Müller, K.·Schwarz, C. 2023, “The Effect of Content Moderation on Online and Offline Hate: Evidence from Germany's NetzDG.”.

MacCarthy, M. 2020,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digital social media platforms: Recommendations for policy makers and industry.”, Transatlantic Working Group.

Park, J. 2020,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mpact on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EU internet content regulation: The Case of "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 in Germany", (Master's thesis, Potsdam: Universitätsverlag Potsdam).

Parsons, C. 2019, "The (in) effectiveness of voluntarily produced transparency reports.", Business & Society, 58(1), 103-131.

Prichard J, Scanlan J, Watters P, Wortley R, Hunn C, Garrett E, 2022, 'Online messages to reduce users' engagement with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for the rethink Chatbot', University of Tasmania, Hobart.

Prichard, J., Wortley, R., Watters, P. A., Spiranovic, C., Hunn, C., & Krone, T. 2021. Effects of Automated Messages on Internet Users Attempting to Access "Barely Legal" Pornography. Sexual Abuse

Pohlmann, J.·Barbaresi, A.·Leinen, P. 2023, "Platform regulation and "overblocking"—The NetzDG discourse in Germany.", Communications, 48(3), 395-419.

Tworek, H.·Leerssen, P. 2019, "An analysis of Germany's NetzDG law. First session of the Transatlantic High Level Working Group on Content Moderation Online and Freedom of Expression.".

Urman, A.·Makhortykh, M. 2023, "How transparent are transparency reports?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parency reporting across online platforms.", Telecommunications Policy, 47(3), 102477.

Wagner, B.·Rozgonyi, K.·Sekwenz, M. T.·Cobbe, J.·Singh, J. 2020, "Regulating transparency? Facebook, twitter and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I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61-271.

Zurth, P. 2020, "The German NetzDG as role model or cautionary tale?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social media liability.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31, 1084.

[기타자료]

JTBC 뉴스. 보도자료,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수억 챙긴 일당 붙잡혀”, 2015.09.01.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 2021.03.19.

_____.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수사본부 운영 성과”, 2021.

_____. 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1.

_____. 보도자료,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2021.

_____. 보도자료,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국수본(사이버범죄수사과) 내 위장수사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관련 기능 참여 위장수사 합동점검단 운영 방침-”, 2021.10.27.

_____. 보도자료,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막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 2021.03.19.

_____.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96명 검거- ※ 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총 90건 실시”, 2022.03.23.

_____.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2022.

_____. 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2.

_____. 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694명 검거 (구속 99명)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2022.11.16.

_____. 보도자료,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261명 검거-”, 2022.09.23.

_____. 보도자료,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 2023.07.21.

경향신문. 보도자료, “양진호 소유 ‘위디스크 → 필터링 → 디지털장의업체’ 거대 조직이었다”, 2018.11.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0.7.

_____,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3

_____,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4.
_____,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 발표”, 202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2019.01.2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2020.04.23.
_____.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2020
_____. 보도자료,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2017.09.26.
국회. 2013, 모바일-SNS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상희.
_____. 2020, 온라인 그루밍 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권선미, 보도자료, “'n번방 방지법' 2년…디지털성범죄 더 늘어”, 매일경제, 2023. 10.16.
권현정. 2022,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강선우·임호선,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뉴시스. 보도자료, “양진호 선정적 영상이 시선 끌어…본질은 '웹하드 카르텔'”, 2018.11.06.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9, 디지털성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박형관. 2015, 양형기준제 다시 정립! : 보다 국민을 위한 기준으로, 국회도서관 연간기획 포커스 입법논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0.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년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2022.
_____. 보도자료, “제6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 2019.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9.

_____.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2.9.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1.2.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03.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0.12.

_____. 2018, 주요 현안 보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제364회 국회 제 8차 전체회의.

여성신문.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OUT…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2017.08.18.

연합뉴스. 보도자료,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 올려 1억6천만원 챙겨”, 2016.6.24.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몰카에 여성들 죽어가는데... 이메일도 안 읽는 SNS업체”, 2017.8.25.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2.11.

용혜인. 국회 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 2022.

이원상·조진경·이여정·노선이·유경. 2022,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용혜인·베이직페미.

조선일보. 보도자료, “'몰카 생산독려→ 유통→감시' 3각카르텔 중심에 양진호 있었다”, 2018.11.16.

조윤희. 202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강선우·임호선,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여성가

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년 3차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
_____. 2020, 디지털성범죄 등 현안대응 활동 모음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020.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외교부 홈페이지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국회발의안]

의안번호 202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일자 2020.03.23.
의안번호 2024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의안번호 21138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2.09.
의안번호 2009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09.07.
의안번호 20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10.11.
의안번호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8.02.14.
의안번호 2016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8.11.29.
의안번호 2018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제안일자 2019.01.09.
의안번호 20191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3.13.
의안번호 2020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05.07.
의안번호 20233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19.10.30..
의안번호 2023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9.10.31.
의안번호 20238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14.
의안번호 2023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15.
의안번호 2023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1.21.
의안번호 20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11.29.
의안번호 2024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1.20.
의안번호 20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자 2020.03.04.
의안번호 2024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일자 2020.03.23.
의안번호 20248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25.
의안번호 2024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25.
의안번호 2024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3.31.
의안번호 20248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4.09.
의안번호 20248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4.09.
의안번호 20248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4.20.
의안번호 20248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의안번호 2024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의안번호 20248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4.21.
의안번호 20248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4.24.
의안번호 20248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자 2020.04.29.
의안번호 2024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5.04.
의안번호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5.04.
의안번호 20249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자 2020.05.20.
의안번호 20249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0.05.20.
의안번호 2100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3인), 제안일자 2020.06.11.
의안번호 2100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3인), 제안일자 2020.06.11.
의안번호 21003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4인), 제안일자 2021.08.26.
의안번호 21007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6.19.
의안번호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4.
의안번호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4.
의안번호 210276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06.
의안번호 21050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의안번호 21050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의안번호 21052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12.
의안번호 21062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0.12.08.
의안번호 21062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0.12.08.
의안번호 21064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12.15.
의안번호 21084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1.02.26.
의안번호 21091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3.24.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8.26.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1.18.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1.18.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1.11.18.
의안번호 2113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11.19.
의안번호 21144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1.18.
의안번호 21149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2.03.23.
의안번호 21152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4.14.
의안번호 211533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등 26인), 제안일자 2022.04.20.
의안번호 211675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2.08.22.
의안번호 2117062,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의원 등 17인), 제안일자 2022.08.29.
의안번호 2118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11.29.
의안번호 2119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3.02.09.
의안번호 21217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3.05.03.
의안번호 2122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3.05.16.
의안번호 220240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19.11.28.
의안번호, 21075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1.01.22.
의안번호, 21138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12.09.
청원번호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2.10.
청원번호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2.10.

청원번호 2000214,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국민주외 100,000인), 접수일자 2020.04.15.

Abstract

Analysis of the Changes in Digital Sex Crimes and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fter the Nth Room Prevention Law

Jisun, Kim, Min-ji, Kim and Se-eun, Hong

The “Nth Room” case, in which dozens of women, including minors, were blackmailed into taking sexually exploitative videos using a messenger app, has made people realize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Under the slogan, “Punishment is severe, protection is thorough,”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punishment for digital sex crimes and taken fundamental measures. The “Anti-Nth room” legislation was enacted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crimes related to digital sexual assault were implemented, reflecting measures that need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s measure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are being systematically implemented and whether they are having the desired policy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arious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measures contained in the Act and diagnose their performance.

We summarize our research as follows: 1) We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nti-Nth Room Act, which is the legislative outcome of prevention measures for Nth-Room case, and analyze their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2) Examine the incidence of digital sex crimes,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he nature of the crimes. 3) The prevention measures are broadly divided into the “Policy for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the “Policy for Strengthening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problems and difficulties, and evaluate the results. The “Punishment Enhancement Policy” includes expanding the scope of punishment for digital sex crimes, increasing statutory sentences, expanding security measures,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for investigations, and implementing a digital sex crim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The “Policy for Strengthening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cludes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 crimes video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deletion by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4) Finally, we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prior research on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measures, issues discuss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Anti-Nth room Act, review of subsequent revision bills proposed after the revision of the Anti-Nth room Act,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enforcement of the Anti-Nth room legislation, and opinions of practitioners and experts on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se findings, this study utilizes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1) literature review, 2) statistical data analysis, 3) secondary data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data, 4) content analysis of digital sex crime judgments and transparency reports, and 5) in-depth interviews and FGIs with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KCSC officials, and police officers.

Amo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prevention measures and prevention laws. The government has taken preventive measures such as amending various law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However, there are still issues such as the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strengthen punishments,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es that should have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mages and the scope of targeted crimes, and the need to revise individual laws to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the

number of cases of digital sex crimes has risen sharply since the announcement of measures to prevent "Nth room" cases. This is likely a result of the expanded scope of punishment under the new law and intensive police crackdowns. The majority of perpetrators are male, but the percentage of female offenders is increasing. Digital sex crimes are mostly committed by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30, but there is also a high percentage of underage perpetrators. The majority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re female, but the number of male victims is also increasing. The types of digital sex crime victimization include illegal filming, editing and synthesis, distribution, threats, and cyber-bullying. Distribution on web-hards has almost disappeared, but distribution on adult sites is on the rise.

In terms of police investigations, the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 and the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important investigative techniques for the rapid investigation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investigative practitioners are suggesting tha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for post-approval in the case of a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 so that th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in a timely manne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how to set up a disguise identity and what kind of sexual exploitation videos to possess, sell, or advertise. In addition, sinc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a quick and smooth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it is necessary to sign international treaties to prevent cybercrime and develop relevant domestic implementing laws.

In terms of prosecution dispositions, prosecutors have been most aggressive in prosecuting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s of child and adolescent among digital sex crimes since 2020. However, dispos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have a high rate of 'no prosecution'. The disposition of crimes such as possession of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s of child and adolescent showed a high proportion of ‘no charges’ and ‘request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refore, overall,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vestigation of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 crimes of child and adolescent.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non-prosecution continues to be high for crimes involving the use of cameras and other device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no charges’ among the reasons for non-prosecution is high and increasing.

When analyzing court sentencing trends, the rate of fines is decreasing and the rate of probation is increasing for crimes involving the use of cameras and other devices. For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the proportion of fines decreased sharply and the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court’s punishment for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has been strengthened compared to before the Nth room case, but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ere still sentenced below the statutory lower limit. When looking at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digital sex crime sentencing guidelines, the rate of consideration of mitigating factor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aggravating factors. The most frequently considered special mitigating factor is the mitigating factor of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n all cases of deviating from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reasons for departure are stated, but the specific reasons for departure from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clearly stated,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departure from the recommended sentence. For digital sex crimes, the impact of departures on the rate at which probation is imposed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gital sex offenses. The application of the mitigating factors did not affect the difference in prison sentences. However, when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probation mitigating factors by sentencing guideline, we found that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factor strongly influenced probation sentences regardless of sentencing guideline, suggesting that the

victim's inten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ntencing.

Workers at organizations that support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practitioners at the KCSC say that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effective in Korea and that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is working well.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illegal sites with servers overseas are distributing illegal images, and in such cases, there are difficulties in applying domestic laws and supporting the deletion of illegal images. In particular, access blocking measures have technical limitations and require active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the current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is divide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re are no unified support standards between organizations and no discussion on the allocation of tasks between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n terms of securing manpower, there are tasks that can increase efficiency by accumulating know-how, but many workers are hired as temporary workers, causing work gaps, and it is difficult to hire specialized workers due to low labor costs. In addition to this,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tend to be reluctant to report their victimization, making it difficult to provide support,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illegal filming and sharing of footage has become a culture of play,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gital culture education and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obligated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 crimes and are required to submit annual transparency reports. The providers with a duty to act proactively handled 70.2% of the reports received, and most of the posts (99.8%) were removed or disconnected on their ow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posts requested to be reported and

deleted are handled by the providers' own judgment, the transparency report mostly does not include this information, which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usefulness of setting restricted search term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ssage displayed when restricting search, and it is necessary to monitor whether the filtering technology is being applied wel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1) In terms of investigating digital sex crimes, the effectiveness of responding to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by allowing post-approval of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s in urgent cases. It is also essential to strengthen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2) In terms of punishment for digital sex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security disposi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and standardize the way sentencing factors are written when deviating from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digital sex crim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ndard of 'unwillingness to punish' as a general sentencing factor and a mitigating factor for probation, and to develop various sentencing factor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3) In terms of victim suppor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ctim support system through a unified control tower and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 education on digital sex crimes. 4) In terms of preventing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 crime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llegal content to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sexual solic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Information about the victim's identit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report to the police when an ISP identifies digital sexual offense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mandatory measures, the supervising fun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 to be included in transparency reports should be expanded.

연구총서 23-A-06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 | 979-11-986058-2-5 936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Analysis of the Changes in Digital Sex Crimes and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fter the Nth Room Prevention Law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93360
9 791198 605825
ISBN 979-11-986058-2-5